

#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박 대 식      연 구 위 원  
최 경 은      연 구 원

## 연구 담당

|       |       |                                                                   |
|-------|-------|-------------------------------------------------------------------|
| 박 대 식 | 연구 위원 | 연구 총괄, 다문화 관련 이론적 검토,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외국의 사례, 관련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 개선방안 |
| 최 경 은 | 연구 원  | 다문화가정의 현황 및 변화 추이,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 머 리 말

---

최근 농촌에서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은 농촌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 사회통합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농촌(읍·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과정 및 결혼생활 실태, 영농 및 기타 경제활동, 사회참여 및 사회복지 실태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하였으며,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은 심층 면접조사 및 관찰을 실시하였다. 한편 관련 행정조직 담당자와의 면접조사와 외국 사례조사 등을 통해서 국내·외의 다문화가정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앞으로 이 연구 결과가 농촌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집행에 많은 참고가 되고, 이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먼저,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 면접 설문조사를 대행해 준 현대리서치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농림수산물식품부, 통계청, 여성농업인 단체, 기타 관련 기관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에 감사드린다. 끝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심층 면접조사와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 그리고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08.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 요 약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 및 문제점을 영농 및 기타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② 국내외의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③ 농업·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적 시각에서 도출한 농촌 다문화가정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400가구의 다문화가정(여성결혼이민자 400명, 남편 4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문화가정 20가구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 및 관찰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 기존자료 조사, 외국(일본, 독일, 캐나다)의 사례 분석, 전문가의 의견수렴, 관련 행정조직 및 기관 담당자 조사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구성한 가족을 지칭한다.

다문화주의는 서구에서는 다수-소수인종집단 간의 사회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으로, 한 국가 또는 사회 안에서 몇 가지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문화집단들 간의 공존을 통해 국가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념 또는 정책을 일컫는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국가 위주 정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정리한 이 연구의 이론적 시각은 ‘다문화주의’로서,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의 절충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결혼 건수는 1990년 4,710건에서 2007년 38,49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2007년에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 7,930명 중 40.0%에 해당하는 3,172명이 외국 여자와 혼인하였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와의 이혼 또한 2002년 401건에서 2007년 5,79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이주의 여성화가 가속화되고, 통일교 등 종교단체의 국제결혼 장려활동이 활발하다는 요인과 맞물려 국내 결혼 적령기 인구의 성비 불균형 현상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결혼을 연기하거나 기피하고, 농촌에 거주하거나 저학력인 남성들은 한국에서 배우자를 만나기 어려워지면서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들은 주로 ‘결혼중개업체’(53.0%) 및 ‘친구, 가족, 친척, 지인 등’(31.1%)을 통해서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와 남편은 결혼의 주요 동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민자는 주로 경제이며 능동적인 이유인 반면에, 남편은 ‘혼기를 놓치고 결혼이 어려워져서’, ‘농촌으로 시집오려는 한국여성이 별로 없어서’와 같은 수동적인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53.6%)이 연간 가구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고, 대부분의 가구(94.9%)가 2007년도의 전국 농가의 평균소득(31,976원)보다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가구소득이 대체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들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은 본국 생활과 한국생활의 상대적 비교 때문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 가구의 3/4 이상(78.8%)이 농지(논·밭) 소유면적이 2ha 이하로 나타났다. 응답가구의 평균 농지 소유면적은 4,838평(1.6ha)으로 나타나 일반 농가의 30~40대 층보다 영농기반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결혼이민자들의 영농교육 참여의사(26.3%)가 다소 낮지만, 앞으로 교통편 및 보육서비스의 제공, 결혼이민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 및 강의 마련, 가족들의 협조, 관련 서비스 홍보 등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25%는 현재 참석하는 사회단체나 모임이 전혀 없으며, 결

혼이민자가정 자조모임에 가입하고 있는 남편의 비율도 30.3%에 불과하다. 결혼이민자가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남편’과 ‘한국에 있는 본국인 친구나 직장동료’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는 ‘가사문제와 자녀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35.1%),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22.2%), ‘교통편이 불편해서’(17.8%)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의 문제점(결혼이민자)으로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을 찾기 어렵다’(31.0%), ‘교육 내용과 교재를 이해하기 어렵다’(26.8%), ‘강사와의 언어소통이 어렵다’(20.8%) 순이었다.

결혼이민자가 사회서비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한 것은 ‘교육장까지 교통편 제공’(24.8%), ‘좀 더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내용’(16.0%), ‘방문교육의 확대’(15.8%), ‘모국어 통역 가능한 상담자 제공’(14.8%) 등이었다.

결혼이민자가정 대상 교육 및 활동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방문교육 확대’(20.0%), ‘교육장까지 교통편 제공’(17.5%), ‘실질적인 교육내용 구성’(16.3%), ‘교육 내용과 일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13.5%), ‘모국어 통역 가능한 상담자 제공’(13.0%), ‘교육받을 때 보육서비스 제공’(11.5%)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에서 원하는 의료·건강 관련 서비스(복수응답)는 ‘국민건강보험 안내’(56.3%), ‘진료 시 의사소통 도움’(46.0%), ‘육아지식 제공’(29.8%), ‘전염병, 질병 예방 지식 제공’(22.5%), ‘유아 건강검진’(21.5%) 순이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 지원 대상과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여러 부처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로의 적응과 통합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고, 결혼이민자 및 자녀들의 사회기여나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또한 농촌에서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농촌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지자체와 민간단체 차원에서는 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착하는 데

가장 시급한 한글교육을 중심으로 자녀 양육 및 한국 문화 예절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다문화가정 관련 전담 부서 또는 담당자를 둬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은 통합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현실적 필요에 의해 경제활동연령기에 있는 외국인에게 초점을 두고 직업교육 및 고용정책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캐나다에서는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캐나다의 모든 구성원의 자유를 존중하며, 그들의 문화적 유산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에서 지향하는 이민자 정책은 일방적 동화가 아닌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상호공존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주도의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부, 시민사회, 결혼이민자 가족, 결혼이민자 당사자 등의 역할 분담 및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농촌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1) 다문화가정 관련법의 개선, (2) 농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이버 지원체계 구축, (3) 혼인 당사자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사전 교육 실시, (4) 농촌 다문화가정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5)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 모국어 교육 강화, (6) 다문화가정 대상 영농교육의 개선, (7) 영농기반 구축 및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 (8) 농업 관련 산업 및 비농업 경제활동 지원, (9) 사회보장에서의 차별 해소 및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결혼이민자들은 우리나라 농촌에 있어서 새로운 인적 자산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혼이민자들을 우리의 동료 및 이웃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이며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들의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촌의 다문화가정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경제활동이나 사회서비스 수혜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농촌의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도 결혼이민자 및 남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

## Current Situation of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and Policy Tasks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o investigate current situation of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centering on farming and other economic activities, social welfare services; 2)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related policies; 3) to suggest policy tasks from the multi-cultural perspective.

The major research methods were the field survey, in-depth interview,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existing data, and so on. The field survey was conducted among 400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Existing related data were collected by searching the data of related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among 20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ies, percentage, mean were used to organize and summarize the data.

According to the field survey, 43.2% of the femal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were not(or rarely) participating in farming. Only a small percentage(7.5%) of the femal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were participating non-farm economic activities. 79.1 percent of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had the farm land of 2ha or less. 53.6 percent of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had the annual household income of 20 million won or less.

Major policy tasks from the multi-cultural perspective are ①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related laws; ② construction of cyber support system, ③ provision of precise information and pre-education, ④ improvement of service delivery system, ⑤ reinforcement of Korean and mother tongue education, ⑥ improvement of agricultural education, ⑦ construction of agricultural foundation and support for agricultural succession generation, ⑧ support of agribusiness and non-farming activities, ⑨ improvement of social welfare system and expans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Researchers: Dae-Shik Park, Kyung-Eun Choi**

**Research Period : 2008.1. ~ 2008.11.**

**E-mail Address: pds8382@krei.re.kr**



## 차 례

---

### 제1장 서론

|                      |   |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 1 |
|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 3 |
| 3. 연구의 범위 .....      | 7 |
| 4. 연구방법 .....        | 8 |

### 제2장 다문화 관련 이론적 검토

|                                            |    |
|--------------------------------------------|----|
| 1. 다문화 및 다문화가정의 정의 .....                   | 15 |
| 2. 다문화사회 이론 .....                          | 16 |
| 3. 이민자 통합정책의 유형 .....                      | 17 |
| 4.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개념 및 유형 ..... | 18 |

### 제3장 다문화가정의 형성 경로와 현황

|                              |    |
|------------------------------|----|
| 1. 다문화가정의 형성 경로 .....        | 23 |
| 2. 다문화가정의 변화 추이와 현황 .....    | 24 |
| 3. 농촌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증가 원인 ..... | 30 |

### 제4장 국제결혼 과정 및 결혼생활 실태

|                                |    |
|--------------------------------|----|
| 1. 국제결혼 과정 .....               | 35 |
| 2. 결혼생활 실태 .....               | 40 |
| 3. 심층 면접조사 등에서 파악된 주요 내용 ..... | 54 |
| 4. 소결 .....                    | 57 |

## 제5장 영농 및 기타 경제활동 실태

|                                |    |
|--------------------------------|----|
| 1. 영농 실태 .....                 | 59 |
| 2. 비농업 분야 경제활동 실태 .....        | 77 |
| 3. 심층 면접조사 등에서 파악한 주요 내용 ..... | 84 |
| 4. 소결 .....                    | 86 |

## 제6장 사회참여 및 사회복지 실태

|                                |     |
|--------------------------------|-----|
| 1. 사회참여 실태 .....               | 89  |
| 2. 사회복지 실태 .....               | 97  |
| 3. 심층 면접조사 등에서 파악한 주요 내용 ..... | 111 |
| 4. 소결 .....                    | 112 |

## 제7장 다문화가정 관련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                                    |     |
|------------------------------------|-----|
| 1. 다문화가정 관련 법률 .....               | 115 |
| 2.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 118 |
| 3.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 128 |

## 제8장 외국의 다문화가정 정책

|                  |     |
|------------------|-----|
| 1. 일본 .....      | 131 |
| 2. 독일 .....      | 134 |
| 3. 캐나다 .....     | 135 |
| 4. 정책적 시사점 ..... | 138 |

## 제9장 농촌 다문화가정 정책의 개선방향

|                  |     |
|------------------|-----|
| 1. 기본방향 .....    | 141 |
| 2. 주요 정책과제 ..... | 142 |

## 제10장 요약 및 결론

|                                  |     |
|----------------------------------|-----|
| 1. 요약 .....                      | 151 |
| 2.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 158 |
| 부록 1: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설문 조사표 .....    | 161 |
| 부록 2: 여성결혼이민자 남편 대상 설문 조사표 ..... | 175 |
| 참고 문헌 .....                      | 187 |

## 표 차례

---

### 제1장

|                             |    |
|-----------------------------|----|
| 표 1-1. 응답자의 일반현황 .....      | 12 |
| 표 1-2. 심층 면접대상자의 일반현황 ..... | 14 |

### 제2장

|                                        |    |
|----------------------------------------|----|
| 표 2-1.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비교 ..... | 21 |
|----------------------------------------|----|

### 제3장

|                                                        |    |
|--------------------------------------------------------|----|
| 표 3-1.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                              | 26 |
| 표 3-2.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 .....                          | 27 |
| 표 3-3. 결혼이민자 자녀의 취학 현황 .....                           | 27 |
| 표 3-4. 국적별 외국인과의 이혼건수 및 구성비 .....                      | 29 |
| 표 3-5. 농촌지역(읍·면부)과 도시지역(동부)의 혼인 .....                  | 31 |
| 표 3-6.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br>국적별 혼인 건수 ..... | 31 |
| 표 3-7.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수(추계) .....                        | 32 |

### 제4장

|                                          |    |
|------------------------------------------|----|
| 표 4-1. 가족 유형 .....                       | 41 |
| 표 4-2. 연간 가구 소득 분포(2007년) .....          | 42 |
| 표 4-3.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결혼이민자들의 경제 상태 변화 ... | 44 |
| 표 4-4.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생활수준 비교(결혼이민자) ..... | 46 |
| 표 4-5.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생활비 관리 주체 .....      | 48 |

## 제5장

|                                                     |    |
|-----------------------------------------------------|----|
| 표 5-1. 농지(논·밭) 소유면적 분포(2007년) .....                 | 61 |
| 표 5-2.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부인의 영농교육 참여 허가 의사 ..            | 71 |
| 표 5-3.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남편의 농사규모 계획 .....               | 75 |
| 표 5-4.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비농업 분야<br>종사 유무 ..... | 78 |

## 제6장

|                                               |     |
|-----------------------------------------------|-----|
| 표 6-1.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방문 사회서비스 경험 유무(결혼이민자) ... | 109 |
|-----------------------------------------------|-----|

## 그림 차례

---

### 제3장

|                                  |    |
|----------------------------------|----|
| 그림 3-1. 국제결혼 추이(1990~2007) ..... | 25 |
|----------------------------------|----|

### 제4장

|                                            |    |
|--------------------------------------------|----|
| 그림 4-1. 결혼 경로 .....                        | 36 |
| 그림 4-2. 결혼의 주요 동기(결혼이민자) .....             | 37 |
| 그림 4-3. 결혼의 주요 동기(남편) .....                | 37 |
| 그림 4-4. 본국에서 거주한 지역 .....                  | 38 |
| 그림 4-5. 결혼이민자 본가의 경제적 생활수준 인식(결혼이민자) ..... | 39 |
| 그림 4-6. 결혼이민자 본가의 경제적 생활수준 인식(남편) .....    | 39 |
| 그림 4-7. 자녀 수 .....                         | 40 |
| 그림 4-8. 본국생활과 비교한 현재의 경제적 상태 .....         | 43 |
| 그림 4-9. 한국의 이웃들과 비교한 가정 생활수준(결혼이민자) .....  | 45 |
| 그림 4-10. 생활비 관리 .....                      | 47 |
| 그림 4-11. 집안일 참여정도(결혼이민자) .....             | 49 |
| 그림 4-12. 집안일 참여정도(남편) .....                | 50 |
| 그림 4-13. 결혼생활 만족도(결혼이민자) .....             | 51 |
| 그림 4-14. 결혼생활 만족도(남편) .....                | 52 |
| 그림 4-15. 현재 결혼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결혼이민자) .....    | 53 |
| 그림 4-16. 현재 결혼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남편) .....       | 53 |
| 그림 4-17. 자녀교육에서 어려운 점 .....                | 54 |

### 제5장

|                               |    |
|-------------------------------|----|
| 그림 5-1. 농가 형태 .....           | 60 |
| 그림 5-2. 농지(논·밭) 경작면적 분포 ..... | 62 |

|                                            |    |
|--------------------------------------------|----|
| 그림 5-3. 결혼이민자의 본국에서의 농사 경험 .....           | 63 |
| 그림 5-4. 결혼이민자의 생활 형태(영농참여)에 대한 남편의 인식 ...  | 64 |
| 그림 5-5. 농사일에서 결혼이민자의 역할 비중 인식(결혼이민자) ..... | 65 |
| 그림 5-6. 농사일에서 결혼이민자의 역할 비중 인식(남편) .....    | 65 |
| 그림 5-7. 남편이 희망하는 부인의 농사참여 정도 .....         | 66 |
| 그림 5-8. 남편이 희망하는 부인의 농사참여 정도 .....         | 67 |
| 그림 5-9. 한국에 와서 농사기술을 주로 배운 곳 .....         | 68 |
| 그림 5-10. 결혼이민자의 영농교육 참여의사 .....            | 69 |
| 그림 5-11. 부인의 영농교육 참여 허가 의사(남편) .....       | 70 |
| 그림 5-12. 결혼이민자가 원하는 영농교육 내용(복수응답) .....    | 72 |
| 그림 5-13. 남편이 원하는 부인을 위한 영농교육 .....         | 73 |
| 그림 5-14. 결혼이민자의 영농지속 의사 .....              | 74 |
| 그림 5-15. 농사규모 계획(남편) .....                 | 75 |
| 그림 5-16. 농사일의 가장 어려운 점(결혼이민자) .....        | 76 |
| 그림 5-17. 결혼이민자의 비농업 분야 일 참여 .....          | 77 |
| 그림 5-18. 남편의 비농업 분야 일 참여 .....             | 79 |
| 그림 5-19. 월 평균 농외소득(결혼이민자) .....            | 79 |
| 그림 5-20. 월 평균 농외소득(남편) .....               | 80 |
| 그림 5-21.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는 중요 이유(결혼이민자) .....  | 81 |
| 그림 5-22.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는 중요 이유(남편) .....     | 81 |
| 그림 5-23. 농사일 이외의 일에서 어려움(결혼이민자) .....      | 82 |
| 그림 5-24.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 참여의사(결혼이민자) ...  | 83 |
| 그림 5-25.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 참여의사(남편) .....   | 84 |

## 제6장

|                                            |    |
|--------------------------------------------|----|
| 그림 6-1.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모임 .....          | 90 |
| 그림 6-2. 사회단체나 모임 참여가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정도 .. | 91 |
| 그림 6-3. 결혼이민자가정 자조모임 가입(남편) .....          | 92 |

|                                                        |     |
|--------------------------------------------------------|-----|
| 그림 6-4. 결혼이민자가정 자조모임 가입 의사(남편) .....                   | 92  |
| 그림 6-5. 부인이 농촌에 살면서 가장 불편해 하는 점 .....                  | 93  |
| 그림 6-6. 농촌거주 지속 의사(남편) .....                           | 94  |
| 그림 6-7. 이혼 이유(남편) .....                                | 95  |
| 그림 6-8. 결혼이민자가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              | 96  |
| 그림 6-9. 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이용률 .....                         | 97  |
| 그림 6-10. 이용한 사회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 .....                  | 98  |
| 그림 6-11. 결혼이민자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br>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 | 99  |
| 그림 6-12. 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            | 100 |
| 그림 6-13. 사회서비스의 문제점(결혼이민자) .....                       | 101 |
| 그림 6-14. 가장 필요한 사회서비스(결혼이민자) .....                     | 102 |
| 그림 6-15. 사회서비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br>(결혼이민자) .....  | 103 |
| 그림 6-16. 남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 참여 비율 .....                | 104 |
| 그림 6-17. 남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           | 105 |
| 그림 6-18.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                | 106 |
| 그림 6-19. 부인(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           | 107 |
| 그림 6-20. 결혼이민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개선되어야<br>할 사항 .....   | 108 |
| 그림 6-21. 방문 사회서비스 수혜 비율(결혼이민자) .....                   | 109 |
| 그림 6-22. 원하는 의료·건강 관련 서비스 .....                        | 110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sup>1</sup>, 우리사회 곳곳에서 외국인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다문화시대’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그동안 단일 민족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사회에서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와 타문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와 같은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더 이상 ‘단일민족’의 신화를 기반으로 사회의 통합과 결속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정’이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구성한 가족’을 지칭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용하던 ‘국제결혼가정’, ‘혼혈가정’, ‘코시안(Kosian)’, ‘온누리안(Onnurian)’ 등과 같은 용어가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바꾸어 부르게 된 용어이다. 특히,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가 국내에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에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지원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부터이다. ‘국제결혼가정’은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의 가정이

---

<sup>1</sup> 2008년 4월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10만 명에 이른다.

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한 가정 내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들 사이의 결합이라는 ‘문화적’ 요소를 보다 강조한다.

최근 농촌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촌 남성의 결혼문제가 한국사회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탈출구로 떠오른 것이 바로 외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이다. 결혼이민자들이 급속하게 농촌으로 유입됨에 따라 농촌사회 내부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은 이미 농촌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상당한 위치를 점유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그 수와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 사회통합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및 2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등의 문제는 앞으로 사회적 갈등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농촌의 다문화가정은 일반가정과 다른 여러 가지 독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의사소통의 제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농촌의 다문화가정은 부부관계, 자녀양육, 가족관계, 이웃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의 파탄 사례도 크게 급증하고 있다.

최근 국제결혼 및 결혼이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2006)을 마련하여 7대 주요 과제 및 26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2007년에 제정되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2008.3.21) 시행되고(2008.9.22) 있다.

결혼이민자를 포용하는 다문화정책은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그 사회의 통합과 안정의 기초가 되고, 결혼이민자라는 인적자원과 그들의 문화적 능력 내지 다양성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농촌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여 생활하게 되면 젊은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즉, 농업·농촌의 새로운 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결혼이민자(특히, 이주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과 활동성파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과 농촌발전은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정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전국 또는 도 단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농업 및 농촌의 특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연구들은 조사대상자 수가 너무 작아서 조사결과와 일반화 가능성이 낮거나, 지나치게 많은 조사문항으로 인해 심층적인 조사·분석이 부족했다.

농촌의 다문화가정은 경제적 기반이 농업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영농 및 기타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이 농촌에 정착하여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농 및 기타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및 욕구 실태 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 및 문제점을 영농 및 기타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② 국내외의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③ 농업·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적 시각에서 도출한 우리나라 농촌 다문화가정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다문화가정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전국 또는 도 단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설동훈 외(2005)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생활실태 및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945가족(여성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했으며, 여성 결혼이민자 2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정책 제언으로 ①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 보장, ② 가족해체 예방과 다양한 문화·가치관의 공존 지원, ③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④ 보건·의료 서비스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설동훈 외(2006)는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에서 ① 전국적 차원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의 생활실태 및 사회문화적 기본욕구를 파악하고, ② 결혼이민자 가족 중·장기 지원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1,177가족(여성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을 대상으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여성결혼이민자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중·장기 지원 정책으로 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생활 실천, ② 바람직한 국제결혼모델의 정립, ③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적응 지원, ④ 민관협력의 사회통합 모델 구축, ⑤ 결혼이민자가족지원법 제정을 제시하였다.

정기선 외(2007a)는 「경기도 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에서 경기도 내 국제결혼 이민자의 가족현황과 전반적인 가족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정책욕구를 분석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국제결혼 이민자 1,013가족(외국인 부인 810명과 가족, 외국인 남편 203명과 가족)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국제결혼이민자가족 정책지원 방안으로 ① 한국생활 조기적응 및 정착 지원, ② 조화로운 가족관계 정립, ③ 국제결혼 가족의 차세대 지원강화, ④ 기본생활 및 인권보장, ⑤ 국제결혼 이민자의 인적자원 개발, ⑥ 지역사회 다문화 환경조성, ⑦ 추진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관한 연구로는 정일선(2006)은 「국제결혼 가족 및 아동 실태조사」에서 경상북도의 결혼이민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조영달(2006)은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에서 최근 새로운 교육 소외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이성언과 최유(2006)는 「“다문화 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 연구」에서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과 혼혈인을 우리 사회로 통합할 수 있게 하는 법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사회학회(2007)는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에서 ① 세계화 시대의 이민과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과제, ②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이상과 현실, ③ 다인종·다민족화의 공간적·계급적 분석, ④ 열린 사회구현을 위한 외국인정책 방향, ⑤ 한국적 다문화 운동의 실천, ⑥ 이민 정책과 다문화주의, ⑦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박재규 외(2005)는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서 전북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국내 적응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정착과정 및 가족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13개 시·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608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만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한국인 남편이나 가족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집하지 못했으며, 심층 면접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

이순형 외(2006)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방안」에서 ① 농촌지역 국제결혼의 현황을 분석하고, ②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삶과 요구를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 및 언어, 문화, 가족, 육아, 교육, 사회 적응 문제를

분석하며, ③ 적응 성공 사례들을 조사·발굴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④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실태와 적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농촌지역의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166명과 남편 1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여성결혼이민자 1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으로 ① 여성의 인권보호, ② 자녀양육과 교육 지원, ③ 한국사회 적응 지원, ④ 가족관계 교육, ⑤ 다문화주의 교육환경 조성, ⑥ 사회교육환경 조성, ⑦ 취업 및 영농활동 지원, ⑧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 ⑨ 출입국관리 업무체계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론적 검토와 관련 정책의 문제점 파악이 미흡하며, 전체 166명 조사대상자 중 중국 출신은 15명에 불과하여 출신 국가별로 차이점을 비교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 대상자도 한글교육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이라는 점에서 조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건수(2006)는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에서 농촌지역의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겪고 있는 적응과 갈등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임실군(13명), 순창군(4명), 남원시(2명)에서 총 19명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안내 없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힘든 문화학습과 적응의 과정을 거치는 반면에, 한국인 남편과 시댁식구들은 일방적으로 이주여성들이 한국문화에 빨리 동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19명의 결혼이민자를 심층 면접조사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의 분석은 거의 하지 못했다.

양순미(2006)는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에서는 전국 6개 시·군, 40개 면, 110개 마을에서 표집한 150쌍(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조선족, 일본, 필리핀 출신의 이주여성 부부)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

면, 필리핀과 일본 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적응수준은 중국조선족 이주여성의 적응수준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았으며, 남편들의 적응수준도 아내들의 경향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중국조선족, 일본, 필리핀 출신의 이주여성 부부만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주여성의 출신 국가별 분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한족, 베트남 등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못했다.

기존의 연구들은 전국 또는 도 단위 중심으로 진행되어 농촌지역에는 연구의 초점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2005년 이후에 마련된 정부 및 관련 단체의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및 사업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구성한 가족’을 지칭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독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여러 분야의 실태를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영농 및 기타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본 연구는 ①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남편)도 함께 조사하고, ② 최근에 제정되거나 마련된 관련 법률, 정책, 사업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③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 및 기타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초점을 두어 연구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 3.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농촌이란 행정구역상의 읍·면지역을 말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광의적 개념에서 파악할 경우에는 ‘결혼이민자 가정’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새터민)’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으로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다문화가정’의 범위를 한정한다. 그리고 남편의 직업

이 농업인 결혼이민자 가구(농가)를 대상으로 영농 및 기타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초점을 두어 조사·연구한다. 농가의 개념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의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 4. 연구방법

### 4.1.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방법은 기존자료 조사, 농촌의 다문화가정 대상 면접 설문조사, 심층 면접조사 및 관찰, 외국의 사례 분석, 전문가의 의견 수렴, 관련 행정조직 및 기관 담당자 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기존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 여성부, 통계청,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과 같은 관련 기관의 자료를 수집하고, 기타 국내외의 문헌 및 통계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농촌의 다문화가정 대상 면접 설문조사는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남편이 농업인인 400가구의 다문화가정(여성결혼이민자 400명, 남편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진이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여 예비조사, 사전검사 등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 설문지를 마련하되, 현지 면접 설문조사는 농촌조사의 경험이 많은 여론조사 전문기관(현대리서치)에 위탁하였다. 다만, 설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로는 파악하기 힘든 내면 심리와 같은 질적 측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다문화가정 20가구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 및 관찰을 실시하였다.

외국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기존자료 정리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일본, 독일, 캐나다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정부 및 민간단체의 관련 협의회, 다문화가정 관

런 학술세미나,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다문화가정 관련 기관의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중앙부처, 도, 시·군, 읍·면 단위 관련 행정조직 및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4.2. 자료 분석 방법

기존 자료 조사에서는 2차 자료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설문조사 결과는 SPSS를 사용하여 빈도, 평균, 교차표 분석, 기타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차표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만 도표로 제시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본국에서 거주지역, 농사 경험, 결혼이민자와 남편의 연령차, 결혼이민자의 학력, 한국거주 기간, 지역 유형, 결혼이민자의 연령대, 주 작목(판매수입 중심), 가구소득, 농가 형태 등을 파악하였다. 심층 면접조사 결과 및 관찰방법의 조사결과는 서술적인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 4.3. 실태조사 개요

전국의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남편의 직업이 농업인 다문화(결혼이민자)가정을 대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 각각 400명, 총 400가구(800명)를 2008년 9월 1일~9월 30일 기간 동안에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표준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대인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조사와 별도로 연구진은 20가구의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개소)의 협조를 받아서

56%(224명)의 조사대상자를 무작위 표집으로 추출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이 많은 읍·면·동 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나머지 44%(176명)의 조사대상자를 무작위 표집으로 추출하였다.

조사지역은 경기·강원권에서 홍천, 안성, 용인, 이천, 포천, 양구, 강화를, 충청권에서 공주, 금산, 논산, 당진, 부여, 서산, 연기, 예산, 천안, 청양, 태안, 홍성, 보은, 옥천을, 호남권에서 광양, 나주, 순천, 장성, 장흥, 남원, 완주, 익산, 전주, 정읍을, 영남권에서 거창, 마산, 밀양, 함양, 경주, 구미, 김천, 영주, 포항, 울주, 봉화, 예천으로 총 43개 시·군 지역이다.

조사응답자인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에 대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1>.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은 ‘3년 미만’이 47.7%, ‘3~5년 미만’이 24.0%, ‘5년 이상’이 18.0%로 나타나, 결혼이민자의 71.7%는 한국 거주기간이 5년 미만임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베트남(39.5%), 필리핀(22.5%), 중국 조선족(10.2%), 중국 한족(10.2%), 일본(5.5%), 캄보디아(4.8%) 순으로 베트남에서 온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 유형은 도시근교(34.5%), 평야(18.3%), 중·산간(36.2%), 산간(10.5%), 무응답(0.5%)으로 드러났다. 결혼이민자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19.5%), ‘중학교 졸업’(34.8%), ‘고등학교 졸업’(34.3%), ‘전문대학 졸업 이상’(11.3%)으로 나타나,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45.4%나 된다. 결혼이민자의 연령은 ‘25세 미만’(28.7%), ‘25~30세 미만’(30.8%), ‘30~40세 미만’(30.0%), ‘40세 이상’(10.5%)로 나타나, ‘20~30대’가 59.5%를 차지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남편의 학력은 ‘중졸 이하’(25.7%), ‘고등학교 졸업’(69.5%), ‘전문대학 졸업 이상’(4.8%)으로 나타나 3/4 정도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응답자의 농가에서 주로 짓는 농사(주 작목)는 논농사(60.3%), 밭농사(22.5%), 과수농사(3.5%), 하우스농사(5.2%), 축산(5.0%) 등이다.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여부는 국적 취득을 한 사람이 28.8%,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71.3%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종교는 ‘없음’(58.5%), 개신교(8.2%), 가톨릭(8.5%), 불교(11.5%), 통일

교(11.3%) 등으로 나타났다. 연간 가구소득은 ‘1,000만원 미만’(12.2%), ‘1,000~2,000만 원 미만’(41.2%), ‘2,000~3,000만 원 미만’(41.5%), ‘3,000만 원 이상’(4.8%)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94.9%)은 연간 가구소득이 3,000만 원 미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간 가구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응답가구의 비율도 53.4% 나타나 농촌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표 1-1. 응답자의 일반현황

| 구 분                | 범 주               | 빈 도 | 백분비(%) |
|--------------------|-------------------|-----|--------|
| 한국 거주기간<br>(결혼이민자) | 1년 미만             | 43  | 10.7   |
|                    | 1년~3년 미만          | 148 | 37.0   |
|                    | 3년~5년 미만          | 96  | 24.0   |
|                    | 5년~7년 미만          | 41  | 10.2   |
|                    | 7년 이상             | 71  | 17.8   |
|                    | 무응답               | 1   | 0.3    |
| 결혼이민자의<br>국적       | 중국(한족)            | 41  | 10.2   |
|                    | 중국(조선족)           | 41  | 10.2   |
|                    | 일본                | 22  | 5.5    |
|                    | 베트남               | 158 | 39.5   |
|                    | 필리핀               | 90  | 22.5   |
|                    | 캄보디아              | 19  | 4.8    |
|                    | 카자흐스탄             | 3   | 0.8    |
|                    | 인도네시아             | 4   | 1.0    |
|                    | 기타                | 22  | 5.5    |
| 지역 유형              | 도시근교              | 138 | 34.5   |
|                    | 평야                | 73  | 18.3   |
|                    | 중·산간              | 145 | 36.2   |
|                    | 산간                | 42  | 10.5   |
|                    | 무응답               | 2   | 0.5    |
| 결혼이민자의<br>학력       | 초등학교 졸업 이하        | 78  | 19.5   |
|                    | 중학교 졸업            | 139 | 34.8   |
|                    | 고등학교 졸업           | 137 | 34.3   |
|                    | 전문대학 졸업 이상        | 45  | 11.3   |
|                    | 무응답               | 1   | 0.3    |
| 결혼이민자의<br>연령       | 25세 미만            | 115 | 28.7   |
|                    | 25~30세 미만         | 123 | 30.8   |
|                    | 30~40세 미만         | 120 | 30.0   |
|                    | 40세 이상            | 42  | 10.5   |
| 남편의 학력             | 초등학교 졸업 이하        | 20  | 5.0    |
|                    | 중학교 졸업            | 83  | 20.7   |
|                    | 고등학교 졸업           | 278 | 69.5   |
|                    | 전문대학 졸업 이상        | 19  | 4.8    |
| 남편의 연령             | 35세 미만            | 26  | 6.5    |
|                    | 35~40세 미만         | 89  | 22.3   |
|                    | 40~45세 미만         | 154 | 38.5   |
|                    | 45~50세 미만         | 102 | 25.5   |
|                    | 50세 이상            | 28  | 7.0    |
|                    | 무응답               | 1   | 0.3    |
| 주요 농사<br>(주 작목)    | 논농사               | 241 | 60.3   |
|                    | 밭농사               | 90  | 22.5   |
|                    | 과수농사              | 14  | 3.5    |
|                    | 하우스농사             | 21  | 5.2    |
|                    | 축산                | 20  | 5.0    |
|                    | 기타                | 4   | 1.0    |
|                    | 무응답(잘 모름)         | 10  | 2.5    |
| 결혼이민자의<br>국적 취득 여부 | 예                 | 115 | 28.8   |
|                    | 아니오               | 285 | 71.3   |
| 결혼이민자의<br>종교       | 없음                | 234 | 58.5   |
|                    | 개신교(기독교)          | 33  | 8.2    |
|                    | 가톨릭               | 34  | 8.5    |
|                    | 불교                | 46  | 11.5   |
|                    | 이슬람교              | 3   | 0.7    |
|                    |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통일교)   | 45  | 11.3   |
|                    | 기타                | 3   | 0.8    |
|                    | 무응답               | 2   | 0.5    |
| 연간 가구소득            | 1,000만 원 미만       | 49  | 12.2   |
|                    | 1,000~2,000만 원 미만 | 165 | 41.2   |
|                    | 2,000~3,000만 원 미만 | 166 | 41.5   |
|                    | 3,000만 원 이상       | 19  | 4.8    |
|                    | 무응답               | 1   | 0.3    |
| 전 체                |                   | 400 | 100.0  |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조사표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은 심층 면접조사를 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1-2>. 심층 면접대상자는 총 20가구(부부)이며 지역별로는 홍성 7가구, 거창 5가구, 김천 4가구, 옥천 4가구이다. 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은 베트남 8명, 태국 4명, 캄보디아 3명, 필리핀 3명, 중국(한족 및 조선족) 2명이다. 결혼이민자들의 연령은 20~36세 사이이며, 한국 거주기간은 1~9년 되었다. 이들 가정에서 짓는 농사 종류(주작목)는 논농사 10가구, 밭농사 3가구, 과수 4가구, 축산 1가구, 하우스농사 2가구이며, 남편의 연령은 30~49세 사이이다. 국제결혼 과정은 ‘아는 사람 또는 친구·친척 소개’를 통한 경우가 9가구, ‘종교단체’를 통한 경우가 5가구, 중개업체에서 만난 경우가 6가구 해당한다. 결혼이민자의 종교는 ‘없음’ 7명, 기독교(개신교) 3명, 통일교 4명, 불교 6명이었다.

표 1-2. 심층 면접대상자의 일반현황

| 면접<br>대상자 | 출신국         | 연령 | 한국<br>거주<br>기간 | 농사 종류<br>(주 작목) | 학력       | 남편<br>연령 | 남편<br>학력 | 거주<br>지역 | 결혼 과정       | 종교  |
|-----------|-------------|----|----------------|-----------------|----------|----------|----------|----------|-------------|-----|
| A         | 베트남         | 23 | 1년<br>5개월      | 논농사             | 무학       | 48       | 초등<br>졸  | 홍성       | 아는 사람<br>소개 | 없음  |
| B         | 베트남         | 20 | 5개월            | 과수              | 고졸       | 45       | 전문<br>대졸 | 홍성       | 중개업체        | 없음  |
| C         | 중국<br>(조선족) | 31 | 7년             | 논농사             | 중졸       | 39       | 중졸       | 홍성       | 아는 사람<br>소개 | 없음  |
| D         | 태국          | 27 | 2년             | 축산              | 중졸       | 37       | 고졸       | 홍성       | 친척 소개       | 없음  |
| E         | 필리핀         | 26 | 4년             | 논농사             | 전문<br>대졸 | 35       | 고졸       | 홍성       | 종교단체        | 통일교 |
| F         | 캄보디아        | 22 | 1년             | 밭농사             | 중졸       | 33       | 중졸       | 홍성       | 아는 사람<br>소개 | 불교  |
| G         | 캄보디아        | 23 | 1년             | 논농사             | 중졸       | 35       | 고졸       | 홍성       | 아는 사람<br>소개 | 불교  |
| H         | 베트남         | 20 | 1년<br>5개월      | 논농사             | 고졸       | 38       | 고졸       | 거창       | 친구 소개       | 불교  |
| I         | 필리핀         | 30 | 8년             | 논농사             | 초등<br>졸  | 47       | 고졸       | 거창       | 종교단체        | 기독교 |
| J         | 베트남         | 25 | 2년             | 논농사             | 고졸       | 43       | 고졸       | 거창       | 중개업체        | 기독교 |
| K         | 베트남         | 21 | 1년<br>8개월      | 과수              | 고졸       | 34       | 전문<br>대졸 | 거창       | 중개업체        | 없음  |
| L         | 태국          | 30 | 7년             | 과수              | 전문<br>대졸 | 38       | 중졸       | 거창       | 종교단체        | 통일교 |
| M         | 베트남         | 23 | 1년<br>6개월      | 논농사             | 중졸       | 43       | 중졸       | 김천       | 중개업체        | 불교  |
| N         | 캄보디아        | 29 | 1년<br>6개월      | 하우스농사<br>(채소)   | 중졸       | 47       | 중졸       | 김천       | 친구 소개       | 불교  |
| O         | 베트남         | 25 | 2년<br>2개월      | 밭농사<br>(양파)     | 초등<br>졸  | 45       | 중졸       | 김천       | 중개업체        | 불교  |
| P         | 필리핀         | 32 | 2년             | 하우스농사<br>(토마토)  | 고졸       | 47       | 고졸       | 김천       | 친구 소개       | 기독교 |
| Q         | 중국<br>(한족)  | 22 | 1년             | 논농사             | 중졸       | 30       | 고졸       | 옥천       | 중개업체        | 없음  |
| R         | 베트남         | 22 | 2년<br>3개월      | 논농사             | 고졸       | 49       | 고졸       | 옥천       | 친구 소개       | 없음  |
| S         | 태국          | 30 | 5년             | 과수              | 고졸       | 40       | 고졸       | 옥천       | 종교단체        | 통일교 |
| T         | 태국          | 36 | 9년             | 밭농사             | 중졸       | 45       | 중졸       | 옥천       | 종교단체        | 통일교 |

### 1. 다문화 및 다문화가정의 정의

다문화(multi-culture)는 말 그대로 여러 문화라는 뜻으로 언어, 문화, 관습, 종교, 인종, 계층, 직업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를 의미한다.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정을 의미한다. 즉, 다문화가정이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구성한 가족을 지칭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3월 21일 제정, 2008년 9월 22일 시행)에 따르면,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일컫는 것으로 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②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 2. 다문화사회 이론

다문화사회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동화이론(assimilation theory), 용광로론(melting pot theory), 샐러드보울론(salad bowl theory), 비빔밥문화론이 있다(김범수 외, 2007).

동화이론(assimilation theory)은 이민자들이 접촉-경쟁-화해-동화의 네 과정을 경험하면서 주류사회에 동화하며 정착하는 것으로 파악하며, 모든 이민자들이 주류사회에 동화하면 모든 인종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전통적 동화이론이란 하위문화 혹은 소수문화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회의 지배문화를 채택,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동화이론이 전제하는 것은 지배문화의 우월성으로, 문화 사이의 우열관계에 따라 우월한 문화가 그렇지 못한 문화를 흡수·합병한다고 본다.

인종들 간 융합을 강조하는 용광로론(melting pot theory)도 동화이론의 한 부류라고 할 수 있다. 용광로론이란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다수집단 또는 사회의 주류들이 만들어둔 기준에 알맞은 형태로 후기 이주민 또는 이주문화가 녹아드는 동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수집단인 이민자들은 다수집단이라는 커다란 주류사회 속으로 녹아서 융해된다고 본다. 용광로론에서 주장하는 ‘융합’은 주로 서유럽으로부터 온 백인이민의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유색인종 사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고립 등은 더욱 심각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샐러드보울론(salad bowl theory)은 문화다원주의 이론으로서 이민자들은 각자 고유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기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샐러드보울에 담긴 샐러드가 각각 고유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섞이면 맛있는 샐러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인종, 여러 민족이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각 인종과 민족은 상호 이익 추구하고 협조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다원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다문화사회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는 비빔밥문화론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비빔밥문화가 다문화가정과의 융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비빔밥은 샐러드보울과는 스타일과 먹는 방법이 다르며, 샐러드 보울보다 오히려 비빔밥이 완전한 혼합과 융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는 어떠한 재료로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결국 다문화사회 속에서는 다문화가정과 공존할 수 있는 비빔밥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3. 이민자 통합정책의 유형

이민자 유입국의 이민자 통합정책의 유형은 차별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동화모형(assimilationist model), 다문화주의모형(multi-cultural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범수 외, 2007; 이성언·최유, 2006).

차별배제모형은 유입국 사회가 이민자를 3D직종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받아들이고, 복지혜택, 국적, 시민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과 같은 사회·정치적 영역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유입국에서는 국가가 원치 않는 이민자 정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차별배제모형에 의하면, 특정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자국 국민에 준하는 공식적 권한을 인정하는 반면에 그 외의 이주민은 일시적 체류자격만 부여한 채 사회통합 범위에서 배제하고 각종 권한도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일시적 체류자로 분류되었던 이주민들이 실질적으로는 정주자화 하는 상황에서도 기존의 차별·배제 접근을 유지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화모형은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해 주류사회의 성원들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유입국

사회는 자국 사회의 성원이 되길 원하는 이민자에게 ‘문화적 동화’라는 대가를 치르는 조건으로 ‘국민’으로 합류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이민자는 주류사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용광로에 섞여져 결국은 그 출신국의 고유성을 잃고 단일한 성격의 국민으로 용해된다고 본다. 동화모형은 후기 이주민 또는 이주문화가 이미 형성된 기존의 사회기준에 알맞은 형태로 녹아드는 동화를 의미한다. 이주민들은 새로운 사회나 국가에 자신들이 잘 융해되어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기존의 다수집단에게 증명을 해 보여야만 그 사회 또는 국가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화주의적 접근방식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정책으로는 국적이나 시민권 부여에 있어서 ‘속지주의’ 방식을 들 수 있다. 속지주의는 자국의 영토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다문화주의모형은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켜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정책 목표를 소수민족의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symbiosis)에 둔다. 다양한 문화나 가치, 다양한 민족 집단과 그들의 개별적인 언어와 습관들을 그대로 한 나라 속에 공존시키는 다문화주의 접근에 따른 정책으로 인해 타 문화, 타 언어, 이교도 집단의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 4.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개념 및 유형

서구에서는 비서구 출신 신규 이민자들의 급증으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와 이들에 대한 다수집단의 인종편견과 차별로 인한 소수인종집단의 사회부적응, 다수-소수인종집단 간의 사회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다문화주의라는 이념과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면서 다문화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장기체류 외국인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들의 처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다문화주의란 한 국가 또는 사회 안에서 몇 가지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 내의 다양한 인종, 민족 집단 중에서 소수집단이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성을 인정하고 옹호한다. 모든 문화는 동등하게 평가받아야 하고, 그 어떤 문화도 다른 것보다 우월할 수 없다는 신념을 기본으로 한다.

다문화주의는 민족중심주의와 반대 개념으로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독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다문화주의는 다민족, 다문화사회의 통합에 있어서 동화주의는 유효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민족·민족성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나 가치, 그리고 다양한 민족집단과 이들의 개별적인 언어와 습관들을 그대로 하나의 국가체제 속에 공존시키는 사상과 제도를 지칭한다. 다문화주의는 문화 간의 격차와 이질성에 의해서 무시되거나 차별되는 것을 전략적으로 방지하고 문화에 따른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김범수 외, 2007). 첫째, 다양성의 상징적 인정으로, 이는 한 사회나 국가 안에서 인종이나 문화가 단지 하나가 아니며, 다민족 다문화사회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둘째, 법적인 인정과 다문화적인 공공정책으로, 인종적·문화적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개인 또는 소수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인정과 다문화적인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소수집단의 정치적 참여로, 소수집단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는 다문화적 시민권 확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므로, 정치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는 집단이나 개인들이 보다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일상생활에서의 배려로, 이는 법적 제도나 정책처럼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개개인에게 자신의 다양성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준다.

다문화주의는 행위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로 유형화할 수 있다(표 2-1 참조). 국가주도 다문화주의는 복수의 문화집단들 간 공존을 통해서 국가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념 또는 정책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국의 국가주도 다문화주의는 외국인에 대한 하나의 관리 기제로 볼 수 있다.

다른 유형인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인해 주변화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소수집단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보호하고, 사회의 기회구조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 또는 ‘풀뿌리 다문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의 주체인 원주민, 이주민, 소수민족집단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의 이념과 정책을 평가하고 자신들의 욕구와 처지에 적합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각은 다문화주의로서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의 절충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들은 최근 다문화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 동화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현실 여건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표 2-1.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비교

| 구분          | 국가주도 다문화주의                                                                                                                                                                                                       |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
|-------------|------------------------------------------------------------------------------------------------------------------------------------------------------------------------------------------------------------------|--------------------------------------------------------------------------------------------------------------------------------------------------------------------------------------------------------------------------------|
| 목표          |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 다양한 국적을 고려하여 외국인 이주를 관리하되,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을 강화하여 사회갈등 및 비용을 최소화 하고, 외국인과의 상호문화적 이해·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열린사회 구현                                                                               | 내국인과 이주자들이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며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살아감(다문화공생)                                                                                                                                                                              |
| 행위주체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
| 정책목표 대상     | 외국적 동포, 결혼이민자·외국인여성·외국인 자녀, 난민,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 국민                                                                                                                                                            | 합법적 외국인 및 불법체류 외국인                                                                                                                                                                                                             |
| 주요 추진방향     | 외국인 인권 존중과 사회통합, 우수 외국인력 유치                                                                                                                                                                                      | 외국인의 인권 보장,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성 증진, 결혼이민자가족의 역량강화                                                                                                                                                                                     |
| 주요 다문화 프로그램 |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 한국어 교육, 다문화축제, 권익증진, 인권보호, 역량강화 프로그램                                                                                                                                                                                           |
| 문제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외국인의 1/4 가량을 차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배제</li> <li>-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정책으로 소수집단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움</li> <li>- 정부기관 간 중복투자 및 단기적 지원</li> <li>- 순혈주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 인력, 시설 부족으로 내실있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움.</li> <li>-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NGO로서의 위상과 역할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li> <li>- 현 시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진보적인 주장(불법체류자의 전면적 합법화)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음.</li> </ul> |

자료: 한국사회학회, 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보고서.



### 1. 다문화가정의 형성 경로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을 통해서 형성된 다문화가정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의 경로로 전개되어 왔다. 첫째 유형은 ‘미군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1950~1970년대 국제결혼의 주류를 형성했다.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해방 이후부터 미군은 한국에 주둔하였고, 그 이후로 미군 남성과 한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이 미군기지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2세들은 피부색과 겉모습의 차이로 인해서 기피 또는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둘째 유형은 ‘외국인 남성 전문직 종사자와 한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1980년대 이후 나타나는 다문화가정의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신장되자 외국인의 국내 유입과 한국인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제결혼의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셋째 유형은 ‘국내에 들어온 이주노동자와 한국인의 결혼’으로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이 유형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이 주류를 이루는데, 그 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넷째 유형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으로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199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이전에는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1995년 이후에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경우가

우세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농촌의 다문화가정 형성 경로는 이 유형에 속한다.

## 2. 다문화가정의 변화 추이와 현황

### 2.1. 다문화가정의 변화 추이

#### 2.1.1. 국제결혼 추이

국제결혼 건수는 1990년 4,710건에서 2007년 38,491건으로 급증하였다<표 3-1>.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1990년 619건에서 2007년 29,140건으로 급증한 것에 비해,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은 1990년 4,091건에서 2007년 9,351건으로 소폭 증가하였다<그림 3-1>.

#### 2.1.2.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2000년 7,304건에서 2007년 29,140건으로 증가하였다(증가율 299%).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 건수를 국적별로 보면 2007년의 경우, 중국 14,526건(49.8%), 베트남 6,611건(22.7%), 캄보디아 1,804건(6.2%), 일본 1,665건(5.7%)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던 베트남 여자와의 혼인이 2007년에는 전년보다 34.7% 감소하였으나, 캄보디아 여자와의 혼인은 전년보다 357.9% 증가하였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혼인은 2000년 5,015건에서 2007년 9,351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증가율 86%).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혼인 건수를

국적별로 보면 2007년의 경우, 일본 3,684건(39.4%), 중국 2,489건(26.6%), 미국 1,344건(14.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국제결혼 추이(1990~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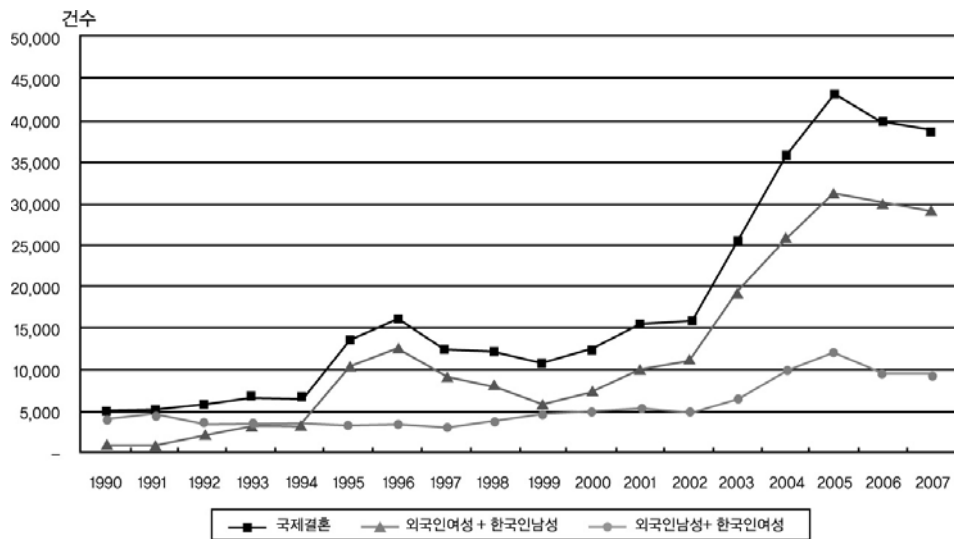


표 3-1.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건, %

| 구분                        |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구<br>성<br>비 | 전년<br>대비<br>증감률 |
|---------------------------|------|-------|--------|--------|--------|--------|--------|--------|--------|-------------|-----------------|
| 한국<br>남자<br>+<br>외국<br>여자 | 계    | 7,304 | 10,006 | 11,017 | 19,214 | 25,594 | 31,180 | 30,208 | 29,140 | 100         | -3.5            |
|                           | 중 국  | 3,586 | 7,001  | 7,041  | 13,373 | 18,527 | 20,635 | 14,608 | 14,526 | 49.8        | -0.6            |
|                           | 베트남  | 95    | 134    | 476    | 1,403  | 2,462  | 5,822  | 10,131 | 6,611  | 22.7        | -34.7           |
|                           | 캄보디아 | *     | *      | *      | 19     | 72     | 157    | 394    | 1,804  | 6.2         | 357.9           |
|                           | 일 본  | 1,131 | 976    | 959    | 1,242  | 1,224  | 1,255  | 1,484  | 1,665  | 5.7         | 12.2            |
|                           | 필리핀  | 1,358 | 510    | 850    | 944    | 964    | 997    | 1,157  | 1,531  | 5.3         | 32.3            |
|                           | 몽 골  | 77    | 118    | 195    | 318    | 504    | 561    | 594    | 745    | 2.6         | 25.4            |
|                           | 태 국  | 270   | 185    | 330    | 346    | 326    | 270    | 273    | 531    | 1.8         | 94.5            |
|                           | 미 국  | 235   | 265    | 267    | 323    | 344    | 285    | 334    | 377    | 1.3         | 12.9            |
|                           | 기 타  | 552   | 817    | 899    | 1,246  | 1,171  | 1,198  | 1,233  | 1,350  | 4.6         | 9.5             |
| 한국<br>여자<br>+<br>외국<br>남자 | 계    | 5,015 | 5,228  | 4,896  | 6,444  | 9,853  | 11,941 | 9,482  | 9,351  | 100         | -1.4            |
|                           | 일 본  | 2,941 | 3,011  | 2,377  | 2,613  | 3,378  | 3,672  | 3,756  | 3,684  | 39.4        | -1.9            |
|                           | 중 국  | 218   | 222    | 272    | 1,199  | 3,621  | 5,042  | 2,597  | 2,489  | 26.6        | -4.2            |
|                           | 미 국  | 1,095 | 1,132  | 1,210  | 1,237  | 1,348  | 1,413  | 1,455  | 1,344  | 14.4        | -7.6            |
|                           | 캐나다  | 149   | 164    | 174    | 223    | 230    | 285    | 308    | 376    | 4.0         | 22.1            |
|                           | 호 주  | 74    | 79     | 89     | 108    | 136    | 102    | 139    | 159    | 1.7         | 14.4            |
|                           | 파키스탄 | 39    | 64     | 126    | 130    | 103    | 219    | 152    | 134    | 1.4         | -11.8           |
|                           | 영국   | 66    | 70     | 87     | 88     | 120    | 106    | 138    | 126    | 1.3         | -8.7            |
|                           | 프랑스  | 65    | 58     | 80     | 78     | 83     | 76     | 98     | 115    | 1.2         | 17.3            |
|                           | 기 타  | 368   | 428    | 481    | 768    | 834    | 1,026  | 839    | 924    | 9.9         | 10.1            |

자료: 통계청, 2008, 「2007년 혼인통계 결과」.

주 : \* 기타에 포함

## 2.2. 다문화가정의 자녀 현황

결혼이민자 자녀는 2008년 7월 기준으로 58,007명으로, 연령별로 ‘만 6세 미만’이 57.1%, ‘만 7세~12세’는 32.2%, ‘만 13세 이상’은 10.6%를 차지한다<표 3-2>.

표 3-2.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

| 구분          | 계      | 만 6세 미만 | 만 7~12세 | 만 13~15세 | 만16~18세 |
|-------------|--------|---------|---------|----------|---------|
| 학생 수<br>(명) | 58,007 | 33,140  | 18,691  | 3,672    | 2,504   |
| 비율(%)       | 100    | 57.1    | 32.2    | 6.3      | 4.3     |

자료: 행정안전부, 2008. 7.

취학 중인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2005년 6,121명에서 2008년 18,769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초등학생은 2005년 5,332명에서 2008년 15,804명으로, 중학생은 2005년 583명에서 2008년 2,205명으로, 고등학생은 2005년 206명에서 2008년 760명으로 증가하였다<표 3-3>.

표 3-3. 결혼이민자 자녀의 취학 현황

| 구분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계      |           |
|------|--------|-----------|-------|-----------|------|-----------|--------|-----------|
|      | 인원     | 증감<br>(%) | 인원    | 증감<br>(%) | 인원   | 증감<br>(%) | 인원     | 증감<br>(%) |
| 2005 | 5,332  | -         | 583   | -         | 206  | -         | 6,121  | -         |
| 2006 | 6,795  | 27.4      | 924   | 58.5      | 279  | 35.4      | 7,998  | 30.6      |
| 2007 | 11,444 | 68.4      | 1,588 | 71.9      | 413  | 48.0      | 13,445 | 68.1      |
| 2008 | 15,804 | 38.1      | 2,205 | 38.9      | 760  | 84.0      | 18,769 | 39.6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8. 4.

### 2.3. 다문화가정의 이혼 실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이혼율은 2003년까지(조이혼율 3.5) 증가하다가 2004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2007년의 조이혼율은 2.5). 그러나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와의 이혼은 2002년 401건에서 2007년 5,794건으로 급증하였다(증가율 1,300%). 2007년의 경우, 이혼 발생 건수는 중국 3,665건(63.3%), 베트남 895건(15.4%), 필리핀 220건(3.8%), 일본 219건(3.8%)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국적별 혼인 구성비(2007년 한국남자와 중국인 여자의 결혼이 전체 국제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9.8%)보다 국적별 이혼 구성비(2007년 한국 남자와 중국인 여자의 이혼이 전체 국제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3.3%)가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국적별 혼인 구성비(2007년 한국 남자와 베트남 여자의 결혼이 전체 국제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7%)보다 국적별 이혼 구성비(2007년 한국 남자와 베트남 여자의 이혼이 전체 국제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4%)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대비 2007년의 이혼 증가율은 베트남(12,700%), 우즈베키스탄(3,600%), 캄보디아(2,400%), 중국(1,900%), 몽골(1,60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2002년 1,465건에서 2007년 3,034건으로 증가하였다(증가율 107%). 국적별로 보면 2007년 경우, 일본 1,650건(54.4%), 중국 649건(21.4%), 미국 259건(8.5%)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남편과의 이혼비중이 높은 것은 혼인누적건수가 타국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2002년 대비 2007년의 이혼 증가율은 중국(1,172%), 파키스탄(1,06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표 3-4. 국적별 외국인과의 이혼건수 및 구성비

단위: 건, %

| 구 분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2007  |       | 증가율<br>(07/02) |        |
|-----------------------|--------|-------|-------|-------|-------|-------|-------|-------|-------|----------------|--------|
|                       |        |       |       |       |       |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        |
| 외<br>국<br>인<br>처      | 계      | 401   | 583   | 1,611 | 2,444 | 100.0 | 4,010 | 100.0 | 5,794 | 100.0          | 1,300  |
|                       | 중 국    | 181   | 275   | 841   | 1,431 | 58.6  | 2,551 | 63.6  | 3,665 | 63.3           | 1,900  |
|                       | 베트남    | 7     | 28    | 147   | 289   | 11.8  | 610   | 15.2  | 895   | 15.4           | 12,700 |
|                       | 필리핀    | 29    | 44    | 112   | 142   | 5.8   | 171   | 4.3   | 220   | 3.8            | 600    |
|                       | 일 본    | 97    | 121   | 145   | 168   | 6.9   | 202   | 5.0   | 219   | 3.8            | 126    |
|                       | 몽 골    | 10    | 6     | 83    | 116   | 4.7   | 132   | 3.3   | 173   | 3.0            | 1,600  |
|                       | 우즈베키스탄 | 3     | 16    | 67    | 75    | 3.1   | 105   | 2.6   | 112   | 1.9            | 3,600  |
|                       | 캄보디아   | *     | *     | 4     | 6     | 0.2   | 19    | 0.5   | 99    | 1.7            | 2,400  |
|                       | 기타     | 74    | 93    | 212   | 217   | 8.9   | 220   | 5.5   | 411   | 7.1            | 500    |
| 외<br>국<br>인<br>남<br>편 | 계      | 1,465 | 1,581 | 1,789 | 1,834 | 100.0 | 2,270 | 100.0 | 3,034 | 100.0          | 107    |
|                       | 일 본    | 1,160 | 1,218 | 1,351 | 1,343 | 73.2  | 1,525 | 67.2  | 1,650 | 54.4           | 42     |
|                       | 중 국    | 51    | 36    | 45    | 124   | 6.8   | 319   | 14.1  | 649   | 21.4           | 1,172  |
|                       | 미 국    | 180   | 226   | 264   | 219   | 11.9  | 238   | 10.5  | 259   | 8.5            | 44     |
|                       | 파키스탄   | 3     | 9     | 16    | 25    | 1.4   | 33    | 1.5   | 35    | 1.2            | 1,066  |
|                       | 방글라데시  | 6     | 5     | 9     | 11    | 0.6   | 17    | 0.7   | 32    | 1.1            | 433    |
|                       | 캐나다    | 7     | 20    | 11    | 21    | 1.1   | 30    | 1.3   | 24    | 0.8            | 243    |
|                       | 기타     | 58    | 67    | 93    | 91    | 5.0   | 108   | 4.8   | 385   | 12.7           | 563    |

자료: 통계청, 2008, 「2007년 이혼통계 결과」.

### 3. 농촌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증가 원인

#### 3.1. 농촌의 다문화가정 현황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시와 농촌을 비교해 보면, 2007년 혼인건수는 도시지역(동부)이 19,762건으로 농촌지역(읍·면부)의 8,033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 여자와의 혼인 구성비는 농촌지역(13.5%)이 도시지역(7.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5>.

2007년에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 7,930명 중 40.0%에 해당하는 3,172명이 외국 여자와 혼인하였으며, 이는 전년보다 1.0%p 감소한 것이다. 농촌지역의 혼인 남자 중 10.0%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그 중 44.5%가 외국 여자와 혼인하였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건수(2007년)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났다<표 3-6 참조>.

표 3-5. 농촌지역(읍·면부)과 도시지역(동부)의 혼인

단위: 건, %

| 구 분  |      | 혼인<br>건수<br>(A) | 한국 남자와<br>외국 여자와의<br>혼인 |              | 농림어업종사<br>남자의 혼인 |              | 농림어업종사<br>남자와<br>외국 여자와의 혼인 |              |
|------|------|-----------------|-------------------------|--------------|------------------|--------------|-----------------------------|--------------|
|      |      |                 | 건수(B)                   | 구성비<br>(B/A) | 건수<br>(C)        | 구성비<br>(C/A) | 건수(D)                       | 구성비<br>(D/C) |
| 2006 | 계*   | 332,752         | 30,208                  | 11.9         | 8,596            | 2.6          | 3,525                       | 41.0         |
|      | 동부   | 256,318         | 19,889                  | 7.8          | 1,767            | 0.7          | 521                         | 29.5         |
|      | 읍·면부 | 58,383          | 8,746                   | 15.0         | 6,481            | 11.1         | 2,991                       | 46.2         |
| 2007 | 계*   | 345,592         | 29,140                  | 11.1         | 7,930            | 2.3          | 3,172                       | 40.0         |
|      | 동부   | 270,980         | 19,762                  | 7.3          | 1,699            | 0.6          | 515                         | 30.3         |
|      | 읍·면부 | 59,701          | 8,033                   | 13.5         | 5,953            | 10.0         | 2,651                       | 44.5         |

자료: 통계청, 2008, 「2007년 혼인통계 결과」.

주 : \* 국외 및 미상 포함

표 3-6.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건수

| 구분 | 2006년 |       |     |     |     | 2007년 |       |     |      |     |
|----|-------|-------|-----|-----|-----|-------|-------|-----|------|-----|
|    | 계     | 베트남   | 중국  | 필리핀 | 기타  | 계     | 베트남   | 중국  | 캄보디아 | 기타  |
| 건수 | 3,525 | 2,394 | 718 | 170 | 243 | 3,172 | 1,353 | 842 | 484  | 493 |

자료: 통계청, 2008, 「2007년 혼인통계 결과」.

2008년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5월에 실시한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계해보았다(표 3-7 참조). 조사결과가 시·군 단위로 되어 있어 도농복합시의 농촌 인구 비율을 35% 정도로 추정하여 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군 지역(86군) 17,294명, 도농복합시 지역(54시) 10,946명으로 총 28,240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3-7.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수(추계)

단위: 명

| 시도별  | 농촌시군 수<br>(군+복합시) | 이민자 합계<br>(A=B+D) | 군지역<br>(B) | 복합시<br>지역<br>(C) | 농촌인구 분포<br>(D=C×0.35) |
|------|-------------------|-------------------|------------|------------------|-----------------------|
| 특광역시 | 5                 | 1,258             | 1,258      | -                | -                     |
| 경기도  | 15                | 4,661             | 1,011      | 10,428           | 3,650                 |
| 강원도  | 15                | 2,084             | 1,539      | 1,558            | 545                   |
| 충청북도 | 11                | 2,398             | 2,111      | 821              | 287                   |
| 충청남도 | 16                | 3,462             | 2,297      | 3,328            | 1,165                 |
| 전라북도 | 13                | 2,503             | 1,696      | 2,307            | 807                   |
| 전라남도 | 21                | 4,219             | 3,573      | 1,846            | 646                   |
| 경상북도 | 23                | 3,402             | 1,841      | 4,460            | 1,561                 |
| 경상남도 | 19                | 3,865             | 1,968      | 5,421            | 1,897                 |
| 제주도  | 2                 | 387               | -          | 1,106            | 387                   |
| 계    | 140               | 28,240            | 17,294     | 31,275           | 10,946                |

주 : 도농복합시의 농촌 인구 비율을 35% 정도로 추정하여 계산함(‘0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참조)

자료: 행정안전부, 2008,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 3.2. 농촌 다문화가정의 증가 원인

### 3.2.1. 국내적 요인

농촌에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게 된 인구학적 요인은 결혼 적령기 인구의 성비 불균형이다. 결혼 적령기(남성 28~32세, 여성 25~29세)의 남녀 인구를 비교해 보면, 1990년 이래 2006년까지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를 초과하고 있으며, 2001~2005년까지는 성비가 1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6). 성비 불균형 현상은 남성에 비해 젊은 여성의 도시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함에 따라 인구이동에 의한 도·농간 미혼인구의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농촌에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게 된 사회경제적 요인을 살펴보면, 여성이 고학력화 되면서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와 가치관의 변화를 겪게 됨에 따라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은 사회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을 선호하고, 결혼에 의한 경력단절을 염려하는 여성들은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추는 경향이 있다. 남녀의 평균 초혼 연령을 보면, 남성(전국)은 1995년 28.4세에서 2007년 31.1세로, 여성(전국)은 1995년 25.4세에서 2007년 28.1세로 증가했다(통계청, 2008). 더구나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사회·문화·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어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젊은 층, 특히 여성으로 하여금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을 기피하게 만들었다. 또한 농촌에 거주하는 저학력의 남성들은 농촌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바뀌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려 및 국제결혼중매업체의 적극적인 상술로 인해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었다(강휘원, 2006; 김현희, 2007).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지자체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한국인 남

성과 중국의 조선족 여성 간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지자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경우, 2007년 5월 말 현재 8개도 60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결혼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2.2. 국외적 요인

세계 자본주의체제에서 국가 간의 불균등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현상이 밀접하게 관련됨에 따라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었다. 빈곤의 여성화가 가속되면서 특히 아시아 여성들의 탈 빈곤 이주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여성들의 경우, 한국 노동시장의 진입이 극히 제약을 받게 되므로 국제결혼이 주요 이주수단이 되고 있다(김현미, 2006).

일본,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는 종교단체인 통일교의 선교 활동을 통한 국제결혼도 다문화가정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통일교는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의 농촌총각과 대체로 학력수준도 높고 사회적 배경도 좋은 일본여성 간의 국제결혼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필리핀, 태국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끝으로,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 영화, 가요, 한식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한류의 영향으로 아시아 저개발 국가 여성들이 코리안 드림을 갖고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1. 국제결혼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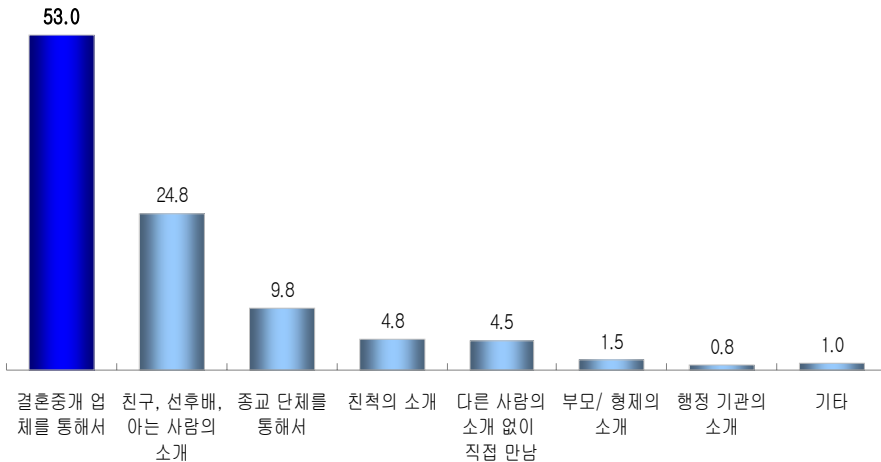
#### 1.1. 결혼 경로 및 동기

##### 1.1.1. 결혼 경로

결혼이민자들에게 결혼하게 된 경로를 질문한 결과,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53.0%), ‘친구, 선후배, 아는 사람을 통해서’(24.8%), ‘종교단체를 통해서’(9.8%), ‘친척의 소개’(4.8%), ‘다른 사람의 소개 없이 직접 만남’(4.5%)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4-1>. 결혼이민자들은 주로 ‘결혼중개업체’(53.0%) 및 ‘친구, 가족, 친척, 지인 등’(31.1%)을 통해서 국제결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결혼 경로

(단위 : %)



### 1.1.2. 결혼의 주요 동기

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32.3%), ‘남편을 사랑해서’(24.0%), ‘본국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21.5%), ‘가족, 친척, 친구 등의 권유로’(11.8%), ‘종교적인 이유로’(6.0%) 등으로 답변하였다<그림 4-2>. ‘남편을 사랑해서’라는 응답은 일본이나 베트남 이외의 국가 출신일수록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라는 응답은 일본(50.0%) 출신일수록, 자신의 종교가 통일교(42.2%)일수록 응답비율이 높았다.

결혼이민자의 남편이 국제결혼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혼기를 놓치고 결혼이 어려워져서’(54.0%), ‘농촌으로 시집오려는 한국여성이 별로 없어서’(25.3%), ‘아내를 사랑해서’(10.5%), ‘한국여성보다 외국인 여성이 더 가정적일 것 같아서’(5.5%), ‘종교적인 이유로’(4.0%) 등이었다<그림 4-3>.

결혼의 주요 동기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는 주로 경제적이며 능동적인 이유인 반면에, 남편은 ‘혼기를 놓치고 결혼이 어려워져서’, ‘농촌으로 시집오려는 한국여성이 별로 없어서’와 같은 수동적인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결혼의 주요 동기(결혼이민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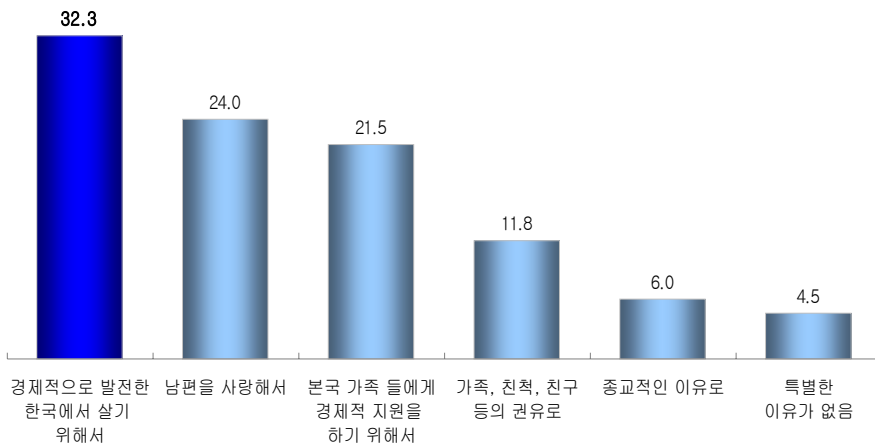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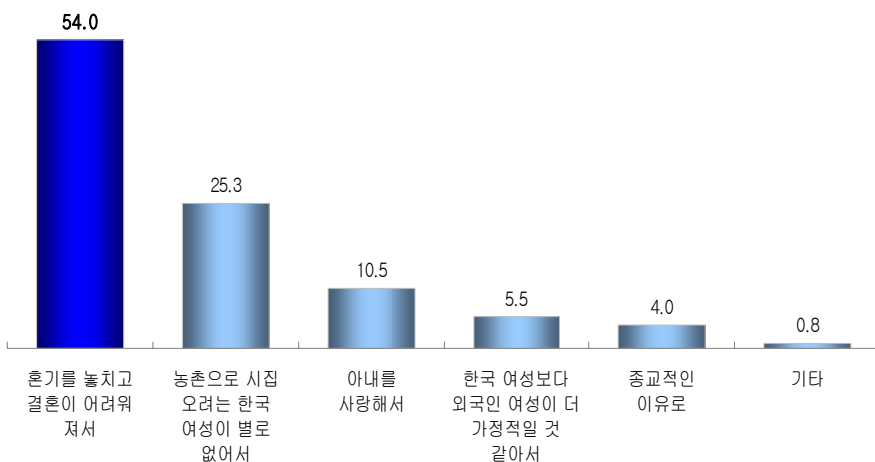


그림 4-3. 결혼의 주요 동기(남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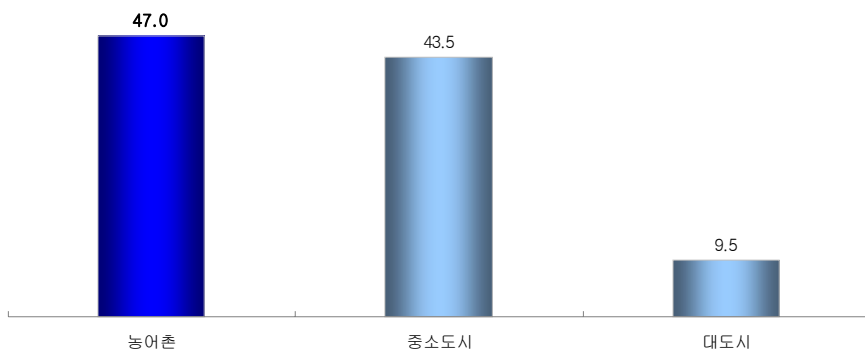
## 1.2. 결혼이민자의 본국에서의 생활

### 1.2.1. 본국에서 거주한 지역

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거주한 지역으로는 대도시(9.5%), 중소도시(43.5%), 농어촌(47.0%)으로 나타나, 과반수이상의 응답자들이 본국에서는 도시에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본국에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했다는 결혼이민자는 응답자의 43.5%였다<그림 4-4>.

그림 4-4. 본국에서 거주한 지역

(단위 : %)



### 1.2.2. 결혼이민자 본가의 경제적 생활수준 인식

결혼이민자 본가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으로 결혼이민자는 ‘부유한 편’(8.3%), ‘보통’(46.5%), ‘가난한 편’(45.0%)으로 응답한 반면, 남편은 ‘부유한 편’(5.0%), ‘보통’(35.3%), ‘가난한 편’(59.5%)으로 답변하였다.

즉, 결혼이민자 본가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가난한 편’으로 인식하는 수준은 남편(59.5%)이 결혼이민자(45.0%)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4-5> 및 <그림 4-6>. 이것은 남편이 결혼이민자보다 상호 비교를 하는 준거기준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4-5. 결혼이민자 본가의 경제적 생활수준 인식(결혼이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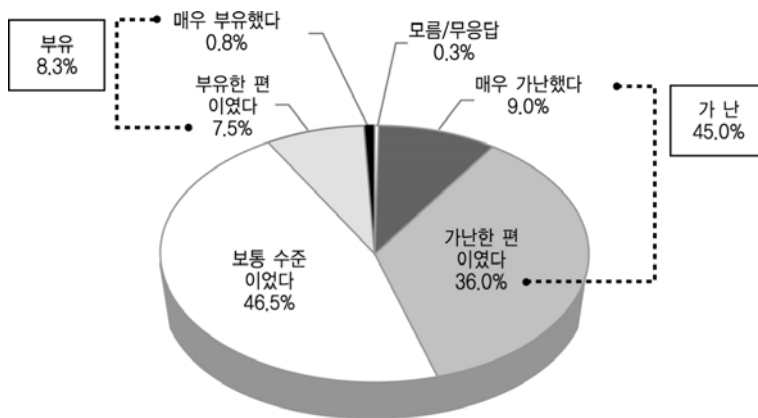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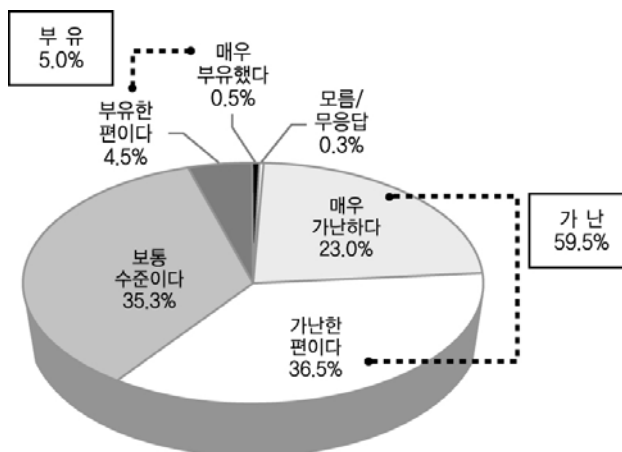


그림 4-6. 결혼이민자 본가의 경제적 생활수준 인식(남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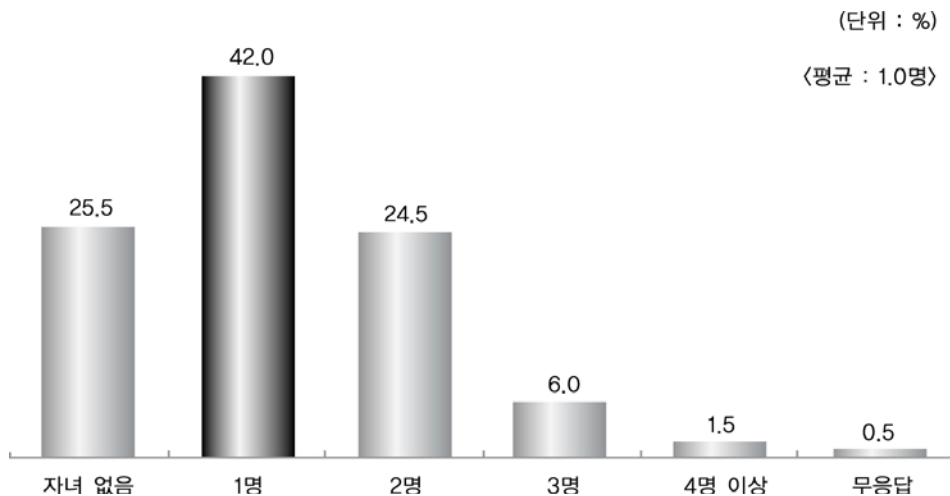
## 2. 결혼생활 실태

### 2.1. 자녀 수 및 가족 유형

#### 2.1.1. 자녀 수

현재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수에 대한 조사 결과, ‘자녀 없음’이 25.5%, 1명이 42.0%, 2명이 24.5%, 3명이 6.0% 4명 이상이 1.5%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가구의 약 1/4 정도는 아직 자녀가 없다<그림 4-7>.

그림 4-7. 자녀 수



## 2.1.2. 가족 유형

다문화가정의 가족 형태는 ‘본인+남편+자녀’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본인+남편+자녀+시아버지+시어머니’(17.8%), ‘본인+남편+자녀+시어머니’(16.5%), ‘본인+남편’(10.0%), ‘본인+남편+시아버지+시어머니’(6.0%), ‘본인+남편+시어머니’(4.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41.8%이고 50% 이상이 확대가족임을 알 수 있다<표 4-1>.

표 4-1. 가족 유형

| 구 분                         | 빈도  | 백분비(%) |
|-----------------------------|-----|--------|
| 본인+남편+자녀                    | 127 | 31.8   |
| 본인+남편+자녀+시아버지+시어머니          | 71  | 17.8   |
| 본인+남편+자녀+시어머니               | 66  | 16.5   |
| 본인+남편                       | 40  | 10.0   |
| 본인+남편+시아버지+시어머니             | 24  | 6.0    |
| 본인+남편+시어머니                  | 18  | 4.5    |
| 본인+남편+자녀+시어머니+남편의 형제자매      | 8   | 2.0    |
| 본인+남편+자녀+시아버지               | 8   | 2.0    |
| 본인+남편+시아버지                  | 7   | 1.8    |
| 본인+남편+자녀+시아버지+시어머니+남편의 형제자매 | 6   | 1.5    |
| 본인+남편+시어머니+남편의 형제자매         | 4   | 1.0    |
| 본인+남편+시아버지+시어머니+남편의 형제자매    | 4   | 1.0    |
| 기타                          | 17  | 4.3    |
| 합 계                         | 400 | 100    |

## 2.2. 경제적 수준

### 2.2.1. 연간 가구 소득

연간 가구 소득 분포(2007년)를 살펴보면, ‘1,000만 원 미만’이 12.2%, ‘1,000~1,500만 원 미만’이 16.5%, ‘1,500~2,000만 원 미만’ 24.7%, ‘2,000~2,500만 원 미만’이 28.5%, ‘2,500~3,000만 원 미만’이 13.0%, ‘3,000만 원 이상’이 4.8%로 나타나 응답가구의 절반 이상(53.6%)이 연간 가구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임을 알 수 있다<표 4-2>. 2007년도의 전국 농가의 평균소득이 31,976천 원(농림수산식품부, 2008)임을 참작해보면 농촌 다문화가정의 대부분(94.9%)이 전국 농가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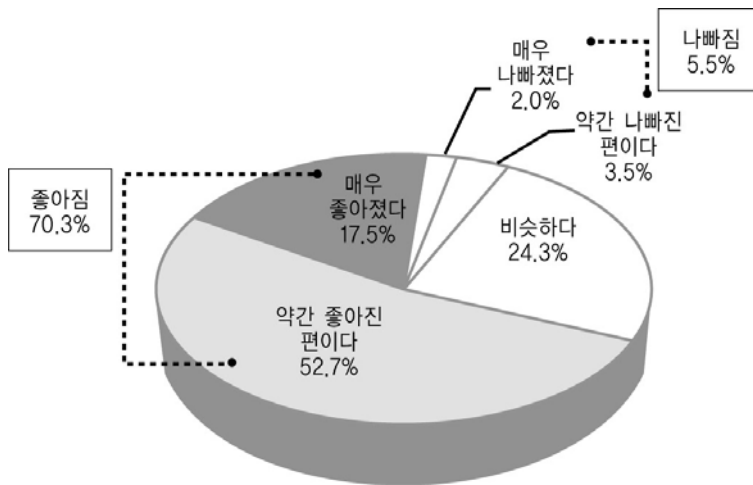
표 4-2. 연간 가구 소득 분포(2007년)

| 응답 범주             | 빈 도 | 백분비(%) |
|-------------------|-----|--------|
| 1,000만 원 미만       | 49  | 12.2   |
| 1,000~1,500만 원 미만 | 66  | 16.5   |
| 1,500~2,000만 원 미만 | 99  | 24.7   |
| 2,000~2,500만 원 미만 | 114 | 28.5   |
| 2,500~3,000만 원 미만 | 52  | 13.0   |
| 3,000만 원 이상       | 19  | 4.8    |
| 잘 모름              | 1   | 0.3    |
| 계                 | 400 | 100.0  |

## 2.2.2. 본국생활과 비교한 현재의 경제적 상태

결혼이민자들이 본국생활과 비교한 현재 경제적 상태에 관한 질문에 ‘매우 좋아졌다’(17.5%), ‘약간 좋아진 편이다’(52.8%), ‘비슷하다’(24.3%), ‘약간 나빠진 편이다’(3.5%), ‘매우 나빠졌다’(2.0%)로 응답하여, 본국생활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제적 상태가 좋아졌다고 보는 응답자가 70.3%를 차지했다<그림 4-8>.

그림 4-8. 본국생활과 비교한 현재의 경제적 상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결혼이민자들의 본국생활과 비교한 경제상태 변화는 본국에서의 거주지역이 농어촌일수록, 결혼이민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4-3>.

표 4-3.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결혼이민자들의 경제 상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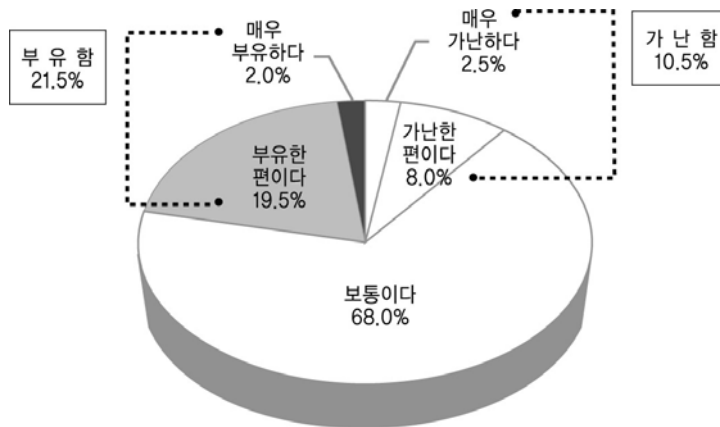
단위: 명, %

| 구 분            |          | 경제 상태 변화                            |                  | 계          | 통계                                  |
|----------------|----------|-------------------------------------|------------------|------------|-------------------------------------|
|                |          | 좋아지지 않았다<br>(비슷, 나빠진 편,<br>매우 나빠졌다) | 좋아졌다<br>(매우, 약간) |            |                                     |
| 본국<br>거주<br>지역 | 도시       | 27(12.7)                            | 185(87.3)        | 212(100.0) | $\chi^2=7.091$<br>df = 1<br>p < .05 |
|                | 농어촌      | 43(22.9)                            | 145(77.1)        | 188(100.0) |                                     |
|                | 계        | 70(17.5)                            | 330(82.5)        | 400(100.0) |                                     |
| 이민<br>자<br>학력  | 중졸<br>이하 | 45(20.7)                            | 172(79.3)        | 217(100.0) | $\chi^2=3.354$<br>df = 1<br>p < .05 |
|                | 고졸<br>이상 | 25(13.7)                            | 157(86.3)        | 182(100.0) |                                     |
|                | 계        | 70(17.5)                            | 329(82.5)        | 399(100.0) |                                     |

### 2.2.3. 한국의 이웃들과 비교한 가정 생활수준

한국의 이웃들과 비교한 현재의 가정 생활수준 정도에 대한 결혼이민자들의 응답은 ‘매우 부유하다’(2.0%), ‘부유한 편이다’(19.5%), ‘보통이다’(68.0%), ‘가난한 편이다’(8.0%), ‘매우 가난하다’(2.5%)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이웃들과 비교하여 가정의 생활수준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1.5%이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5% 정도로 나타나, 결혼이민자의 약 2/3 정도는 가정의 생활수준이 한국의 이웃들과 비슷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9>.

그림 4-9. 한국의 이웃들과 비교한 가정 생활수준(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생활수준을 비교해보면, 결혼이민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한국의 이웃들과 비교한 가정 생활수준이 ‘부유한 편’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4>.

표 4-4.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생활수준 비교(결혼이민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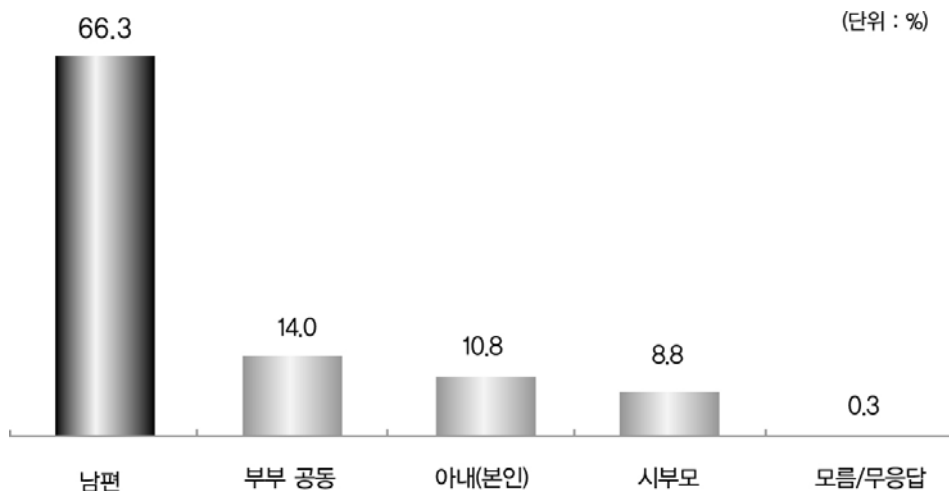
| 구 분        |           | 생활 수준 비교 |           |          | 계          | 통계                                       |
|------------|-----------|----------|-----------|----------|------------|------------------------------------------|
|            |           | 부유한 편    | 보통        | 가난한 편    |            |                                          |
| 이민자<br>연령대 | 25세 미만    | 31(27.0) | 75(65.2)  | 9(7.8)   | 115(100.0) | $\chi^2=14.456$<br>$df = 6$<br>$p < .05$ |
|            | 25~30세 미만 | 32(26.0) | 82(66.7)  | 9(7.3)   | 123(100.0) |                                          |
|            | 30~35세 미만 | 13(18.6) | 49(70.0)  | 8(11.4)  | 70(100.0)  |                                          |
|            | 35세 이상    | 10(10.9) | 66(71.7)  | 16(17.4) | 92(100.0)  |                                          |
|            | 계         | 86(21.5) | 272(68.0) | 42(10.5) | 400(100.0) |                                          |
| 이민자<br>학력  | 중졸 이하     | 61(28.1) | 132(60.8) | 24(11.1) | 217(100.0) | $\chi^2=13.139$<br>$df = 2$<br>$p < .05$ |
|            | 고졸 이상     | 25(13.7) | 139(76.4) | 18(9.9)  | 182(100.0) |                                          |
|            | 계         | 86(21.6) | 271(67.9) | 42(10.5) | 399(100.0) |                                          |

## 2.3. 생활비 관리 및 가사노동

### 2.3.1. 생활비 관리

생활비 관리의 주체에 관한 질문에, 남편(66.3%), 부부 공동(14.0%), 아내(10.8%), 시부모(8.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응답 가구의 약 2/3 정도(66.3%)가 남편이 생활비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를 ‘부부 공동 또는 아내(본인)’가 관리하는 비율은 24.8%에 불과하며, 주로 남편이나 시부모(75.1%)가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0>.

그림 4-10. 생활비 관리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생활비 관리 주체를 보면, 본국 거주지역이 도시일수록, 농사 경험이 없을수록,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부부간의 연령차가 작을수록, 결혼이민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공동 또는 아내’가 생활비를 관리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조선족(24.4%), 일본(22.7%), 필리핀(17.8%)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아내(본인)가 생활비를 관리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조선족의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남녀평등 사상, 일본출신은 통일교, 필리핀 출신은 미국 및 통일교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4-5.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생활비 관리 주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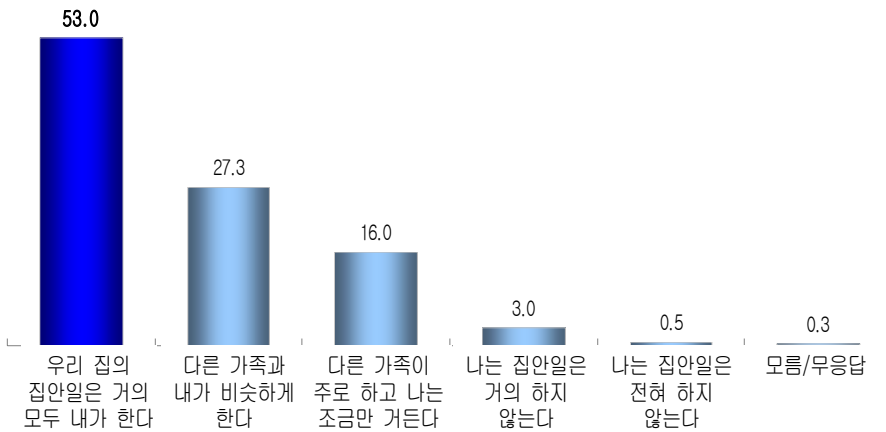
| 구 분            |              | 생활비 관리         |              | 계          | 통 계                                   |
|----------------|--------------|----------------|--------------|------------|---------------------------------------|
|                |              | 부부 공동<br>또는 아내 | 남편<br>또는 시부모 |            |                                       |
| 본국<br>거주<br>지역 | 도시           | 71(33.5)       | 141(66.5)    | 212(100.0) | $\chi^2=18.262$<br>df = 1<br>p < .001 |
|                | 농어촌          | 28(15.0)       | 159(85.0)    | 187(100.0) |                                       |
|                | 계            | 99(24.8)       | 300(75.2)    | 399(100.0) |                                       |
| 농사<br>경험       | 전혀<br>없다     | 47(32.0)       | 100(68.0)    | 147(100.0) | $\chi^2=6.285$<br>df = 1<br>p < .05   |
|                | 있다           | 52(20.7)       | 199(79.3)    | 251(100.0) |                                       |
|                | 계            | 99(24.9)       | 299(75.1)    | 398(100.0) |                                       |
| 한국<br>거주<br>기간 | 3년 미만        | 25(13.2)       | 165(86.8)    | 190(100.0) | $\chi^2=30.114$<br>df = 2<br>p < .001 |
|                | 3~5년 미만      | 28(29.2)       | 68(70.8)     | 96(100.0)  |                                       |
|                | 5년 이상        | 46(40.7)       | 67(59.3)     | 113(100.0) |                                       |
|                | 계            | 99(24.8)       | 300(75.2)    | 399(100.0) |                                       |
| 이민자<br>연령대     | 25세 미만       | 14(12.2)       | 101(87.8)    | 115(100.0) | $\chi^2=25.318$<br>df = 3<br>p < .001 |
|                | 25~30세<br>미만 | 26(21.1)       | 97(78.9)     | 123(100.0) |                                       |
|                | 30~35세<br>미만 | 21(30.4)       | 48(69.6)     | 69(100.0)  |                                       |
|                | 35세 이상       | 38(41.3)       | 54(58.7)     | 92(100.0)  |                                       |
|                | 계            | 99(24.8)       | 300(75.2)    | 399(100.0) |                                       |
| 연령차            | 10세 미만       | 51(41.5)       | 72(58.5)     | 123(100.0) | $\chi^2=31.352$<br>df = 2<br>p < .001 |
|                | 10~20세 미만    | 43(20.9)       | 163(79.1)    | 206(100.0) |                                       |
|                | 20세 이상       | 5(7.2)         | 64(92.8)     | 69(100.0)  |                                       |
|                | 계            | 99(24.9)       | 299(75.1)    | 398(100.0) |                                       |
| 이민자<br>학력      | 중졸 이하        | 41(19.0)       | 175(81.0)    | 216(100.0) | $\chi^2=8.778$<br>df = 1<br>p < .05   |
|                | 고졸 이상        | 58(31.9)       | 124(68.1)    | 182(100.0) |                                       |
|                | 계            | 99(24.9)       | 299(75.1)    | 398(100.0) |                                       |

### 2.3.2. 집안일 참여 정도

결혼이민자의 집안일 참여 정도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우리 집의 집안일은 거의 모두 내가 한다’(53.0%), ‘다른 가족과 내가 비슷하게 한다’(27.3%), ‘다른 가족이 주로 하고 나는 조금만 거든다’(16.0%), ‘나는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3.0%), ‘나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0.3%)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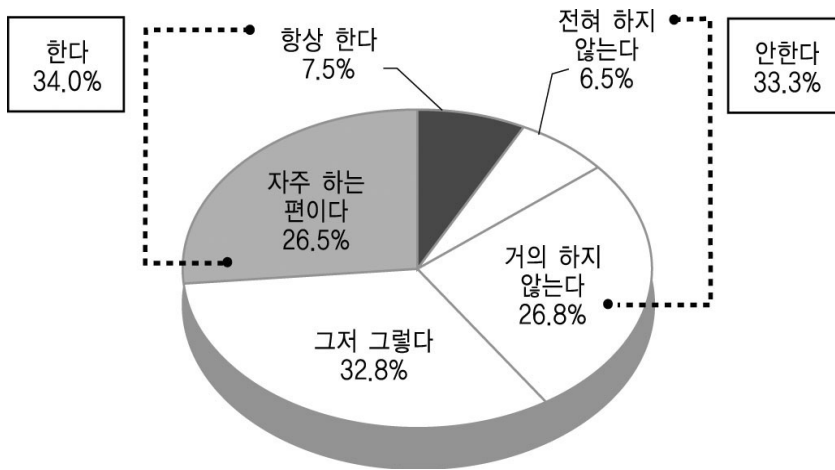
그림 4-11. 집안일 참여정도(결혼이민자)

(단위 : %)



남편의 집안일 참여 정도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전혀 하지 않는다’(6.5%), ‘거의 하지 않는다’(26.8%), ‘그저 그렇다’(32.8%), ‘자주 하는 편이다’(26.5%), ‘항상 한다’(7.5%)로 나타나, 집안일을 자주 또는 항상 하는 남편은 응답자의 1/3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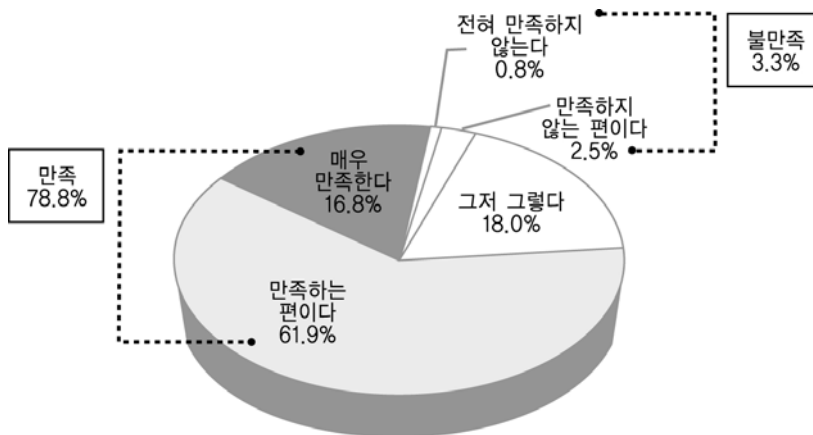
그림 4-12. 집안일 참여정도(남편)



## 2.4. 결혼생활 만족도

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16.8%), ‘만족하는 편’(62.8%), ‘그저 그렇다’(18.0%), ‘만족하지 않는 편’(2.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8%)로,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78.8%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과거 본국에서의 생활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13>.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은 농사 경험이 있을수록, 한국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일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3. 결혼생활 만족도(결혼이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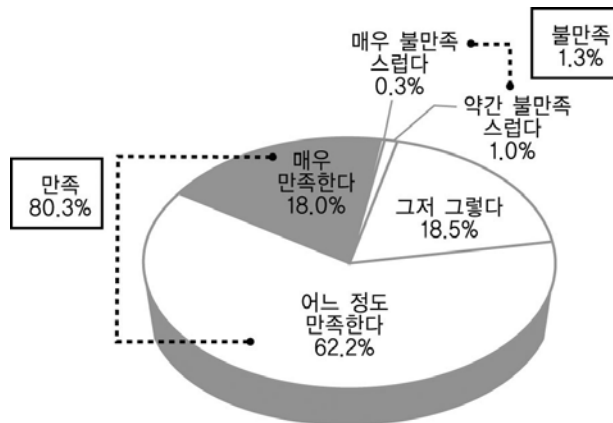


남편의 결혼생활 만족도에 관한 응답결과는 ‘매우 만족’(18.0%), ‘어느 정도 만족’(62.3%), ‘그저 그렇다’(18.5%), ‘약간 불만족’(1.0%), ‘매우 불만족’(0.3%)으로 나타났다.

부부를 비교해보면, 결혼생활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은 결혼이민자(78.8%)보다 남편(80.3%)이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4>. 그리고 남편은 겸업농가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결혼생활 만족도와 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교차표 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남편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 만족도도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림 4-14. 결혼생활 만족도(남편)



## 2.5. 애로사항

### 2.5.1. 현재 결혼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

결혼이민자들이 결혼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의사)소통 곤란’(44.8%), ‘문화적 차이’(34.3%), ‘생활비의 부족’(8.8%), ‘외로움’(5.0%)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15>. 결혼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중국(조선족)과 일본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은 ‘문화적 차이’를, 기타 국가 출신들은 ‘언어(의사)소통 곤란’이라고 응답하였다.

결혼이민자의 남편들이 생각하는 결혼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문화적 차이’(39.5%), ‘언어(의사)소통의 문제’(37.5%), ‘차별적인 한국인의 태도’(3.0%)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16>. 문화적 차이의 예로는 식사예절, 인사법, 시부모와의 관계, 음식문화, 육아방식 등에 있어서 차이를 들 수 있다.

그림 4-15. 현재 결혼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결혼이민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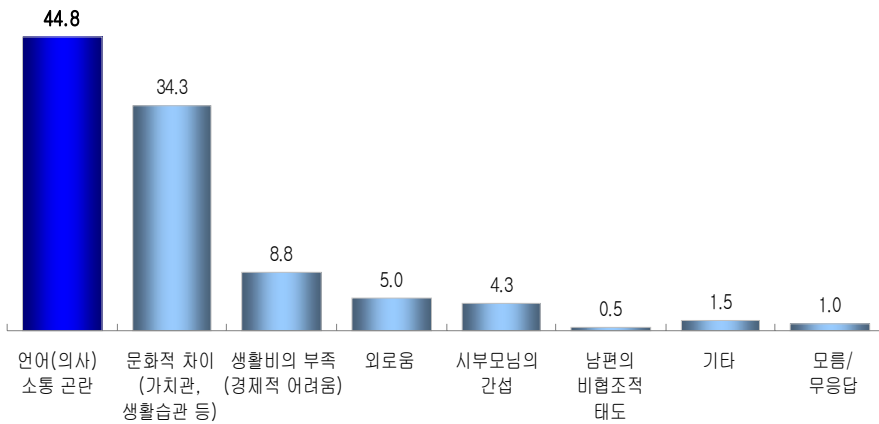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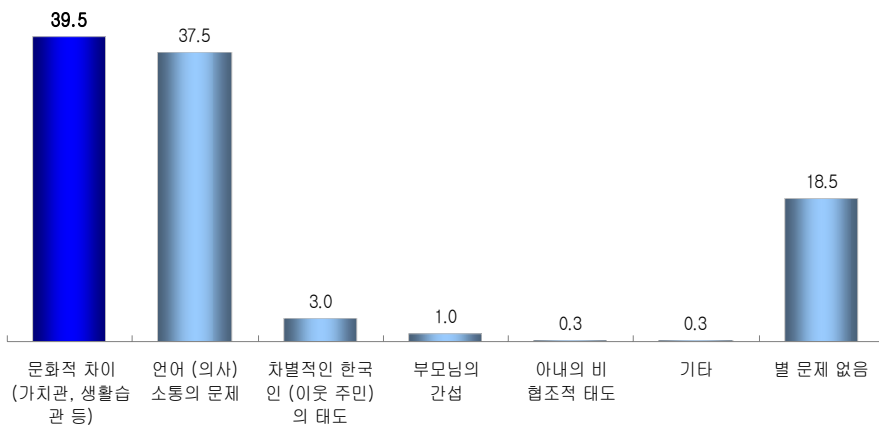


그림 4-16. 현재 결혼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남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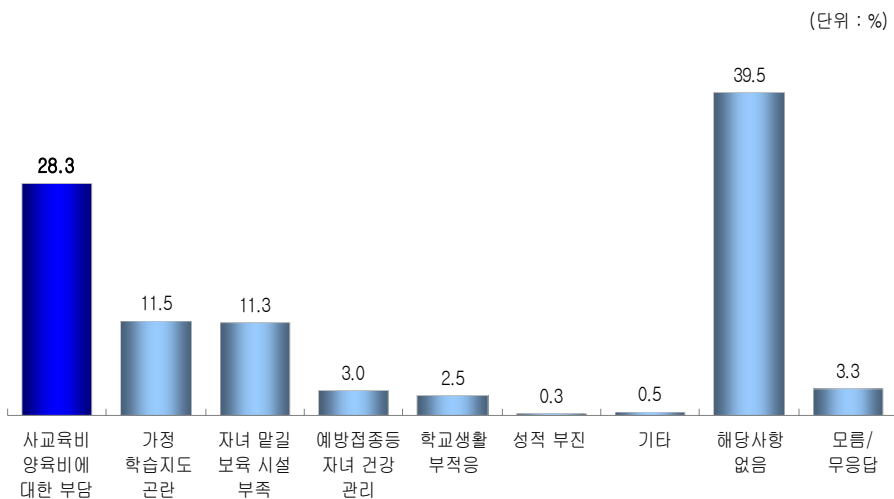
(단위 : %)



## 2.5.2. 자녀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

자녀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남편에게 질문한 결과, ‘사교육비와 양육비에 대한 부담’(49.3%), ‘가정 학습지도 곤란’(20.0%), ‘자녀를 맡길만한 보육시설 부족’(19.7%), ‘예방접종 등 자녀 건강관리’(5.2%), ‘학교생활 부적응’(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17>.

그림 4-17. 자녀교육에서 어려운 점



## 3. 심층 면접조사 등에서 파악된 주요 내용

심층 면접조사 등을 통해 살펴본 결혼이민자와의 결혼 경로를 보면, 결혼중개업체를 통했을 때 남편에 대한 과장된 정보를 제공받아 한국에 도착

한 뒤에 남편의 직업, 소득수준, 재산 상태 등이 사실과 너무 달라서 크게 실망했다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 친구, 친척 등과 같은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신랑감을 소개받아서 결혼한 경우에는 남편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알고 결혼을 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교의 주선으로 결혼한 경우는 종교논리(신의 뜻에 의한 숙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여타의 결혼이민자들과는 삶의 자세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본 출신의 통일교 신자 가정의 경우에는 한국인 남편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은 참된 가정을 이루어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혼이민자들이 결혼하게 된 동기는 다양하나 경제적인 측면이 많았으며, 한류문화의 확산도 한국에 대한 동경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드라마와 가요를 접한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농촌 총각과 결혼했으나 입국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시댁에 들어가면서 한국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민속촌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결혼이민자의 말은 이러한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결혼이민자들의 입국 초기에는 음식 취향의 차이 등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많았다. 특히, 음식과 관련해서는 청국장, 된장, 향채(고추), 마늘, 김치 등과 관련하여 가족 간에 알게 모르게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눈치를 봐서 적당히 하는 행동을 보고 결혼이민자들의 언어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때 답답함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피부색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결혼이민자(예를 들면, 필리핀)의 자녀들일수록 각종 학교에서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중국이나 일본 출신의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경우, 외관상 표시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등에서 놀림이나 따돌림을 다소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소통에 있어서는 조선족뿐만 아니라 필리핀 출신도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출신은 간단한 영어회화로 부부간에 의사소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언어소통에 있어서 가장 곤란한 집단은 캄보디아 출신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에는 통역자나 번역자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사전도 구입하기가 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들은 남편이나 시부모가 자신들에게 경제권을 주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취급할 때가 많아서 속상하다고 했으며, 이는 가부장주의의 영향과 함께 결혼이민자의 연령차가 크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남편이나 시부모의 견해는 부인 또는 며느리가 자녀(또는 손자녀)를 낳고 한국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점차 경제권을 넘겨줄 것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결혼이민자의 속내를 좀 더 살펴보면, 만약 남편이나 시부모가 가정의 경제권을 모두 넘겨준다면 오히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자신이 원하는 일정 영역에서의 경제권만 넘겨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회주의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가사 분담 있어서 남녀평등의식이 확실하지만 한국의 농촌 남편들은 유교적 가부장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집안 일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문화적인 차이를 겪고 있었다. 부모양계 가족제도를 가진 필리핀에서 온 결혼이민자들은 친정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매우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온 K씨(31세)는 중국에서는 부부가 가사노동을 같이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데 반해서 한국은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서 남자들이 가사 일에 별로 참여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또한 남편의 잦은 음주와 도박(특히, 농한기의 노름) 등으로 인해 결혼이민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특히, 열대지방 출신은 술을 마시지 않는 본국의 풍습으로 인해서 남편의 음주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거주지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사기결혼, 가출 등에 관한 경험과 소문 등으로 인해서 결혼이민자가 도망갈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는 해당 가구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남편의 정신적·신체적 조건에 있어서 약점이 있을수록, 조선족일수록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한국 여성농업인들은 결혼이민자들을 자신들이 돌봐줄 여성으로만 생각할 뿐이고 자신의 파트너나 동료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서 결혼이민자들은 자신들의 한국 거주기간이 어느 정도(예를 들면 4~5년) 경과하면 각종 여성 관련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할 의사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소결

국제결혼과정과 결혼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결혼이민자들은 주로 ‘결혼중개업체’(53.0%) 및 ‘친구, 가족, 친척, 지인 등’(31.1%)을 통해서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결혼한 경우일수록 결혼생활이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 주요 동기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는 주로 경제적이며 능동적인 이유인 반면에, 남편은 ‘혼기를 놓치고 결혼이 어려워져서’, ‘농촌으로 시집오려는 한국여성이 별로 없어서’와 같은 수동적인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유형은 50% 이상이 확대가족이며, 가정의 생활비 관리는 주로 ‘남편이나 시부모’(75.1%)가 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은 자신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수준에 따라서 경제적 자율권도 어느 정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가구의 절반 이상(53.6%)이 연간 가구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

고, 대부분의 가구(94.9%)가 2007년도의 전국 농가의 평균소득(31,976원)보다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연간 가구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들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은 본국생활과 한국생활의 상대적 비교 때문으로 보인다. 이것은 본국의 생활과 비교하여 생활수준이 좋아졌다는 응답비율이 70.3%나 된다는 사실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결혼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의사)소통 곤란’, ‘문화적 차이’ 등이며, 출신국가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교육비와 양육비에 대한 부담’, ‘가정 학습지도 곤란’, ‘자녀를 맡길만한 보육시설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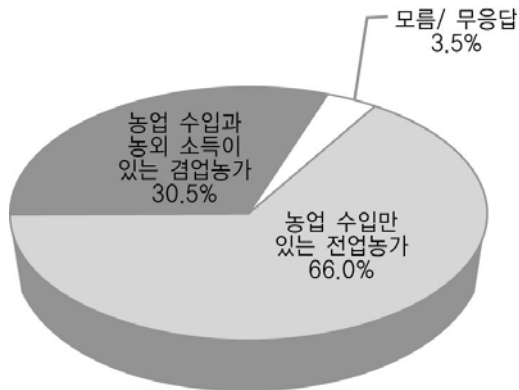
### 1. 영농 실태

#### 1.1. 농가 형태 및 농지

##### 1.1.1. 농가 형태

조사대상 다문화가정의 농가 형태는 전업농(66.0%), 겸업농(30.5%)으로 나타났다<그림 5-1>. 통계청(2007)의 농업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전업농 비율은 61.3%이고, 겸업농 비율은 38.7%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 다문화가정의 전업농 비율은 전국 농가의 전업농 비율보다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혼이민자들은 일반적인 한국인들에 비해서 비농업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부족하다는 현실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5-1. 농가 형태



### 1.1.2. 농지 소유 현황

논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320가구(80.0%)로 나타났다. 즉, 응답가구의 20%는 논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논 소유 분포를 보면, ‘3,000평 이하’가 61.6%, ‘3,001~6,000평’이 17.5%, ‘6,001평 이상’이 20.6%로 나타나 논 소유자의 79.1%가 2ha 이하의 논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밭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294가구(73.5%)로 나타났다. 즉, 응답가구의 26.5%는 밭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밭 소유 분포를 보면, ‘3,000평 이하’가 86.7%, ‘3,001~6,000평’이 6.1%, ‘6,001평 이상’이 7.1%로 나타나 밭 소유자의 대부분(86.7%)이 1ha 이하의 밭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과 밭을 합한 농지 소유면적은 ‘3,000평 이하’가 46.9%, ‘3,001~6,000평 이하’가 31.9%, ‘6,001~9,000평 이하’ 7.8%, ‘9,001평 이상’이 13.4%로 나타나 응답가구의 3/4 이상(78.8%)이 농지 소유면적이 2ha 이하임을 알 수 있다<표 5-1>. 결혼이민자 가구의 평균 농지(논·밭) 소유면적은 4,838평(1.61ha)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농지 소유 규모(2007년 1.45ha)보다 약간 더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농지(논·밭) 소유면적 분포(2007년)

| 응답 범주              | 빈 도 | 백분비(%) |
|--------------------|-----|--------|
| 3,000평 이하          | 168 | 46.9   |
| 3,001~ 6,000만 평 이하 | 114 | 31.9   |
| 6,001~9,000만 평 이하  | 28  | 7.8    |
| 9,001평 이상          | 48  | 13.4   |
| 계                  | 358 | 100.0  |

\* 농지(논·밭)를 전혀 소유하지 못한 응답자는 42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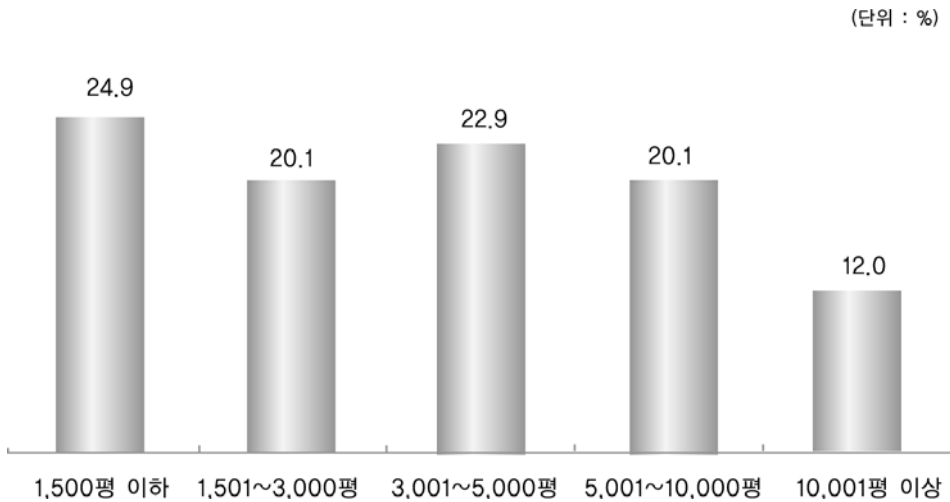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59가구(14.8%)로 나타났다. 과수원 소유 분포를 보면, ‘3,000평 이하’가 61.0%, ‘3,001~6,000평’이 20.4%, ‘6,001평 이상’이 18.6%로 나타나 과수원 소유자의 대부분(81.4%)이 2ha 이하의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지 또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42가구(10.5%)로 나타났다. 초지·임야 소유 분포를 보면, ‘3,000평 이하’가 38.1%, ‘3,001~6,000평’이 16.7%, ‘6,001~10,000평’이 28.6%, ‘10,001평 이상’ 33.3%로 나타났다.

### 1.1.3. 농지 경작면적 분포

농지(논·밭) 경작면적 분포를 보면, 응답 가구의 45%가 논과 밭을 합한 경작면적이 3,000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경작면적이 10,001평 이상인 가구는 12.0%로 나타났다<그림 5-2>.

그림 5-2. 농지(논·밭) 경작면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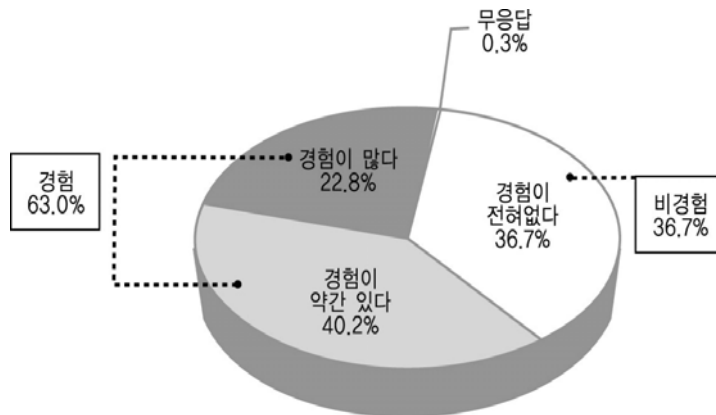


## 1.2. 영농 참여

### 1.2.1. 결혼이민자의 본국에서의 농사 경험

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농사를 지어 본 경험에 관해 문의한 결과, ‘경험이 많다’ 22.8%, ‘경험이 약간 있다’ 40.2%, ‘경험이 전혀 없다’ 36.7%를 차지하여, 결혼이민자의 약 2/3 정도는 본국에서 농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3>.

그림 5-3. 결혼이민자의 본국에서의 농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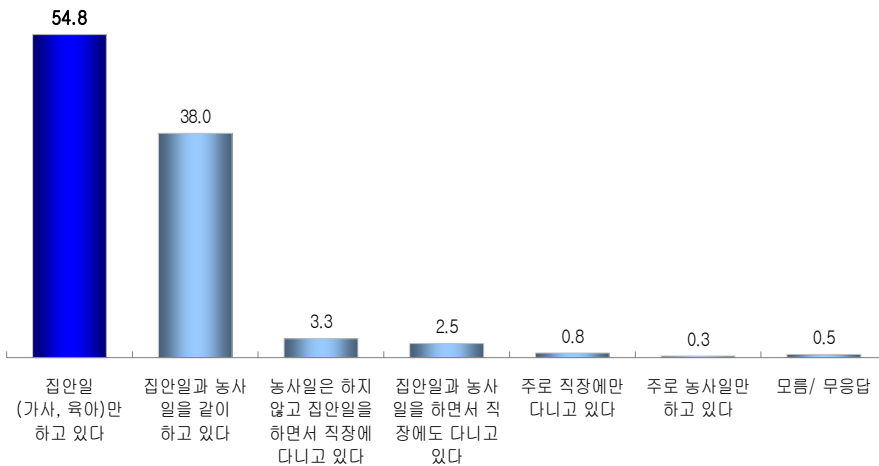


## 1.2.2. 결혼이민자의 생활 형태(영농참여)에 대한 남편의 인식

남편이 인식하는 결혼이민자의 생활 형태(영농참여 관련)에 관해 문의한 결과, ‘집안일만 하고 있다’(54.8%), ‘집안일과 농사일을 같이 하고 있다’(38.0%), ‘집안일과 농사일을 하면서 직장에도 다니고 있다’(2.5%), ‘농사일은 하지 않고 집안일을 하면서 직장에도 다니고 있다’(3.3%)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5-4>.

그림 5-4. 결혼이민자의 생활 형태(영농참여)에 대한 남편의 인식

(단위 : %)



### 12.3. 농사일에서 결혼이민자의 역할 비중 인식

결혼이민자가 응답한 농사일에서 본인의 역할 비중은 ‘다른 가족과 비슷하게 한다’(12.5%), ‘다른 가족이 주로 하고 나는 조금만 거든다’(22.0%), ‘다른 가족이 주로 하고 나는 아주 바쁠 때만 가끔 돕는다’(22.3%), ‘농사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18.8%), ‘농사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24.3%)로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5-5>. ‘농사일을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결혼이민자의 비율은 43.1%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농사일을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일을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을 출신국별로 비교해보면, 중국(조선족) 48.8%, 필리핀 44.5%, 베트남 43.7%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인식하는 농사일에서 부인의 역할 비중에 대한 응답은 ‘다른 가족과 부인이 비슷하게 한다’(14.0%), ‘다른 가족이 주로 하고 부인은 조금

만 거든다’(19.0%), ‘다른 가족이 주로 하고 부인은 아주 바쁠 때만 가끔 돕는다’(18.8%), ‘농사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21.3%), ‘농사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24.8%)으로 나타났다<그림 5-6>. 결혼이민자가 ‘농사일을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남편의 비율은 46.1%로 나타났다.

그림 5-5. 농사일에서 결혼이민자의 역할 비중 인식(결혼이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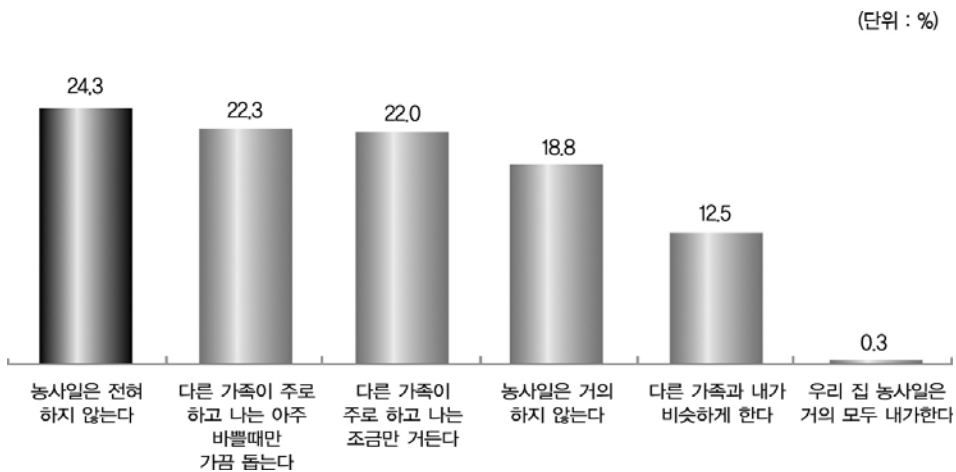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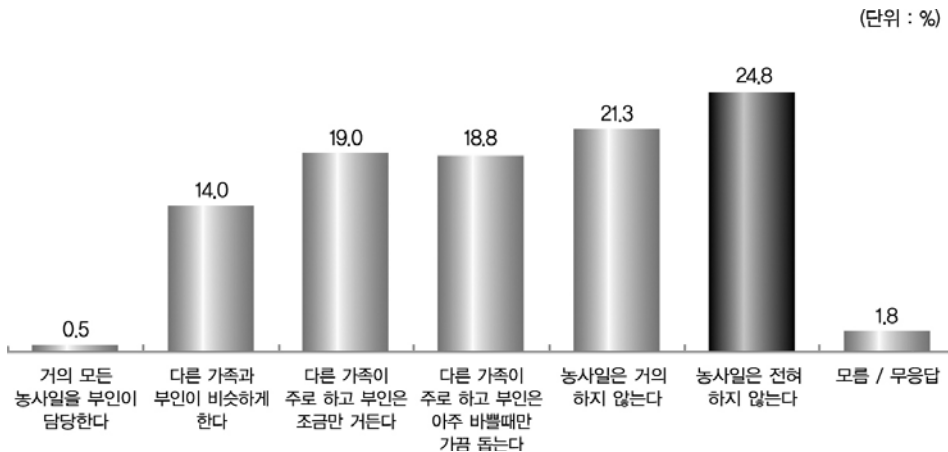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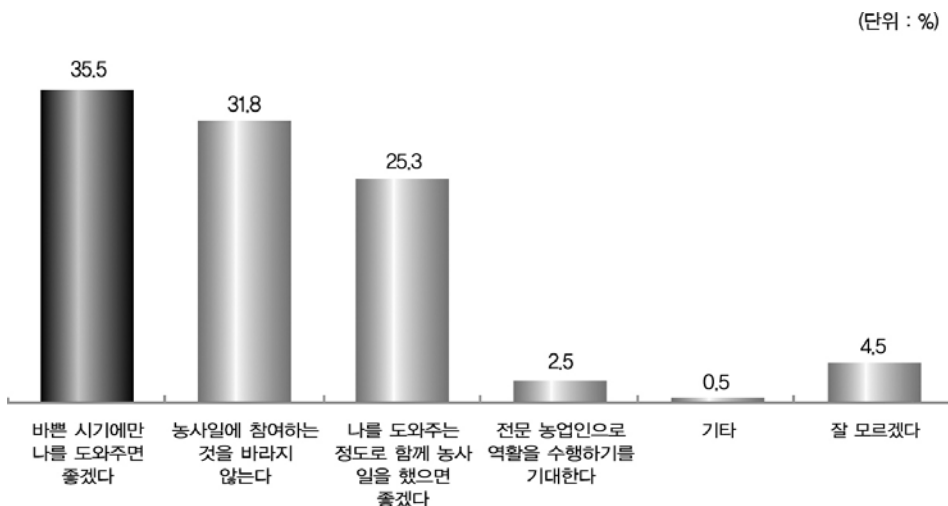
그림 5-6. 농사일에서 결혼이민자의 역할 비중 인식(남편)



#### 12.4. 남편이 희망하는 부인의 농사참여 정도

남편이 희망하는 부인의 농사참여 정도에 대한 남편의 응답결과는 ‘전문 농업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2.5%), ‘나를 도와주는 정도로 함께 농사일을 했으면 좋겠다’(25.3%), ‘바쁜 시기에만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25.3%), ‘농사일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31.8%), ‘잘 모르겠다’(4.5%)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2/3(63.3%)는 부인(결혼이민자)이 여하튼 농사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이 ‘농사일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남편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3 정도(31.8%)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7>.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교차표 분석에서는 남편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인이 농사에 더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7. 남편이 희망하는 부인의 농사참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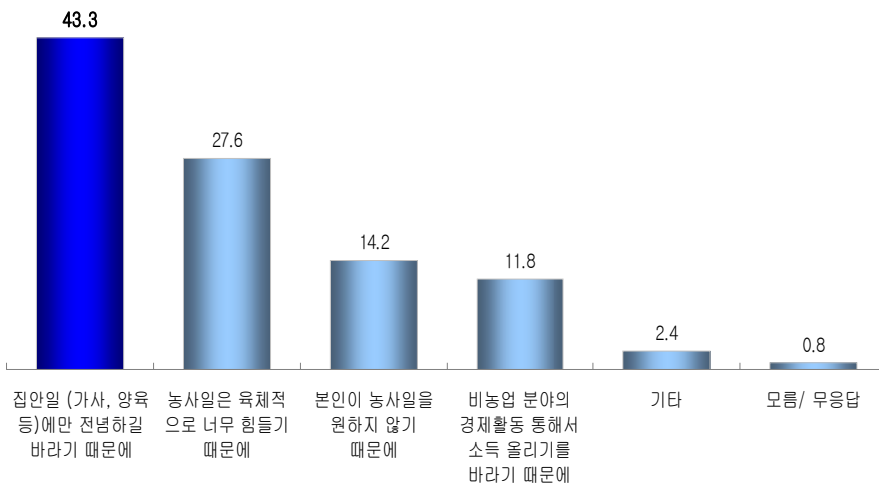


### 12.5. 남편이 부인의 농사참여를 바라지 않는 주요 이유

남편이 부인의 농사참여를 바라지 않는 주요 이유는 ‘농사일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27.6%), ‘집안일에만 전념하길 바라기 때문에’(43.3%), ‘비농업 분야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기를 바라기 때문에’(11.8%), ‘본인이 농사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14.2%)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5-8>.

그림 5-8. 남편이 희망하는 부인의 농사참여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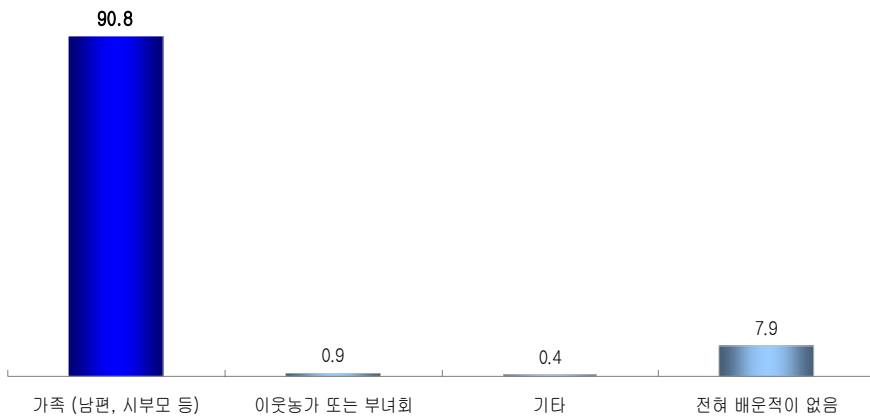
### 1.3. 영농교육

#### 1.3.1. 한국에 와서 농사기술을 주로 배운 곳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농사기술을 배운 대상은 가족(90.8%), 이웃농가 또는 부녀회(0.9%), 기타(0.4%), 전혀 배운 적이 없음(7.9%)로 나타나,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90.8%)은 남편이나 시부모와 같은 가족들로부터 농사일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9>.

그림 5-9. 한국에 와서 농사기술을 주로 배운 곳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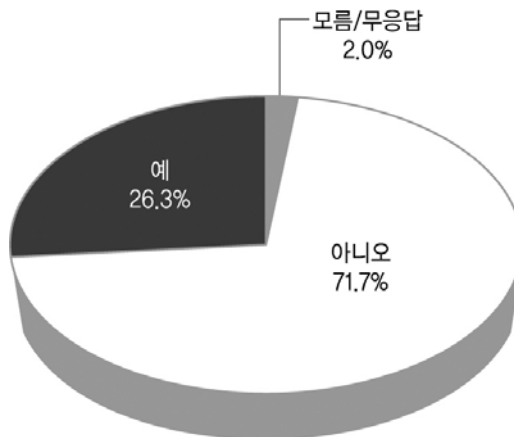
### 1.3.2. 농기계나 차량을 다룰 수 있는 결혼이민자의 비율

농기계나 차량을 다룰 수 있는 결혼이민자의 비율은 경운기(6.5%), 트랙터(1.8%), 콤바인(1.0%), 트럭(3.0%), 승용차(7.5%), 오토바이(25.3%)로 나타났다. 즉, 농기계나 차량을 다룰 수 있는 결혼이민자는 극소수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다만, 결혼이민자의 약 1/4 가량은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3. 결혼이민자의 영농교육 참여의사

결혼이민자에게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농협 등에서 실시하는 결혼이민자 대상 농업 관련 교육 참여의사를 문의한 결과,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은 26.3%를 차지하며, 결혼이민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영농교육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0>.

그림 5-10. 결혼이민자의 영농교육 참여의사



### 1.3.4. 결혼이민자 영농교육 참여에 대한 남편의 허가 의사

남편에게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농협 등에서 실시하는 결혼이민자 대상 농업 관련 교육 참여 의사를 문의한 결과, 부인이 참여하도록 허가하겠다는 비율은 23.8%를 차지하였다<그림 5-11>.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남편의 부인 영농교육 참여 허가 의사는 중·산간지역일수록, 결혼이민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연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2>.

그림 5-11. 부인의 영농교육 참여 허가 의사(남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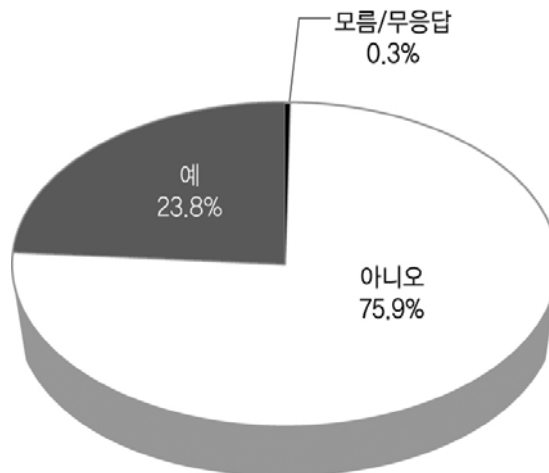


표 5-2.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부인의 영농교육 참여 허가 의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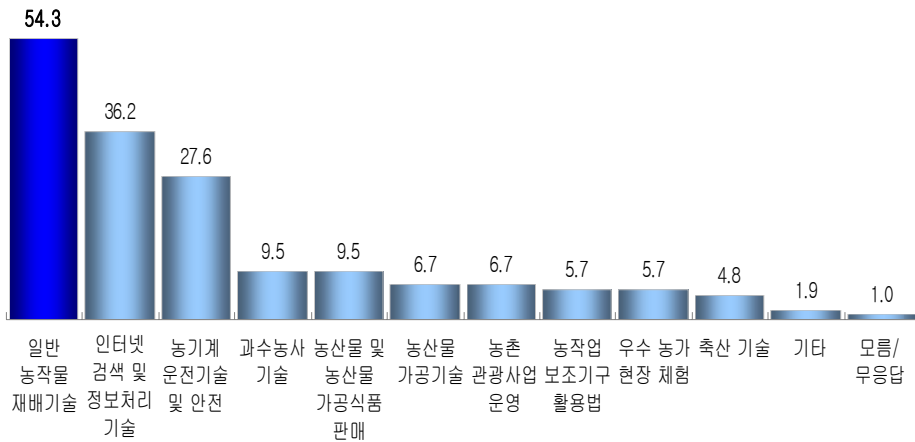
| 구분        |                     | 부인의 영농교육 참여 허가 의사 |           | 계          | 통계                                        |
|-----------|---------------------|-------------------|-----------|------------|-------------------------------------------|
|           |                     | 예                 | 아니오       |            |                                           |
| 지역<br>유형  | 도시근교<br>및 평야        | 38(18.1)          | 172(81.9) | 210(100.0) | $\chi^2=7.688$<br>$df = 1$<br>$p < .05$   |
|           | 중·산간                | 56(29.9)          | 131(70.1) | 187(100.0) |                                           |
|           | 계                   | 94(23.7)          | 303(76.3) | 397(100.0) |                                           |
| 이민자<br>학력 | 중졸 이하               | 29(13.4)          | 188(86.6) | 217(100.0) | $\chi^2=27.811$<br>$df = 1$<br>$p < .001$ |
|           | 고졸 이상               | 65(35.9)          | 116(64.1) | 181(100.0) |                                           |
|           | 계                   | 94(23.6)          | 304(76.4) | 398(100.0) |                                           |
| 가구<br>소득  | 1500만 원<br>미만       | 29(25.2)          | 86(74.8)  | 115(100.0) | $\chi^2=6.314$<br>$df = 2$<br>$p < .05$   |
|           | 1500~2500<br>만 원 미만 | 42(19.7)          | 171(80.3) | 213(100.0) |                                           |
|           | 2500만 원<br>이상       | 24(34.3)          | 46(65.7)  | 70(100.0)  |                                           |
|           | 계                   | 95(23.9)          | 303(76.1) | 398(100.0) |                                           |

### 13.5. 결혼이민자가 원하는 영농교육 내용(복수응답)

결혼이민자가 원하는 영농교육 내용으로는 일반 농작물 재배기술(54.3%), 인터넷 검색 및 정보처리 기술(36.2%), 농기계 운전기술 및 안전(27.6%)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5-12>.

그림 5-12. 결혼이민자가 원하는 영농교육 내용(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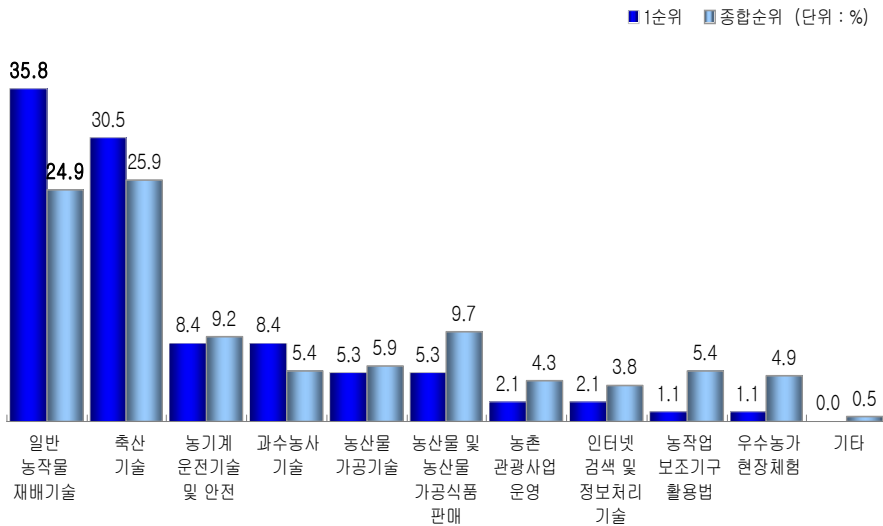
(단위 : %)



### 13.6. 남편이 원하는 부인을 위한 영농교육

남편이 원하는 부인 대상 영농교육의 1순위는 일반 농작물 재배기술 (35.8%), 축산기술(30.5%), 농기계 운전기술 및 안전(8.4%), 과수농사기술 (8.4%) 등의 순이며, 1순위 및 2순위를 종합했을 때, ‘축산기술’(25.9%), 일반 농작물 재배기술’(24.9%),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9.7%), ‘농기계 운전기술 및 안전’(9.2%) 등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검색 및 정보처리 기술’은 결혼이민자(36.2%)의 수요는 높은 데 반해서 남편(1순위 2.1%)의 수요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3>.

그림 5-13. 남편이 원하는 부인을 위한 영농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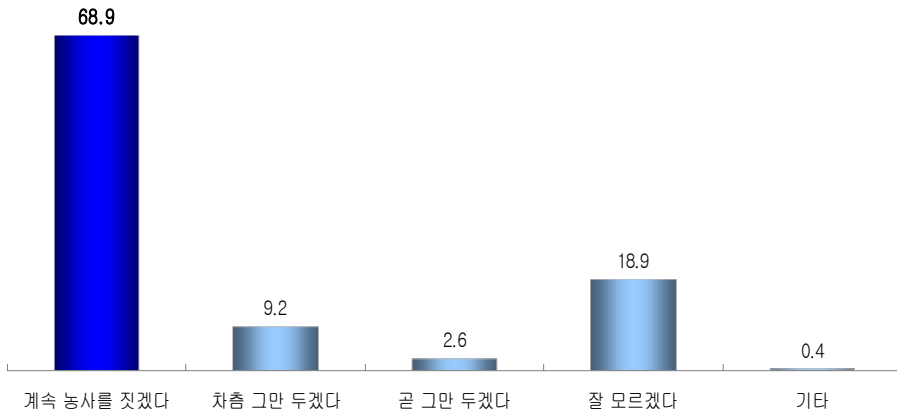
## 1.4. 영농계획 및 애로사항

### 1.4.1. 결혼이민자의 영농지속 의사

결혼이민자가 농사일에 참여하는 경우 영농활동을 지속할지에 관한 의사는 ‘계속 농사를 짓겠다’(68.9%), ‘차츰 그만 두겠다’(9.2%), ‘곧 그만 두겠다’(2.6%), ‘잘 모르겠다’(18.9%) 등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2/3 정도가 계속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그림 5-14>. 또한 필리핀(52.0%)과 캄보디아(53.3%) 출신이 영농지속 의사가 낮고, 연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영농지속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4. 결혼이민자의 영농지속 의사

(단위 : %)



#### 1.4.2. 농사규모 계획(남편)

남편이 생각하는 농사규모에 대한 계획은 ‘좀 더 확대시키고 싶다’(24.8%),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57.0%), ‘현 상태를 축소하고 싶다’(8.5%), ‘모두 그만두고 싶다’(2.8%) 등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81.8%는 현재의 농사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그림 5-15>.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남편의 농사규모 계획은 결혼이민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연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농사규모를 확대시키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3>.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축소 또는 중단하고 싶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5. 농사규모 계획(남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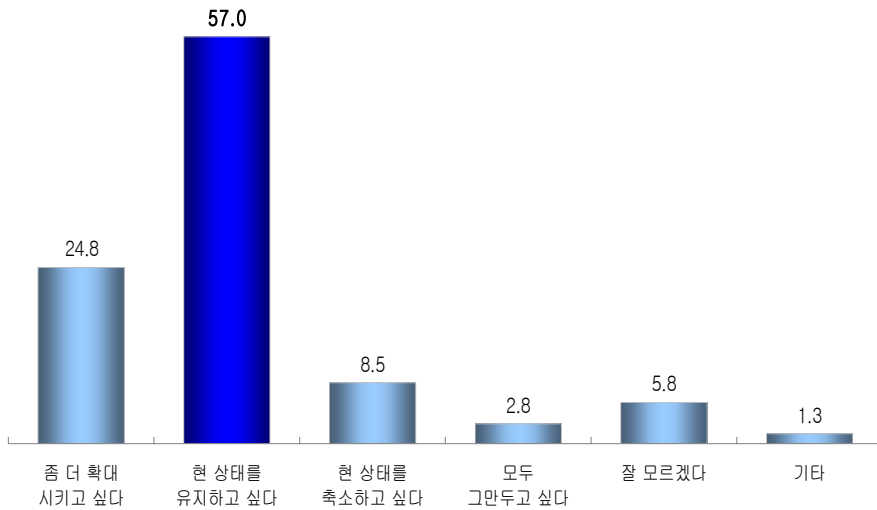


표 5-3.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남편의 농사규모 계획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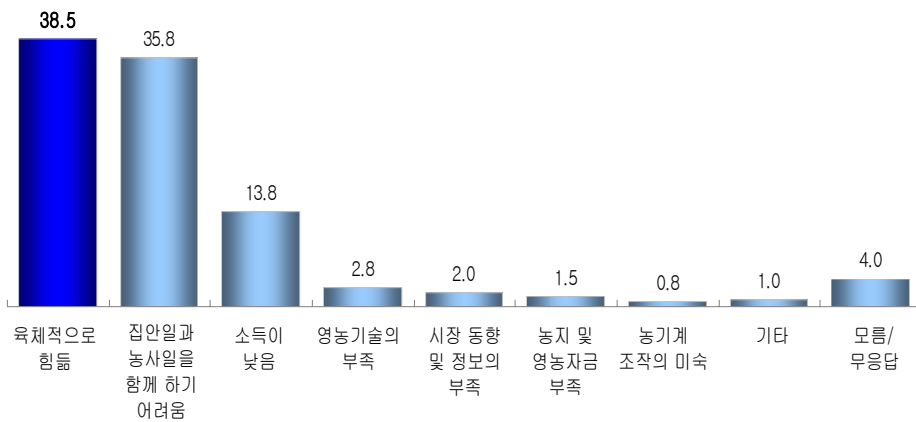
| 구분            |                 | 농사규모 계획  |           |          | 계          | 통계                                        |
|---------------|-----------------|----------|-----------|----------|------------|-------------------------------------------|
|               |                 | 확대       | 유지        | 축소 또는 중단 |            |                                           |
| 이민<br>자<br>학력 | 중졸 이하           | 35(16.9) | 138(66.7) | 34(16.4) | 207(100.0) | $\chi^2=26.196$<br>$df = 2$<br>$p < .001$ |
|               | 고졸 이상           | 64(39.0) | 89(54.3)  | 11(6.7)  | 164(100.0) |                                           |
|               | 계               | 99(26.7) | 227(61.2) | 45(12.1) | 371(100.0) |                                           |
| 가구<br>소득      | 1500만 원 미만      | 25(23.8) | 61(58.1)  | 19(18.1) | 105(100.0) | $\chi^2=12.760$<br>$df = 4$<br>$p < .05$  |
|               | 1500~2500만 원 미만 | 48(23.9) | 135(67.2) | 18(9.0)  | 201(100.0) |                                           |
|               | 2500만 원 이상      | 26(39.4) | 32(48.5)  | 8(12.1)  | 66(100.0)  |                                           |
|               | 계               | 99(26.6) | 228(61.3) | 45(12.1) | 372(100.0) |                                           |

### 14.3. 농사일의 가장 어려운 점(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가 농사일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38.5%), ‘집안일과 농사일을 함께 하기 어려움’(35.8%), ‘소득이 낮음’(13.8%)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5-16>.

그림 5-16. 농사일의 가장 어려운 점(결혼이민자)

(단위 : %)



## 2. 비농업 분야 경제활동 실태

### 2.1. 비농업 분야 일 참여 실태

#### 2.1.1. 결혼이민자의 비농업 분야 일(자영업, 취업, 부업) 참여

결혼이민자에게 비농업 분야에 참여 여부를 문의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비농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그림 5-17>. 이들은 주로 식당, 자영업, 어학강사, 생산직 등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결혼이민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부간의 연령차가 작을수록 비농업 분야 종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4>.

그림 5-17. 결혼이민자의 비농업 분야 일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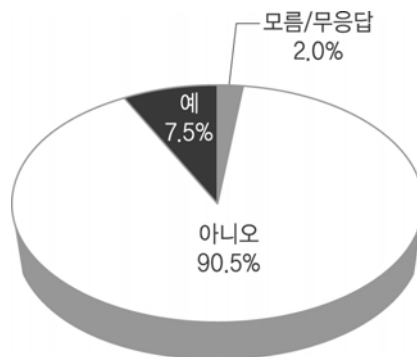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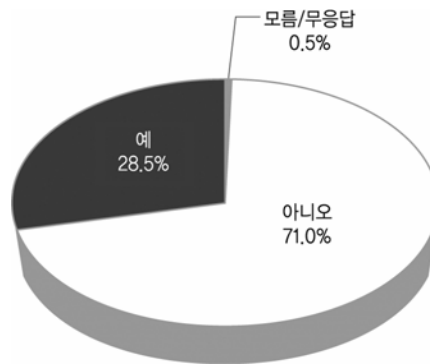
표 5-4.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비농업 분야 종사 유무  
단위: 명, %

| 구 분            |           | 비농업 분야 종사 |           | 계          | 통 계                                  |
|----------------|-----------|-----------|-----------|------------|--------------------------------------|
|                |           | 유         | 무         |            |                                      |
| 한국<br>거주<br>기간 | 3년 미만     | 5(2.7)    | 179(97.3) | 184(100.0) | $\chi^2=13.556$<br>df = 2<br>p < .05 |
|                | 3~5년 미만   | 9(9.5)    | 86(90.5)  | 95(100.0)  |                                      |
|                | 5년 이상     | 16(14.2)  | 97(85.8)  | 113(100.0) |                                      |
|                | 계         | 30(7.7)   | 362(92.3) | 392(100.0) |                                      |
| 이민<br>자연<br>령대 | 25세 미만    | 2(1.8)    | 110(98.2) | 112(100.0) | $\chi^2=10.900$<br>df = 3<br>p < .05 |
|                | 25~30세 미만 | 8(6.7)    | 111(93.3) | 119(100.0) |                                      |
|                | 30~35세 미만 | 8(11.6)   | 61(88.4)  | 69(100.0)  |                                      |
|                | 35세 이상    | 12(13.0)  | 80(87.0)  | 92(100.0)  |                                      |
|                | 계         | 30(7.7)   | 362(92.3) | 392(100.0) |                                      |
| 연령<br>차        | 10세 미만    | 14(11.5)  | 108(88.5) | 122(100.0) | $\chi^2=6.421$<br>df = 2<br>p < .05  |
|                | 10~20세 미만 | 14(6.9)   | 188(93.1) | 202(100.0) |                                      |
|                | 20세 이상    | 1(1.5)    | 66(98.5)  | 67(100.0)  |                                      |
|                | 계         | 29(7.4)   | 362(92.6) | 391(100.0) |                                      |

## 2.1.2. 남편의 비농업 분야 일 참여

남편의 비농업 분야 일(겸업으로서) 참여 비율은 28.5%를 차지하며, 주요 참여 분야는 자영업, 생산직, 일용직, 운전, 중장비 등이었다<그림 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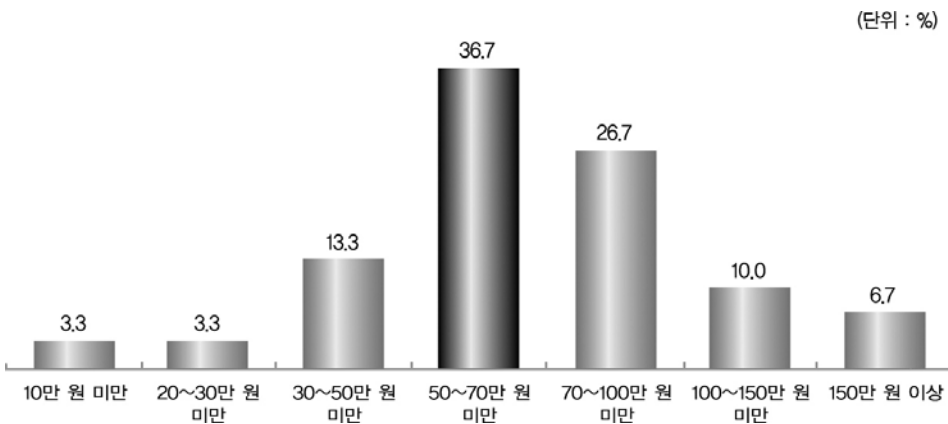
그림 5-18. 남편의 비농업 분야 일 참여



### 2.1.3. 월평균 농외소득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농외소득은 ‘30만 원 미만’(6.6%), ‘30~50만 원 미만’(13.3%), ‘50~70만 원 미만’(36.7%), ‘70~100만 원 미만’(26.7%), ‘100만 원 이상’(16.7%)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부분(83.3%)의 월평균 농외소득은 100만원 미만임을 알 수 있다<그림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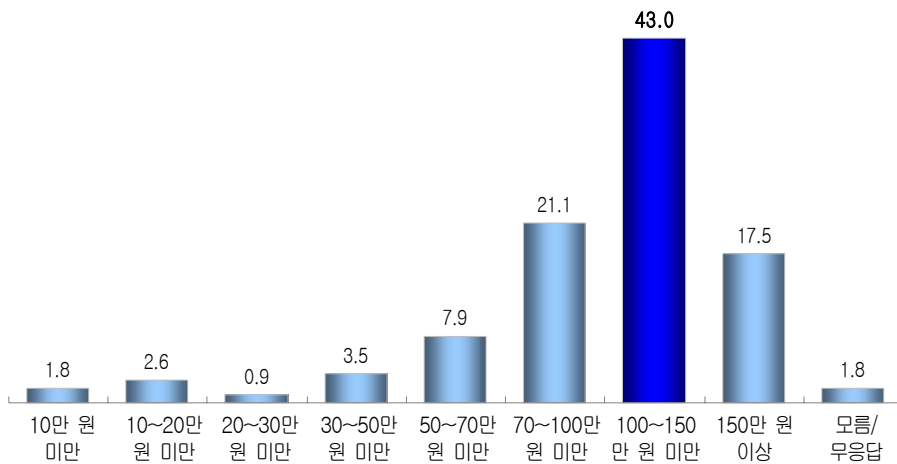
그림 5-19. 월 평균 농외소득(결혼이민자)



남편의 월평균 농외소득은 ‘30만 원 미만’(5.3%), ‘30~50만 원 미만’(3.5%), ‘50~70만 원 미만’(7.9%), ‘70~100만 원 미만’(21.1%), ‘100~150만 원 미만’(43.0%), ‘150만 원 이상’(17.5%)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농외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60.5%로 나타났다<그림 5-20>.

그림 5-20. 월 평균 농외소득(남편)

(단위 : %)



## 2.2. 비농업 분야 경제활동 이유

결혼이민자가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66.7%),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16.7%),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21>.

남편이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78.1%), ‘여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22>.

그림 5-21.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는 중요 이유(결혼이민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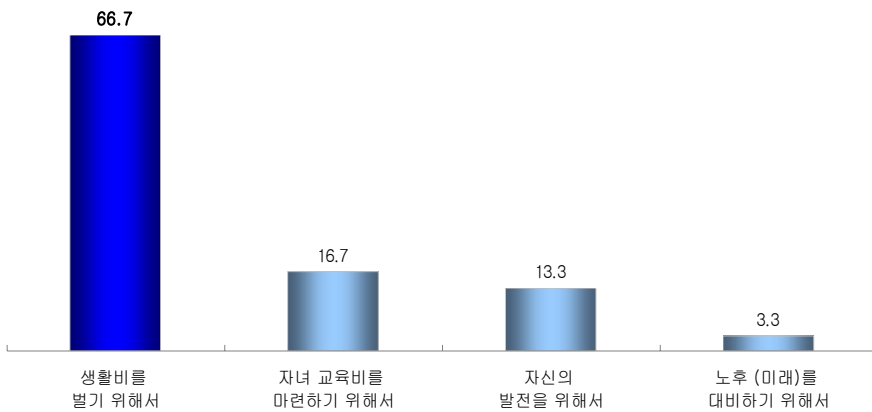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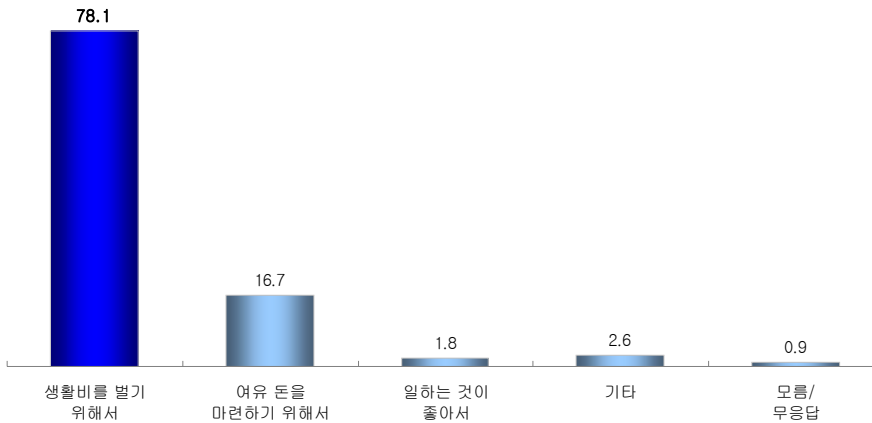


그림 5-22.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는 중요 이유(남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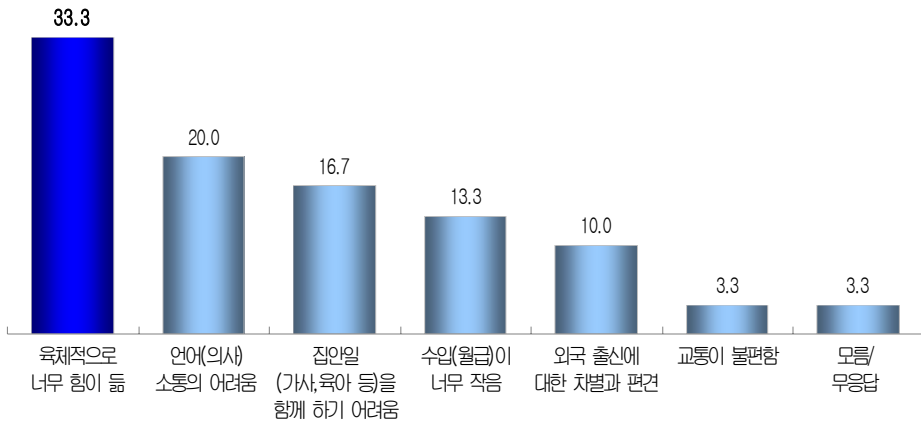
## 2.3. 비농업 분야 경제활동 참여의사 및 애로사항

### 2.3.1. 농사일 이외의 일에서 어려움(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가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듭’(33.3%), ‘언어(의사)소통의 어려움’(20.0%), ‘집안일을 함께 하기 어려움’(16.7%), ‘외국 출신에 대한 차별과 편견’(10.0%)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5-23>.

그림 5-23. 농사일 이외의 일에서 어려움(결혼이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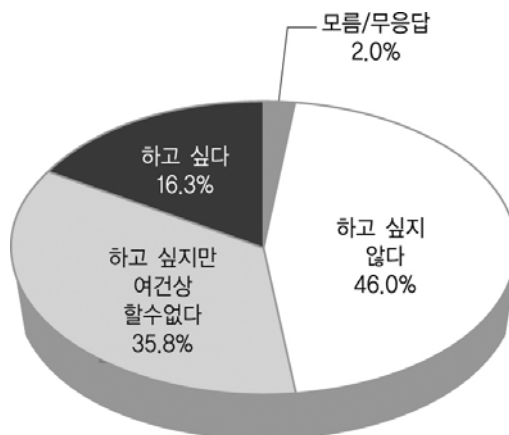
(단위 : %)



### 2.3.2.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 참여의사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에 대한 참여의사를 질문한 결과, ‘하고 싶다’(16.3%), ‘하고 싶지만 여건상 할 수 없다’(35.8%), ‘하고 싶지 않다’(46.0%)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5-24>. 결혼이민자들은 농외소득 활동에 7.5%만이 참여하고 있음(앞에서 제시한 그림 5-17 참조)을 감안해 볼 때,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교차표 분석에서는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연간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과수원 또는 하우스 농사일수록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4.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 참여의사(결혼이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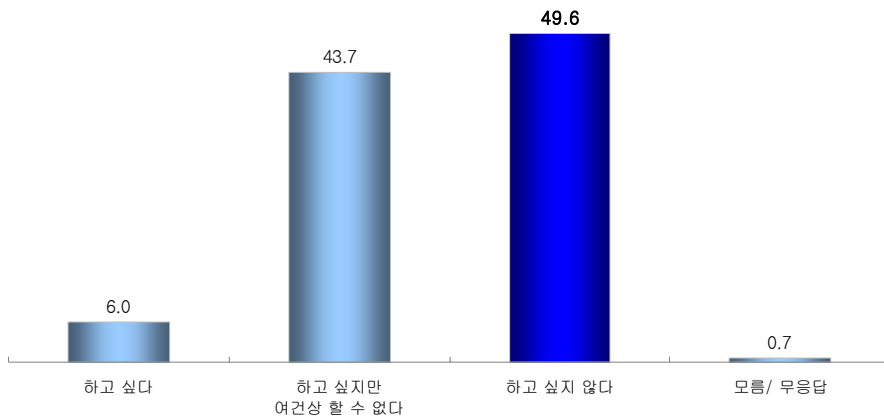


남편을 대상으로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에 대한 참여의사를 질문한 결과, ‘하고 싶다’(6.0%), ‘하고 싶지만 여건상 할 수 없다’(43.7%),

‘하고 싶지 않다’(49.6%)로 나타났다<그림 5-25>. 결혼이민자의 남편들은 농외소득 활동에 28.5%가 참여하고 있음(앞에서 제시한 그림 5-18 참조)을 감안해 볼 때, 상당수의 남편들은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교차표 분석에서는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과수원 또는 하우스 농사일수록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5.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 참여의사(남편)

(단위 : %)



### 3. 심층 면접조사 등에서 파악한 주요 내용

결혼이민자 및 남편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결혼이민자들이 입국한 지 2~3년이 경과하여 한국어 구사가 어느 정도 가능해져야만 이들을 상대로 영농기술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 초기에는 한국생활에 적응하기에도 바쁘고, 만혼인 남편의 사

정을 고려하여 바로 자녀를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영농에 참여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가 점차 성장함에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의 영농활동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결혼이민자 및 남편 등을 심층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혼한 지 1~2년 정도인 결혼이민자들은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서 농사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어느 정도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결혼한 지 5년 이상이 되면 대체로 남편과 함께 농사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에 농사일에 별로 참여하지 않는 결혼이민자들도 농번기에는 남편이나 시부모가 농사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가족들이 정신없이 농사일을 하는데 자기만 혼자 놀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농사일을 하게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일부 시부모들의 경우 농번기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며느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결혼이민자가 남편과 함께 제대로 농사를 지으려면 10년 정도의 영농수습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본국에서 농사 경험이 있을수록 영농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은 농기계 운전 및 안전에 대한 교육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에 와서 농사기술을 주로 남편이나 가족을 통해서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이나 가족을 통해서 농사기술을 배우는 것은 기초 및 전문 영농지식의 습득, 용어 사용 등에 있어서 상당한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국에서 농사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일수록 한국의 농업·농촌 생활에 좀 더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의 경우 대형농기계는 남편이 독점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혼이민자들에게 인기 있는 농기계는 경운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스쿠터)는 농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영농교육을 시행할 때 택아서비스, 교통편 등을 제공하고, 교육시기를 농번기를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학력이 낮은 결혼 이민자들은 교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영농교육 참여에도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도시근교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비농업 분야에서의 취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영농교육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은 영어 구사능력을 이용하여 비농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예를 들면, 각종 학교나 학원의 영어강사)을 하고 가족 내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협상하는 데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필리핀 출신의 E씨(26세, 전문대학 졸업)는 초등학교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일정액의 월급을 받게 된 다음부터 가족 및 이웃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좋아졌다고 자랑을 하였다.

#### 4. 소결

다문화가정의 영농 및 기타 경제 활동에 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응답 가구의 3/4 이상(78.8%)이 농지(논·밭) 소유면적이 2ha 이하로 나타났다. 응답가구의 평균 농지 소유면적은 4,838평(1.61ha)으로 나타나 일반 농가의 30~40대 층보다 영농기반이 상당히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농가의 결혼이민자들 중에서 농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입국 초기 단계이거나 자녀 출산시기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은 농외 부문에서 일을 할 때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국에서 농사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일수록 한국의 농업·농촌 생활에 좀 더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가에서 국제결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예비신부의 농사 경험을 중요한

선택기준의 하나로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결혼이민자들의 영농교육 참여의사(26.3%)는 다소 낮은 편이지만, 앞으로 정착단계별 맞춤형 영농교육, 교통편 및 보육서비스의 제공, 결혼이민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 및 강의 마련, 가족들의 협조, 관련 홍보 등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영농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혼이민자들은 농사기술을 주로 남편에게 배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편을 통하거나 남편과 결혼이민자가 함께 하는 농업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비농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결혼이민자는 7.5%, 결혼이민자의 남편은 28.5%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는 가장 중요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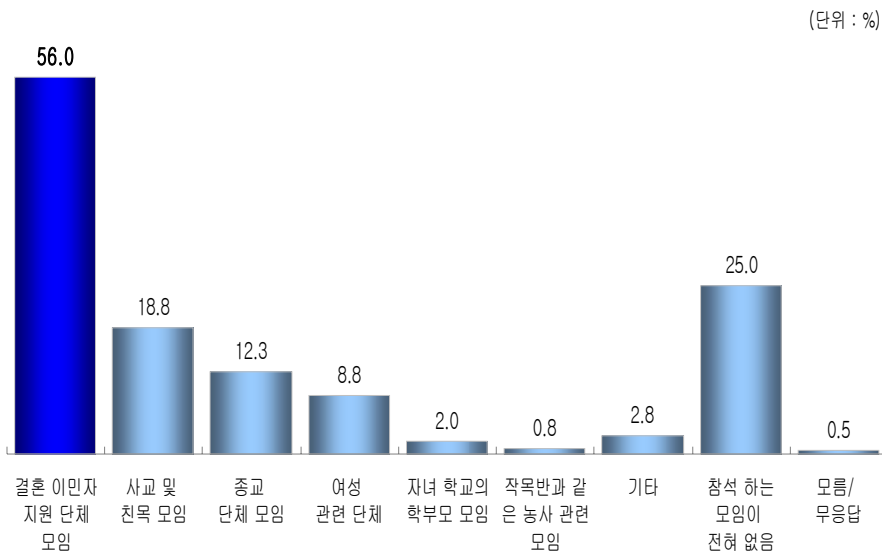
### 1. 사회참여 실태

#### 1.1. 사회단체 및 모임 참여

##### 1.1.1.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모임

결혼이민자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모임으로는 ‘결혼이민자 지원 단체 모임’(56.0%), ‘사교 및 친목 모임’(18.8%), ‘종교단체 모임’(12.3%) 등이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25.0%는 참석하는 모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1>.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교차표 분석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연간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참석하는 모임이 전혀 없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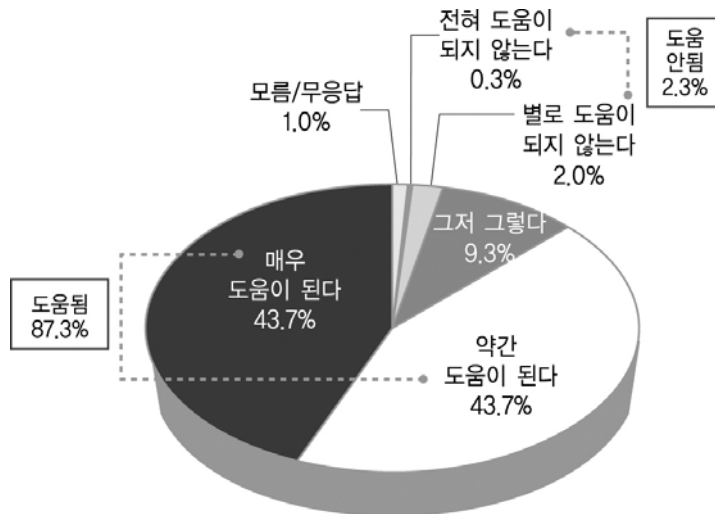
그림 6-1.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모임



### 1.1.2. 사회단체나 모임 참여가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정도

사회단체나 모임 참여가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매우 도움이 된다’(43.7%), ‘약간 도움이 된다’(43.7%), ‘그저 그렇다’ (9.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2.0%),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0.3%)로 나타나, 대다수의 응답자들(87.3%)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6-2>.

그림 6-2. 사회단체나 모임 참여가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정도



### 1.1.3. 결혼이민자가정 자조모임 가입

남편의 결혼이민자가정 자조모임 가입 비율은 30.3%로 나타나 대다수의 남편들(69.4%)은 아직도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6-3>. 연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남편의 결혼이민자가정 자조모임 가입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조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자조모임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는지 남편에게 문의한 결과, 23.7% 정도가 가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4>.

그림 6-3. 결혼이민자가정 자조모임 가입(남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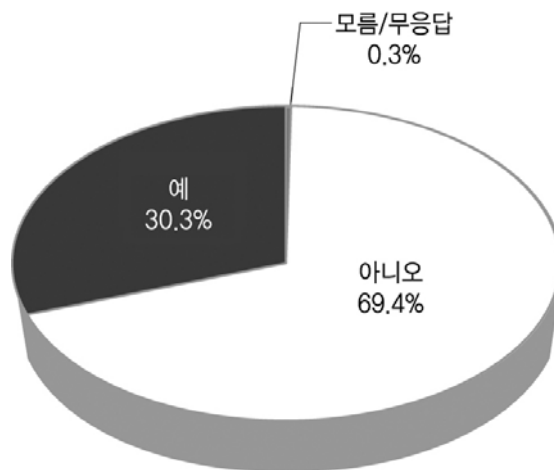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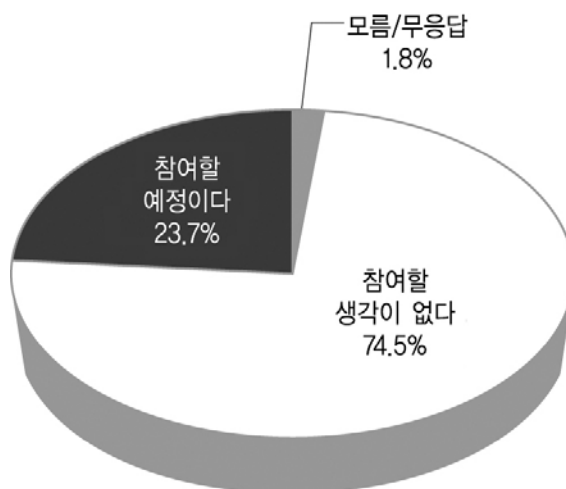


그림 6-4. 결혼이민자가정 자조모임 가입 의사(남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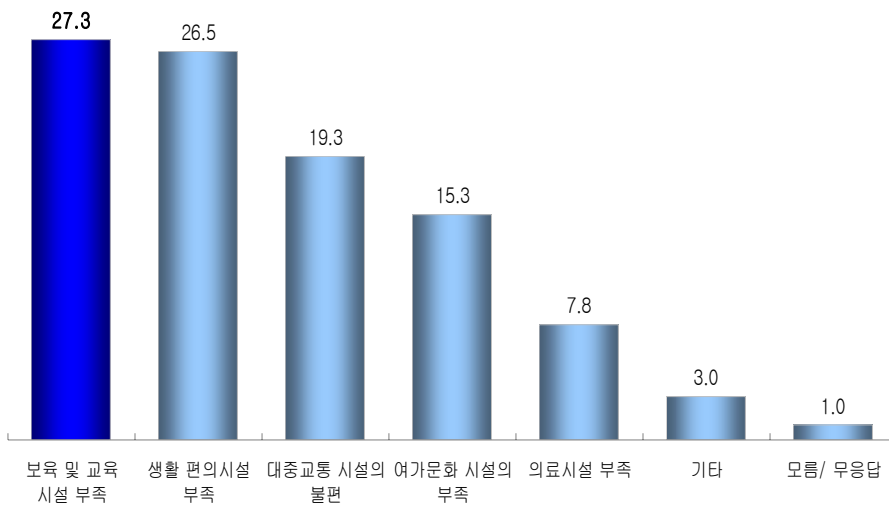
## 1.2. 농촌생활

### 1.2.1. 부인이 농촌에 살면서 가장 불편해 하는 점

남편이 인식하는 부인이 농촌에 살면서 가장 불편해 하는 점은 ‘보육 및 교육시설 부족’(27.3%), ‘생활 편의시설 부족’(26.5%), ‘대중교통시설의 불편’(19.3%), ‘여가문화시설의 부족’(15.3%)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6-5>.

그림 6-5. 부인이 농촌에 살면서 가장 불편해 하는 점

(단위 : %)



## 12.2. 농촌거주 지속 의사

농촌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남편에게 문의한 결과, 농촌에 거주하겠다는 응답이 84.5%, 이촌 의사를 표시한 응답은 15.0%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농촌에 계속 거주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6-6>.

## 12.3. 이촌 이유

농촌을 떠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남편에게 문의한 결과, ‘소득이 낮아서’(53.3%), ‘생활환경이 불편해서’(11.7%), ‘자녀교육 문제로’(15.0%), ‘아내가 도시에서 살기를 원해서’(6.7%) 등으로 나타나 ‘낮은 소득’이 가장 중요한 이촌 이유임을 알 수 있다<그림 6-7>.

그림 6-6. 농촌거주 지속 의사(남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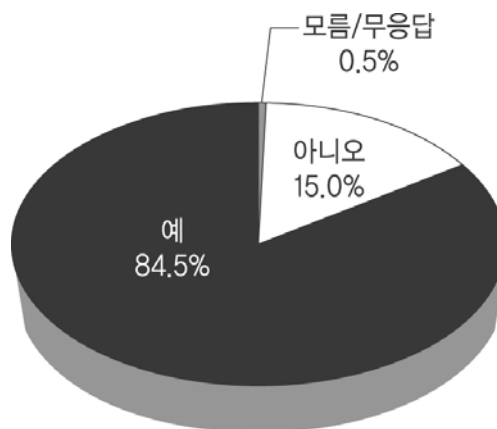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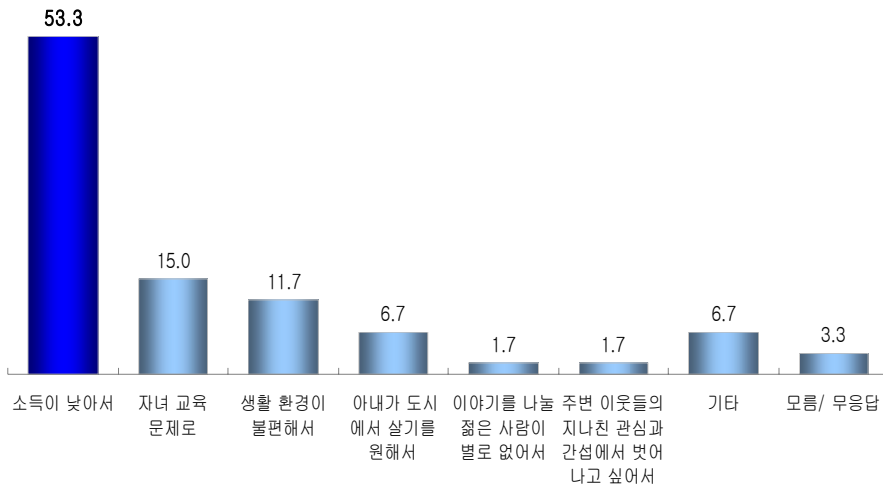


그림 6-7. 이혼 이유(남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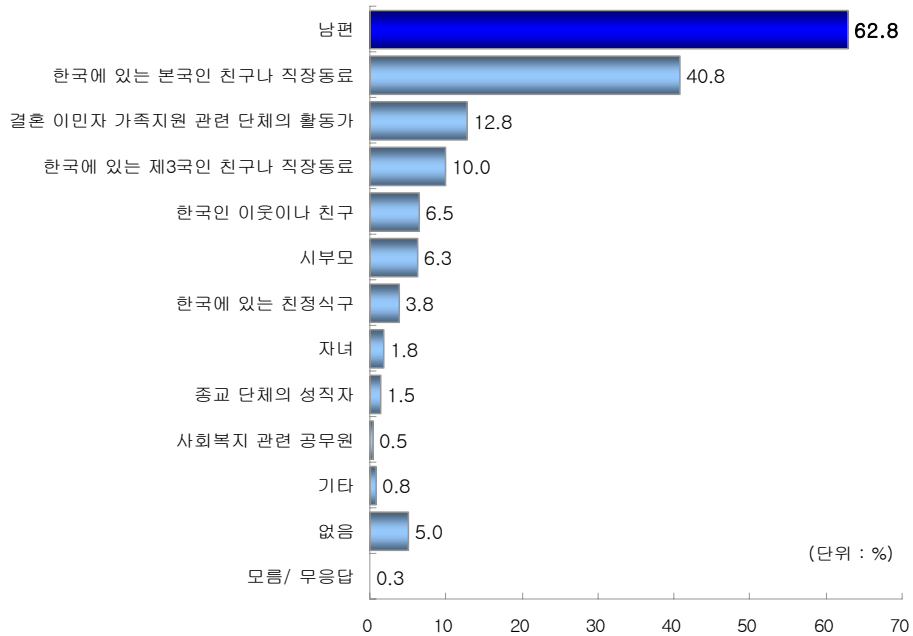
(단위 : %)



#### 1.2.4. 결혼이민자가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결혼이민자가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복수응답)은 남편(62.8%), 한국에 있는 본국인 친구나 직장동료(40.8%),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관련 단체의 활동가(12.8%), 한국에 있는 제3국인 친구나 직장동료(10.0%) 순이었다. 즉, 결혼이민자가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과 ‘한국에 있는 본국인 친구나 직장동료’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8>.

그림 6-8. 결혼이민자가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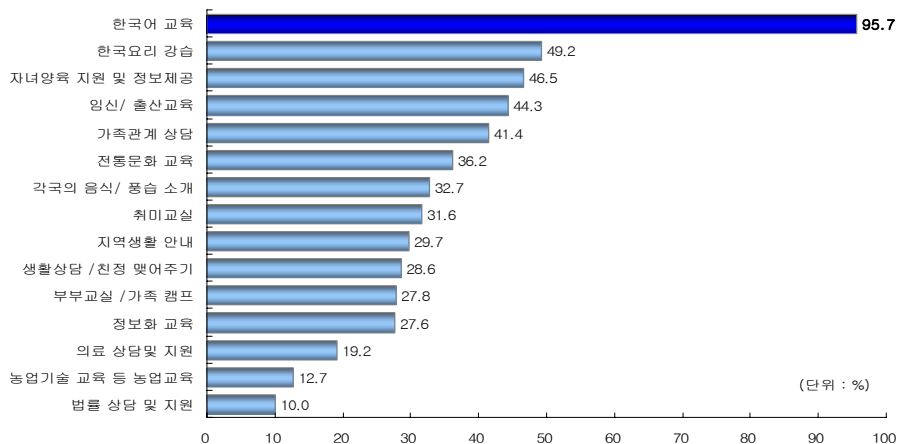
## 2. 사회복지 실태

### 2.1. 사회서비스 이용

#### 2.1.1. 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이용률

결혼이민자가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한국어교육(95.7%), 한국요리 강습(49.2%), 자녀양육 지원 및 정보제공(46.5%), 임신·출산교육(44.3%), 가족관계 상담(4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어교육을 제외한 모든 사회서비스의 이용률이 50% 이하임을 알 수 있다<그림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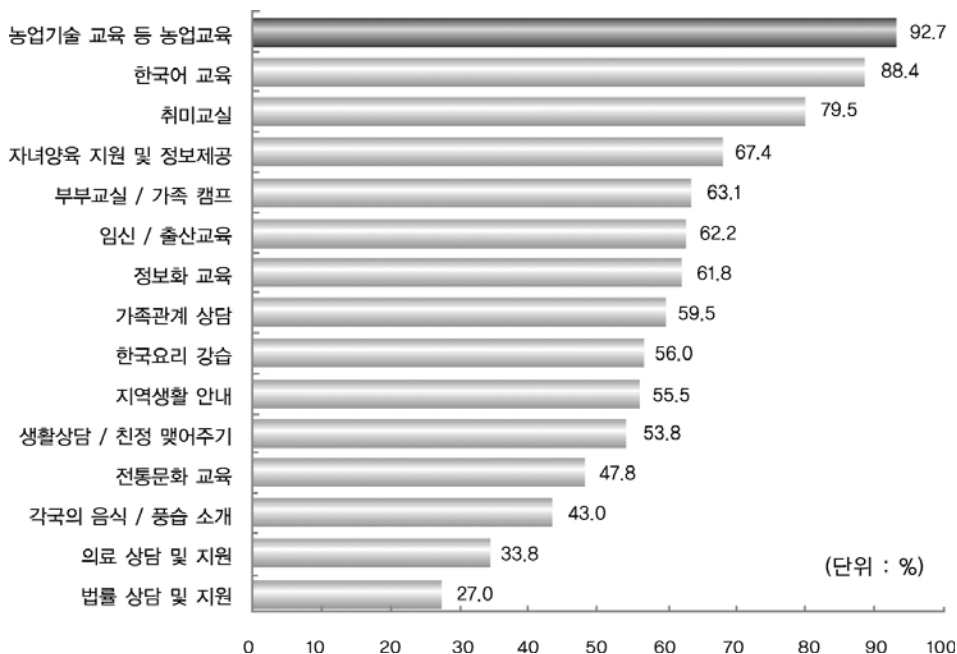
그림 6-9. 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이용률



## 2.1.2. 이용한 사회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

결혼이민자가 이용한 사회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농업기술 교육 등 농업교육’(92.7%), 한국어교육(88.4%), 취미교실(79.5%), 자녀양육 지원 및 정보제공(67.4%), 부부교실·가족캠프(63.1%), 임신·출산교육(62.2%), 정보화교육(61.8%)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한 사회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대부분의 사회서비스에서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기술교육 등 농업교육’과 한국어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아주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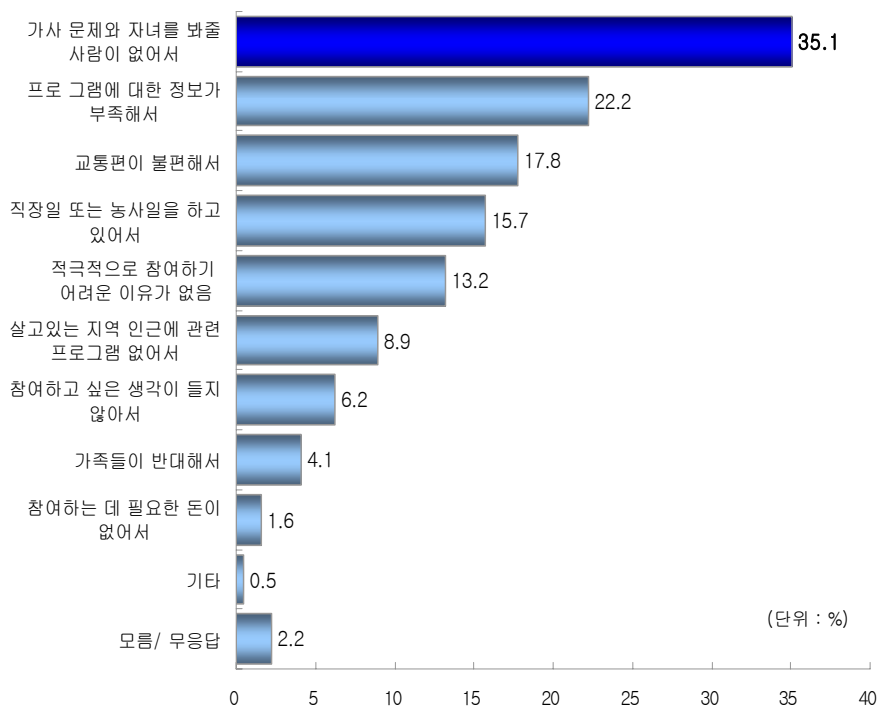
그림 6-10. 이용한 사회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



### 2.1.3. 결혼이민자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결혼이민자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는 ‘가사문제와 자녀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35.1%),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22.2%), ‘교통편이 불편해서’(17.8%), ‘직장일 또는 농사일을 하고 있어서’(15.7%)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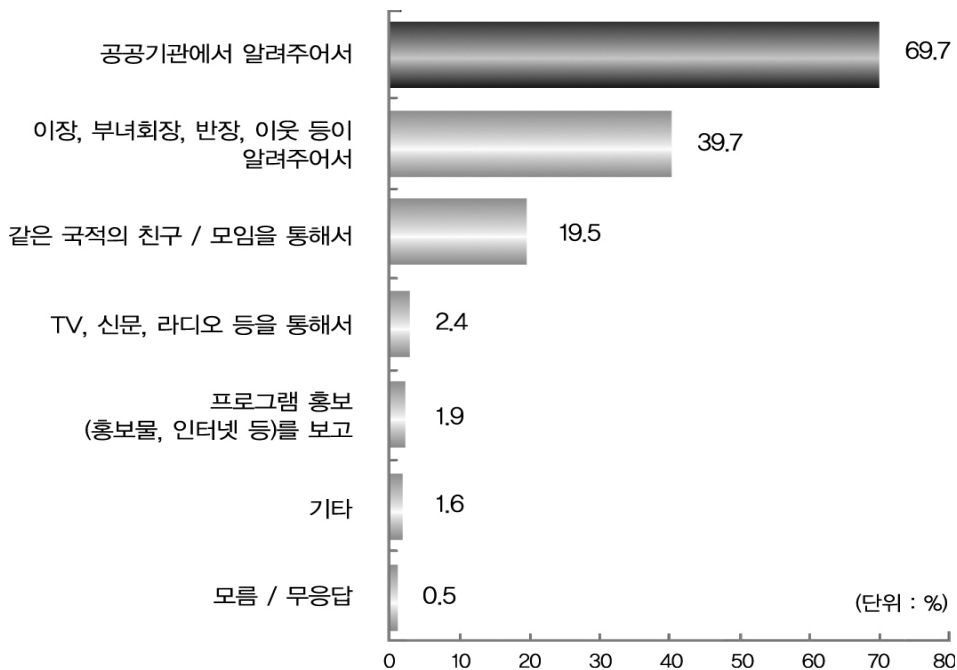
그림 6-11. 결혼이민자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 2.1.4. 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복수응답)는 ‘공공기관에서 알려주어서’(69.7%), ‘이장, 부녀회장, 반장, 이웃 등이 알려주어서’(39.7%), ‘같은 국적의 친구·모임을 통해서’(19.5%)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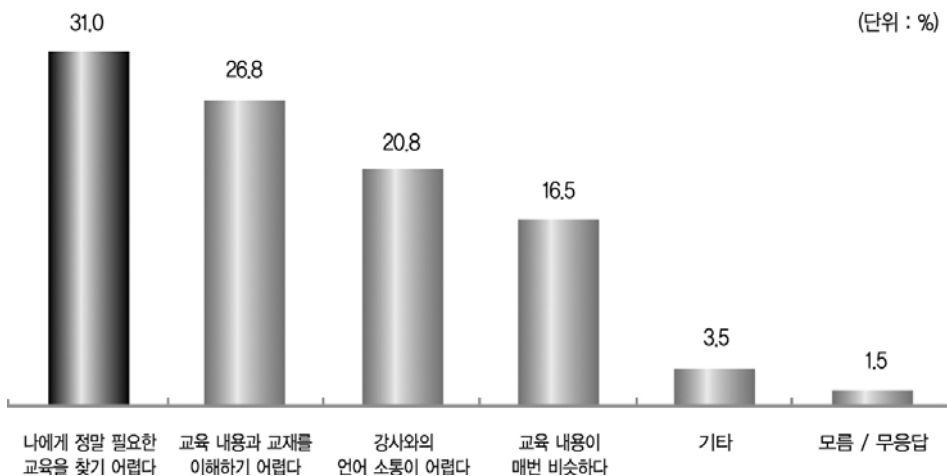
그림 6-12. 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 2.1.5. 사회서비스의 문제점

결혼이민자가 이용하는 사회서비스의 문제점으로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을 찾기 어렵다’(31.0%), ‘교육 내용과 교재를 이해하기 어렵다’(26.8%), ‘강사와의 언어소통이 어렵다’(20.8%)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6-13>.

그림 6-13. 사회서비스의 문제점(결혼이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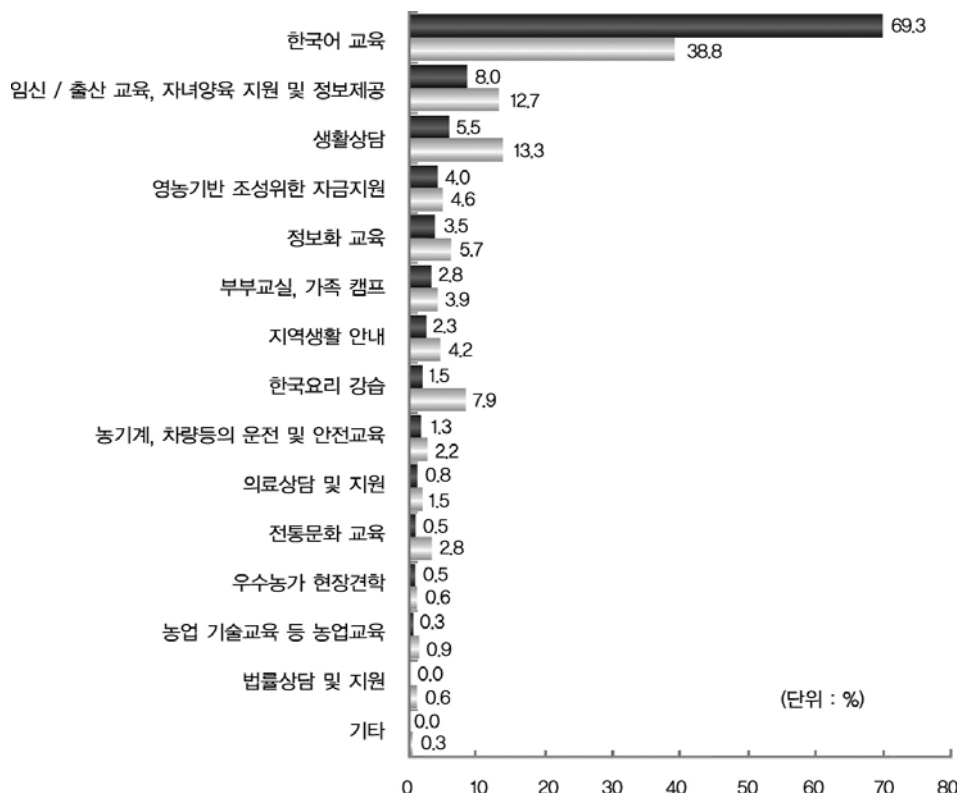


### 2.1.6. 가장 필요한 사회서비스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무엇인지 문의한 결과, 1순위로 ‘한국어교육’(69.3%), ‘임신·출산교육, 자녀양육 지원 및 정보제공’(8.0%), ‘생활상담’(5.5%),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4.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면, ‘한국어교육’(38.8%), ‘생활상담’(13.3%), ‘임신·출산교육, 자녀양육 지원 및 정보제공’(12.7%), ‘한

국요리 강습’(7.9%), ‘정보화교육’(5.7%) 등으로 나타났다. 산간지역일수록, 연간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생활상담, 부부교실·가족캠프가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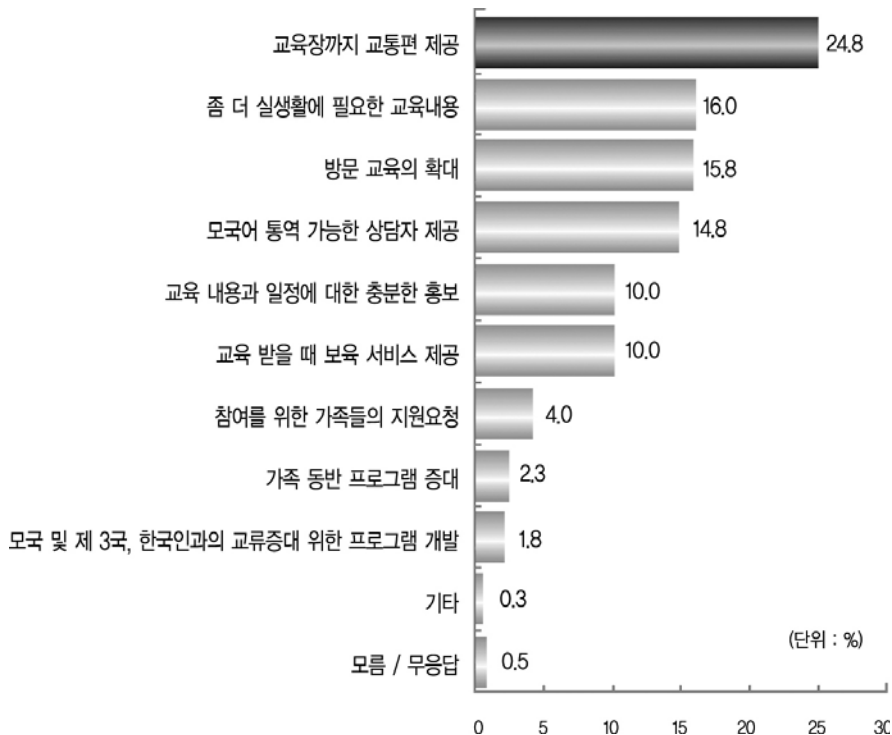
그림 6-14. 가장 필요한 사회서비스(결혼이민자)



### 2.1.7. 사회서비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사회서비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응답은 ‘교육장까지 교통편 제공’(24.8%), ‘좀 더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내용’(16.0%), ‘방문교육의 확대’(15.8%), ‘모국어 통역 가능한 상담자 제공’(14.8%) 등으로 나타났고, 일본 출신(36.3%)일수록, ‘국적 취득자’(21.7%)일수록 ‘좀 더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15>.

그림 6-15. 사회서비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결혼이민자)



## 2.2. 교육프로그램 및 활동

### 2.2.1. 남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 참여

남편이 본인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한 응답비율은 26.5%로 나타났다<그림 6-16>. 남편이 본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농사일 또는 직장일을 하고 있어서’(38.6%),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25.6%),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서’(17.4%) 등이었다<그림 6-17>.

그림 6-16. 남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 참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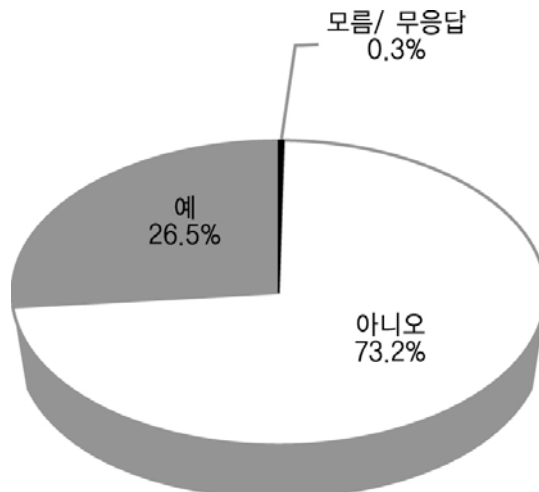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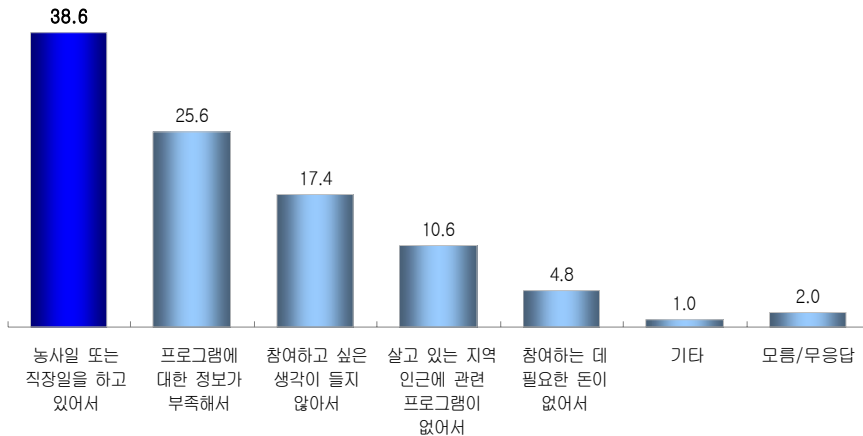


그림 6-17. 남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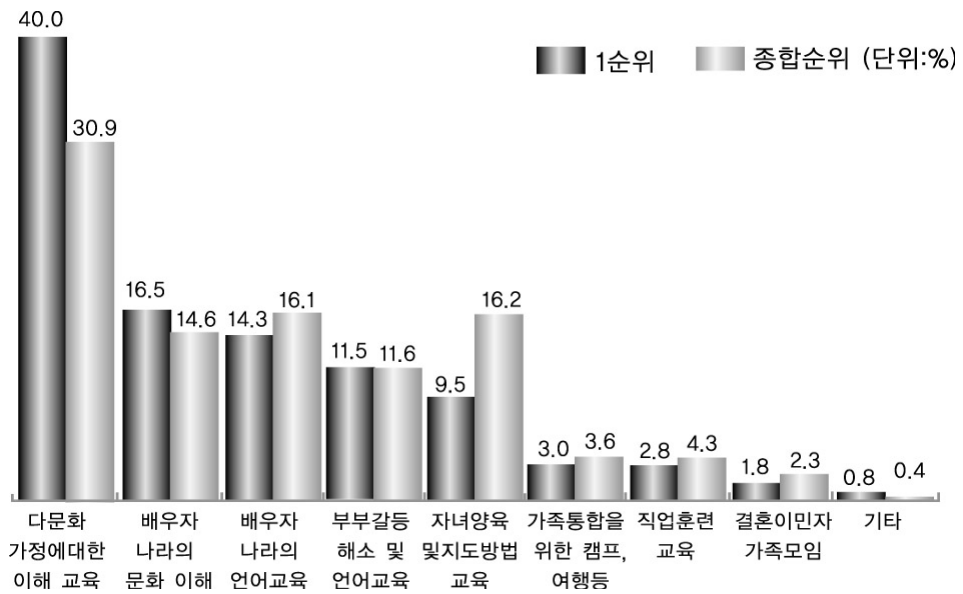
(단위 : %)



## 2.2.2. 가장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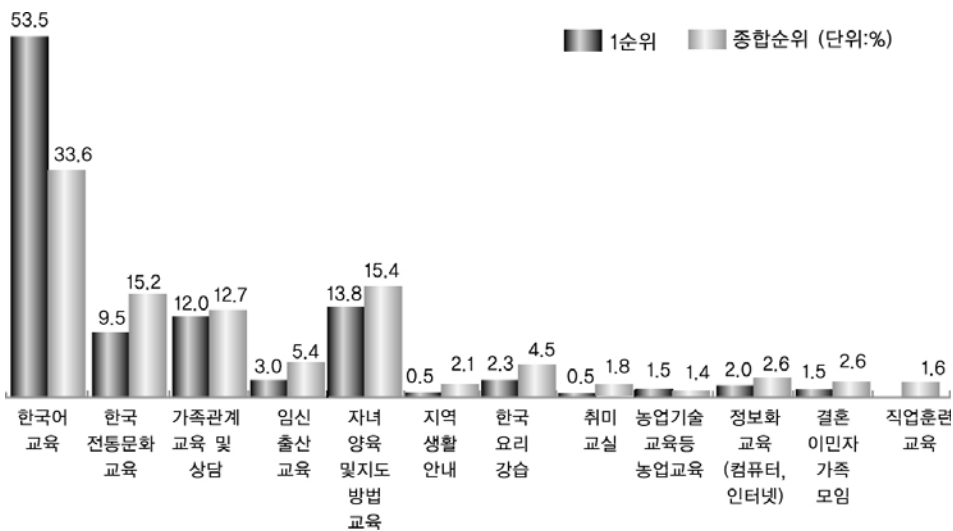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의 내용이 무엇인지 남편에게 문의한 결과, 1순위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교육’(40.0%), ‘배우자나라의 문화 이해’(16.5%), 배우자 나라의 언어교육(14.3%), ‘부부갈등 해소 및 대화법’(1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했을 때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교육’(30.9%), ‘자녀 양육 및 지도방법 교육’(16.2%), ‘배우자 나라의 언어교육’(16.1%), ‘배우자 나라의 문화 이해’(14.6%), ‘부부갈등 해소 및 대화법’(11.6%) 순이었다<그림 6-18>.

그림 6-18.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의 내용에 관해 남편에게 문의한 결과, 1순위로는 ‘한국어교육’(53.5%), ‘자녀양육 및 지도방법 교육’(13.8%), ‘가족관계 교육 및 상담’(12.0%), ‘한국 전통문화교육’(9.5%) 순으로 응답하였고, 1순위와 2순위 종합했을 경우, ‘한국어교육’(33.6%), ‘자녀양육 및 지도방법 교육’(16.4%), ‘한국 전통문화교육’(15.2%), ‘가족관계 교육 및 상담’(12.7%)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6-19>.

그림 6-19. 부인(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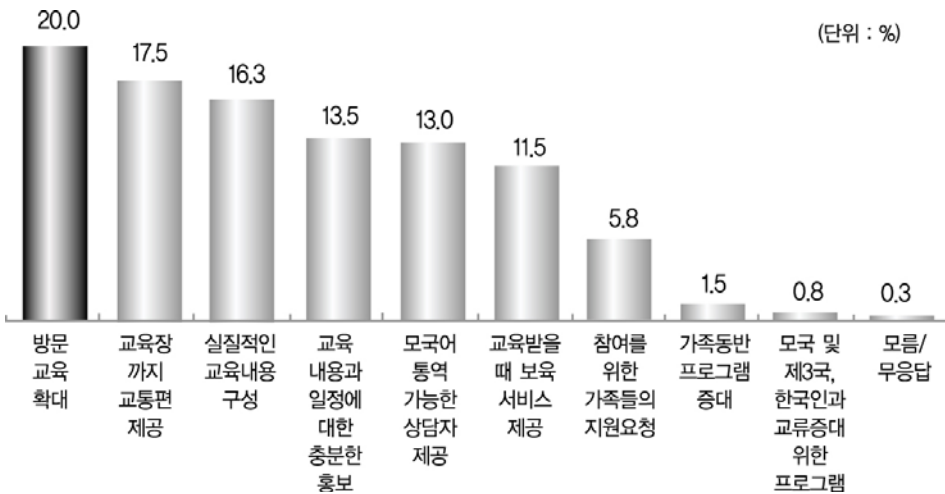


### 2.2.3. 결혼이민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결혼이민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남편의 응답으로는 ‘방문교육 확대’(20.0%), ‘교육장까지 교통편 제공’(17.5%), ‘실질적인 교육내용 구성’(16.3%), ‘교육 내용과 일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13.5%), '모국어 통역 가능한 상담자 제공'(13.0%), '교육받을 때 보육서비스 제공'(11.5%) 순으로 나타났다<6-20>.

그림 6-20. 결혼이민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 2.2.4. 방문 사회서비스 수혜 비율(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가 한글교육, 아동양육지도 등과 같은 방문 사회서비스를 받은 비율은 33.3%로 나타났다<그림 6-21>.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방문 사회서비스 수혜 유무는 결혼이민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방문 사회서비스를 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베트남 출신(43.7%)이 수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6-1>.

그림 6-21. 방문 사회서비스 수혜 비율(결혼이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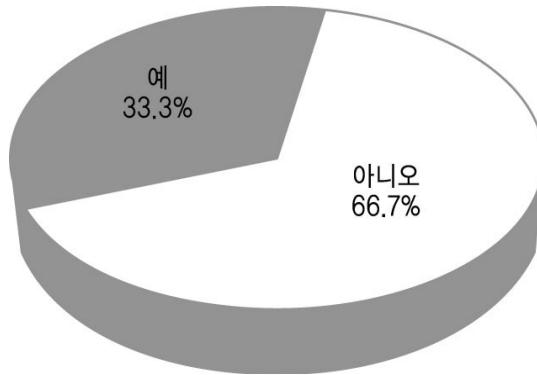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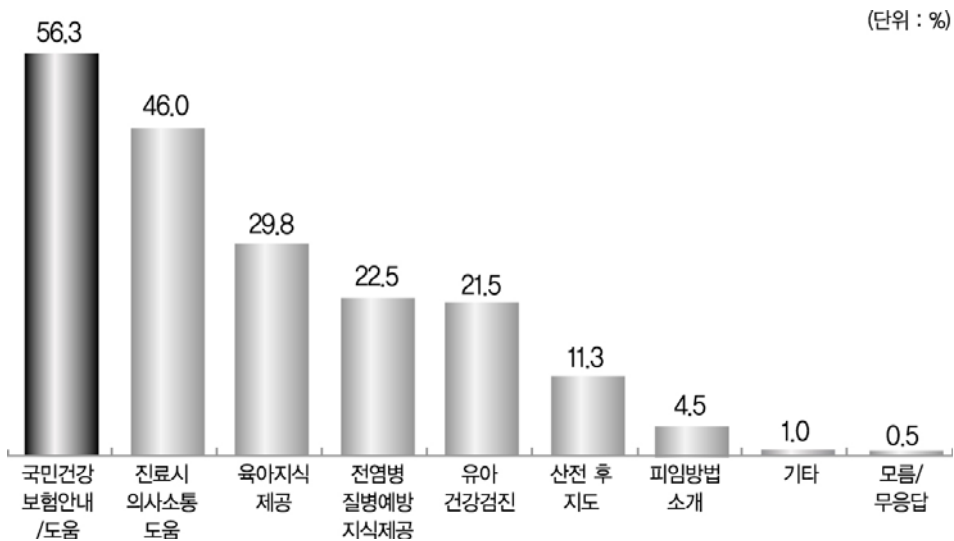
표 6-1.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방문 사회서비스 경험 유무(결혼이민자)  
단위: 명, %

| 구 분        |           | 방문 사회서비스 경험 |          | 계          | 통계                                      |
|------------|-----------|-------------|----------|------------|-----------------------------------------|
|            |           | 유           | 무        |            |                                         |
| 이민자<br>연령대 | 25세 미만    | 46(0.4)     | 69(0.6)  | 115(100.0) | $\chi^2=8.332$<br>$df = 3$<br>$p < .05$ |
|            | 25~30세 미만 | 41(0.3)     | 82(0.7)  | 123(100.0) |                                         |
|            | 30~35세 미만 | 26(0.4)     | 44(0.6)  | 70(100.0)  |                                         |
|            | 35세 이상    | 20(0.22)    | 72(0.8)  | 92(100.0)  |                                         |
|            | 계         | 133(0.3)    | 267(0.7) | 400(100.0) |                                         |
| 이민자<br>학력  | 중졸 이하     | 63(0.3)     | 154(0.7) | 217(100.0) | $\chi^2=3.960$<br>$df = 1$<br>$p < .05$ |
|            | 고졸 이상     | 70(0.4)     | 112(0.6) | 182(100.0) |                                         |
|            | 계         | 133(0.3)    | 266(0.7) | 399(100.0) |                                         |

### 2.3. 의료·건강 관련 서비스

희망하는 의료·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남편의 응답(복수응답)은 ‘국민건강보험 안내’(56.3%), ‘진료 시 의사소통 도움’(46.0%), ‘육아지식 제공’(29.8%), ‘전염병, 질병 예방 지식 제공’(22.5%), ‘유아 건강검진’(21.5%)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6-22>.

그림 6-22. 원하는 의료·건강 관련 서비스



### 3. 심층 면접조사 등에서 파악한 주요 내용

결혼이민자 및 남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혼이민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컴퓨터교육과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결혼이민자의 눈높이에 맞는 컴퓨터 및 운전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결혼이민자 및 가족들을 위한 각종 교육들이 주로 농번기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시기를 가급적 농한기로 옮겨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행 한글교육은 한국인이 한글로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이중언어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한글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별로 반을 편성해서 해당 국가의 언어와 한국어가 모두 유창한 강사를 초빙해서 단계별 맞춤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캄보디아 출신 G씨(20세)는 현재 한글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강사 선생님이 한글로만 교육을 해서 무슨 말을 하는 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한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을 했다. 캄보디아어를 구사하는 한글선생님에게서 한글을 배운다면 지금보다는 손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시 보육서비스가 충분히 되지 않고 있고, 교통이 불편해서 다문화가족센터 등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교육 시에 원거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교통편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도사들이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연료비(휘발류 값)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데 아주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들은 아내의 한국어 실력이 빨리 늘지 않는 것에 답답해하면서도 자신이 아내 나라 말을 적극적으로 배우려 하지는 않고 있었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어떤 결혼이민자들은 각종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족들(특히, 시부모) 몰래 오거나 병원 등에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 출신의 B씨(27세)의 경우는 며느리의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아버지가 함께 교육장에 차를 몰고 와서 손자까지 돌봐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가 많았다. 찾아가는 방문교육의 경우, 기간을 연장(1~3년)하고 주간 교육 횟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담당 지도사들 및 교육생들의 의견은 교육기간이 1기 5개월이라서 부족하므로 추가교육을 받도록 하여 교육의 지속성을 높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 결혼이민자, 가족 등은 국적의 취득 및 귀화의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한글지도사와 아동양육지도사의 경우는 보수가 지나치게 적고 10개월 계약직이어서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4. 소결

결혼이민자 및 남편 대상으로 사회복지 및 참여에 관한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결혼이민자의 25%는 현재 참석하는 사회단체나 모임이 전혀 없으며, 결혼이민자가정 자조모임에 가입하고 있는 남편의 비율도 30.3%에 불과하여 결혼이민자 및 남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가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과 ‘한국에 있는 본국인 친구나 직장동료’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관

런 단체의 활동가'(12.8%)는 예상 외로 낮은 응답률을 보여서 이들 기관의 전문상담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교육을 제외한 모든 사회서비스의 이용률이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부분의 사회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50% 이상이었다. 이용한 사회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농업기술교육 등 농업교육(92.7%), 한국어교육(88.4%), 취미교실(79.5%), 자녀양육 지원 및 정보제공(67.4%), 부부교실·가족캠프(63.1%), 임신·출산교육(62.2%), 정보화교육(61.8%)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는 '가사문제와 자녀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35.1%),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22.2%), '교통편이 불편해서'(17.8%) 등이었다. 따라서 농가도우미의 활용, 사회서비스에 관한 다국어로 된 정보 제공, 교통편의 마련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의 문제점(결혼이민자)으로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을 찾기 어렵다'(31.0%), '교육 내용과 교재를 이해하기 어렵다'(26.8%), '강사와의 언어소통이 어렵다'(20.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대 1 맞춤형교육, 이중언어교사 및 본국인 출신 한국어교사 양성, 눈높이에 맞춘 교재 개발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어교육은 제대로 된 이중언어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언어나 문화에 대한 남편 및 가족들의 이해와 학습이 필요하다.



### 1. 다문화가정 관련 법률

#### 1.1.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민자와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3월 21에 제정되어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80개가 운영 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변경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①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 및 한국어·사회적응·직업·가족교육 등 교육 지원, ②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실시 및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③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등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 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등 현행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⑤ 다문화가족 현황 파악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한국에 와서 혼인하거나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된 결혼이민자 가족과 귀화 허가를 받은 가족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다문화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권리나 가치의 보호가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가족을 구성하는 다양한 출생, 문화나 민족의 상이성 등 다양성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다문화주의가 강조되기 보다는 한국사회의 동화를 전제로 한 적응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1.2.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체류 외국인의 유형도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가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단편적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의 충돌, 중복, 부재 현상이 발생하여 종합적·거시적 시각에서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입법하게 되었다.

2007년 5월 17일 제정되어 2007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및 그의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서 나타나는 한계는 ‘동화’가 주된 시각으로 재한외국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문화주의적 시각이 부족하다.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원기간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로 설정하여 지나치게 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다.

### 1.3.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6월 16일부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제결혼중개업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일정 기준을 갖춘 뒤 해당 광역시·도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전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윤리의식 등 4시간의 교육을 받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등에도 가입하게 되어 있다.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되고, 거짓·과장광

고나 국가·성별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되어 있다. 또한 결혼 중개 계약 시 이용자에게 모국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하고, 결혼 여부 판단에 중요한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여 결혼 중개업체의 허위 및 거짓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피해에서 국제결혼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렇지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중개업자의 직업교육이 4시간 불과해 형식적이며, 거짓정보 제공이나 허위·과장광고 등을 했을 때 영업정지 1개월로 처벌기준이 너무 낮으며, 이때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이를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등록요건이 간단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3자를 내세워 손쉽게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 2.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2.1.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 2.1.1.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지역에 여성결혼이민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 사회여성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여 기초적응 교육을 실시하였다. 방문교육도우미를 통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하였다(26억 원, 30개 시·군). 또한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글교육 및 생활적응을 위

해 ‘우리 엄마의 한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특별한 며느리의 행복 찾는 농촌살이’(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의 교재를 발간하였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8년에는 ‘이주여성농업인 기초영농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주여성농업인 기초영농교육’ 시범사업은 기초 사회 적응 훈련을 마친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중 영농희망과 정착의지가 강한 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기초영농교육(9개도, 270명, 540백만 원)을 실시하였다. 2009년도에는 ‘이주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역의 여성농업인을 활용하여, 영농기술교육 및 농촌적응을 지원하도록 1:1 맞춤형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700명, 426백만 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 농업연수원, 여성농업인단체 등을 통해서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촌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협문화복지재단에서는 모범가구 모국방문 지원(’07년 200호, ’08년 100호) 등 복지 지원을 하고 있고, 13개 지역 농협의 문화복지센터에서 다문화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여성대학의 세부 프로그램은 한글교실, 한국에 대한 이해, 영농기술, 생활예절, 컴퓨터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이 교육을 받는 날에 남편과 시부모를 위한 부부교실, 고부교실도 함께 열고 있다. 이 과정은 주당 1~2회씩 총 15~33회 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향후 농협중앙회에서는 2009년 50개소(교육인원 1,000명), 2010년 70개소(교육인원 1,400명), 2011년 100개소(교육인원 2,000명)로 교육장 및 교육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업연수원에서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60쌍)을 위한 교육과정(연 3회, 2박 3일)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단체를 통해서 농촌 다문화가정 결연사업(친정 맺어주기 200쌍, 가족방문, 음식나누기, 멘토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 2.1.2.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국 전 결혼준비기’,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 ‘자녀양육 및 정착기’, ‘역량강화기’로 구분하여 정보제공, 언어교육,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국 전 결혼 준비기’에는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및 윤리의식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08년, 1,200여 명) 있으며, 결혼이민 예정 여성에게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12월부터 베트남과 필리핀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여 국제결혼 관련 상담과 한국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주재국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한국인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준비교육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에는 ① 집합, 방문 및 온라인 교육, 교육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②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출산 1~2개월을 앞둔 출산 예정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제공, ③ 종합 생활정보(다국어판 생활·정책 정보지 Rainbow+를 연 4회 발간) 및 통·번역 서비스(9억 원, ’09년 신규사업) 제공, ④ 위기 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양육 및 정착기’에는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08년에 아동양육지도사 1,600명을 파견하여 10,240가구를 지원할 예정), ② 취업역량 강화교육(영농기술교육, 정보화 및 면접기술 등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③ 취업 등에 관한 상담서비스(’08년, 28억 원)를 제공하고 있다.

‘역량 강화기’에는 ① 이민자 적합 직종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② 다문화사회 통합 선도자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창구로서 역할을 담당할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운영('07년, 28억 원)하여 한국어, 사회적응교육, 상담 및 문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전국에 80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개소 당 사업비 50백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①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③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④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필수사업으로는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조집단 운영 및 지원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특화사업으로는 정서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역량강화, 다문화인식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들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이용실적(2007년, 38개소)을 살펴보면, 총 참여인원은 256,122명이며, '한국어교육' 143,029명, '가족통합교육' 18,099명, '문화정서 지원사업' 24,404명, '역량강화 지원 사업' 20,151명, '자녀 지원사업' 25,716명, '다문화인식 개선사업' 17,109명, '찾아가는 서비스' 7,614명, '상담사업' 21,804명이었다.

### 2.1.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7년 11월에 다문화정책팀을 신설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이주민 대상 박물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 종합축제, 문화가이드북 발간, 이주노동자 다문화 청년캠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 강사 양성 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정과 그 2세들이 편견 없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고, 학생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 과정은 2008

년 9월 25일부터 3개월간 다문화 교육을 위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 2.1.4.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출생하여 성장하면서 학교생활 부적응 등 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해지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7년 6월에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부처 간·지역 간 협력체제 구축, 교사양성, 교육과정 및 교과서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권 보장 등 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중앙 다문화교육센터」운동을 지원하고, 맞춤형 다문화교육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 2.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행정연수원에 다문화사회관리과정을 신설·운영하여 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1기 ‘다문화사회관리과정’에는 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5~6급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성공적인 다문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2007년 지방의 국제화포럼에서 표창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방송국 PD의 다문화프로그램 제작 경험담, 외국인의 한국 사회 경험담 등 사례·실무 위주로 교과를 편성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내거주 및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내국인과 차별 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정책 개선에 힘쓰고 있다.

#### 2.1.6. 노동부

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한글교육, 취업상담 등

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로부터 소외된 지방거주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어머니를 초청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 2.1.7. 법무부

2007년 5월 법무부에서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처우보장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수립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시행하고('07. 11),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07. 5)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인신매매 성격의 국제결혼을 방지하고, 결혼비자 발급 서류·절차 표준화를 실시하고 있다.

### 2.1.8. 여성부

여성부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가정폭력 등 피해여성에 대한 이주여성 1,366센터를 활성화 하고, 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들에게 국제결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2008년 11월부터 전국 16개 지역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인원은 전국 16개 지역 총 640명이며, 1일간(8시간) 진행되는 교육을 마친 후에는 이수증이 발급된다.

### 2.1.9. 모범 사례

중앙정부와 직접 연계된 모범적인 다문화가정지원 사례로는 <홍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구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례를 들 수 있다.

홍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① 한국어교육: 한글교실 및 회화반, ② 한국문화 이해교육: 전통문화의 이해, 전통식품 만들기, ③ 가족교육: 초기입국가족교

육, 다문화 가족여행, ④ 가족상담: 가족집단상담, 이주여성 심리치료, ⑤ 자조집단 운영: 엄마나라 문화(언어) 교실, 국가별 자조집단 모임, ⑥ 정서 지원: 건강생활지원, 체육취미활동, ⑦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 운전면허 준비반, 간병인교육, 창업준비교실, 컴퓨터교육, 진로탐색 등, ⑧ 자녀지원: 학습 및 인성 집중지도, 건강검진 캠프, ⑨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다문화 통합교육, 네트워크회의, 거리홍보, 글짓기 공모전, 세미나 개최 등이다.

구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인식전환을 위한 아름다운 인형극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인형극단은 2007년 하반기부터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설립·운영하며, 유아를 비롯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전역을 다니며 ‘다문화 인식전환 인형극’과 아시아 각국의 문화공연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2.1.10. 중앙정부 지원정책의 문제점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은 각 부처 지원내용이 획일적이고, 수요자 위주의 지원 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부처의 관련 사업들은 교육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에 결혼이민자 스스로 주체가 되는 활동이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처별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이관하거나(예를 들면, 영농기술교육을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단편적인 문제해결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중앙-시·도-시·군-읍·면 간의 공공 전달체계 및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하며, 선진국의 다문화 융화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과 결혼이민자 본국의 문화, 언어, 역사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한국사회로의 적응과 통합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서 결혼이민자 및 자녀들의 학력, 연령, 국적 등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제공의 노력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농촌의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농업 및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미비하며, 결혼이민자의 특수한 경험과 현실적 어려움, 농촌지역 및 농업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정책지원 방안이 미흡하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후계세대를 농촌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문화가정 농업인에 대한 사회적응, 농업·농촌 정착, 전문농업인력 육성 등을 위한 단계별 중·장기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없으며, 결혼이민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산업(agribusiness) 창업 지원방안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 2.2.1. 현황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국어교육, 한국요리강습, 전통문화체험, 생활예절교육 등을 중심으로 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및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통적으로 한국생활 적응 및 문화 이해(한국어교육, 한국요리강습, 문화유적 탐방, 전통문화 체험, 생활예절교육), 가족관계 증진(가족상담, 부부관계 상담, 가족관계교육), 사회적 연결망 형성 지원(멘토링, 자매결연, 결혼이민자모임 지원), 여성복지 증진(임신·출산·건강교육), 취업기술교육 및 일자리 알선, 일반교육(컴퓨터교육, 교양취미교육, 자녀교육), 문화교류, 고향방문 지원, 위안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연결망 형성 지원, 여성복지 증진, 취업 기술교육 및 일자리 알선, 문화교류 등의 사업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하고 있었다.

## 2.2.2. 모범 사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특히 경상남도에서는 다문화 수용을 위한 지역사회구성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전문 강사가 시·군을 순회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이해 및 조기정착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역할, 국제화시대의 지역구성원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를 원어민 강사로 양성하기 위해서 외국어회화(영어, 중국어)가 가능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한국어, 교수기법 등을 교육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외국어교사로 활용하고, 방과 후 학교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매년 50명을 육성하여 2010년까지 200명의 원어민강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교수, 사회복지사, 법률가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농촌 결혼이주여성 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주여성의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동지 가족캠프, 이주여성 한국어지도자교육과정, 다문화가정 부부공동체 훈련 등을 운영 중에 있다.

나주시에서는 외국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결혼이민자가 직접 농가경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농업인으로서의 적응력을 배양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으로 영농활동에 종사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2008년에는 20개소를 대상으로 보조(시비) 100,000천 원, 자부담 18,750천 원(가구당 500만 원 보조, 125만 원 정도 자부담)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축사 개보수, 시설하우스 설치 등 농가가 희망하는 소규모 영농 및 축산을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고, 한우 입식, 농지 임차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자재 및 재료를 마련하고, ‘외국인여성 영농기술 식문화 교육’(10회 300명)등을 실시하고 있다.

곡성군에서는 전남과학대학의 협력을 받아서 다국어(한국어, 영어, 중국

어, 베트남어)를 지원하고, 각종 정보·자원·제도 소개, 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서 결혼이민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이버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곡성군다문화가정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곡성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연구학교(죽곡초등학교) 및 다문화교육 특설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체험센터(중앙초등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 2.2.3.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의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업들을 보면, 결혼이민자의 특수한 경험과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기존의 일반여성이나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와 요구에는 무관심한 채 한국인 가족들이 제기하는 요구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의 고국 문화에 대해서 남편이나 자녀와 같은 가족들이나 주변의 한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 또한, 관련 정보의 부족, 가족들의 이해 부족, 교통편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결혼이민자들이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결혼이민자들이 일부 집단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시·군청의 경우, 중앙의 여러 부처에서 내려오는 다문화가정 관련 사업이 ‘고만고만한 것들이 여기저기서’ 내려오다 보니, 담당 부서 간의 조율이나 협력에 혼선이 생기거나 여성·복지 관련 부서에 사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3.1. 현황

2007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종교시설 45개, 이주노동자센터 54개, 복지관 쉼터 67개가 있다.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은 주로 교육, 상담, 의료, 가족관계 증진, 자조집단 육성, 홍보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교육: 한글교육, 문화적응, 문화축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외국어교실, 시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 부모의 자녀교육, 정보화교육 등, ② 상담: 개인상담, 가족상담, ③ 의료: 의료지원, 무료진료 등, ④ 가족관계: 부부관계 증진, 가족캠프, 청소년캠프 등, ⑤ 자조집단 육성: 자활집단, 자원봉사단 등, ⑥ 홍보 네트워크 형성: 소식지 발행, 국가별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등이 있다.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주요 민간단체로는 결혼이민자지원연대, 푸른시민연대, 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연대, 아시아 이주여성센터, 어울림(이주여성다문화가족센터),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 국제 외국인 센터,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무지개청소년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등이 있다.

#### 3.2. 모범 사례

‘홍성이주민센터’는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힘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홍성이주민센터’는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새홍성교회, 홍성YMCA, 홍성사회복지관 등이 중심이 되어 결혼이주민의 한글교육, 다문화교육, 상담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한마음아리랑축제, 자조모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참여 기관의 역할 분담을 살펴보면, 홍성이주민센터에서는 한글교육과 상담을 중심으로 각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홍성YMCA는 베트남 이민여성의 급증에 따라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육, 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홍성사회복지관은 취업교육과 사례관리를 맡고 있다. 그리고 홍성군보건소, 홍성여성농업인센터, 홍성가정폭력상담소, 홍성군도서관, 홍성요리학원 등도 참여하여 각 기관들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홍성이주민센터 등이 구축하고 있는 ‘이주여성민간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기관들은 사업에 있어서 중복을 피하고 있으며,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 3.3.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문제점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보면, 내용과 방식이 비슷하여 민간단체 간의 차별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동화에 초점을 두고,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적응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학습부진,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학습 부적응, 진학을 저조, 낮은 자존감,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농업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 일본<sup>2</sup>

‘공생’이란 용어는 생태학에서 유래했으며, ‘다문화공생’이란 표현은 1993년에 한 일간지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1995년 한신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외국인을 지원했던 단체가 전신이 되어 만들어진 ‘다문화공생센터’가 계기가 되어 다른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다문화공생’이란 용어의 사용이 확산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를 넘어 오면서 다문화공생은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자체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 ‘다문화공생’은 일본판 ‘다문화주의’를 집약하는 간판용어로 정착하게 된다.

일본에서 다문화주의가 하나의 구체적인 정책 의제로 대두된 배경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러 주체(시민단체, 지방정부 등)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급속히 전개되는 다문화·다민족화 추세 속에서도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회피해 오던 중앙정부가 다문화공생사회 건설을 위한 시책 마련을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한 것은 2005년부터이다. 2005년 6월에 총무성은 ‘다문화공생 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였고, 이 연구회의 정책보고서를 바탕

<sup>2</sup> 고모다 마유미(2007), 김범수(2007), 김이선 외(2007), 행정자치부(2007), 임경택·설동훈(2006)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으로 2006년 3월에는 ‘지역에서의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마련하였다. ‘지역사회의 다문화공생’은 ‘국적과 민족 등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상호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에서 다문화공생정책이 대두하게 된 현실적 배경은 외국인(특히, 정주 외국인)의 증가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인이 대다수였으나 최근 중국, 남미 일본계 외국인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뚜렷한 이념을 제시하거나 제도적 변화를 꾀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주민이나 일본인 주민들이 실제 겪는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발적으로 공존의 질서를 형성해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의 정책 핵심은 외국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데 비중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사회적 지위나 인권문제, 제도적 권리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다.

다문화 자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산업의 활성화 사례로는, 야마가타현의 도자와무라에서는 일본에 정착하게 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역량을 지역 활성화에 접목하기 위해서 ‘고려관’과 도자와무라 김치와 냉면을 개발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발전시켰다. 도자와무라에 정착한 한국인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김치 제조방법을 전수하고 고려관의 설립과정에도 참여하였으며 마을의 국제교류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일본에서는 다문화 사회복지사를 별도로 두어 외국인 주민이 안고 있는 생활문제 해결을 위해 케이스워크와 커뮤니티워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07년 4월에 아이치현에서 처음으로 배치된 다문화 사회복지사는 행정관련기관이나 NGO 등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유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한 학교당 5명 이상의 외국인 학생이 있을 경우 전담 일본어 교사 1명을 파견하고 있고 있다. 예를 들면, 가나가와현은 방과 후 일본어교실에 일본어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고, 가와사키는 5명 이상의

외국인 자녀가 있는 학교에는 이들을 전담하는 교사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일본어가 서툴러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 측은 국제교류센터 등에 통역요청을 할 수 있다. 학교에 배치되는 통역자원들은 주로 국제교류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다.

가나가와현은 1998년에 외국인회의를 설립하여 외국인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외국인회의는 외국 국적을 가진 20명 이내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일종의 협의체로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생활하면서 느낀 불편함과 시정사항을 시 당국에 건의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교류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의료통역, 재해통역 등 각 분야별 통역을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학교육, 문화교육, 통역서비스 분야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일반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은 결혼이민자들의 사회복지 수혜 대상을 한정시키고, 대상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수혜 대상의 조건이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 우선순위는 첫째, 귀화 등의 과정을 통해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둘째, 영주자 및 정주자, 입관법(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정규 입국자 순이다. 그렇지만 입관법에 위반되는 비정규입국자 또는 불법체류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영주자 및 정주자, 정규입국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내용은 사회보험, 생활보장,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보험으로는 건강보험법 혹은 국민건강보험법, 후생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호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생활보호 혹은 공공부조에 관한 생활보호법은 외국인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이를 무 보호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인도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조치를 통해 이 법을 외국인에게도 준용하여 사실상의 보호를 하고 있다.

## 2. 독일<sup>3</sup>

강한 단일민족의식을 견지하고 있던 독일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산업현장의 필요에 따른 노동력 제공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여기에 기반을 두고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 왔다. 1990년대 후반까지 독일의 외국인 및 이민정책은 국내의 외국인 수를 줄이는 데 암묵적인 목적이 있었다.

독일이 현재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합정책은 다문화주의가 지향하는 ‘다원적 통합’과는 거리가 있다. 독일의 국적법과 이민법이 수단으로 삼는 정책은 통합의 다원성보다는 주류문화로의 편입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의 국적법에 따르면, 시민권자와 결혼한 동시에 자동적으로 배우자에게 시민권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결혼 후 2년이 경과하고, 혼인 이후 합법적으로 3년 정주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독일의 외국인 가족복지정책은 노동과 취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노동자 가족을 위해 협소하게 시작되었지만, 사회안전망을 통해 복지주의적 원칙에 토대를 둔 시민권적 패러다임으로 방향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독일의 외국인 가족복지정책은 소득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연방가족부는 빈곤으로 인한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가족의 빈곤예방조치를 시행하여 가족의 자조력을 강화하여 국가보조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자 한다. 그리고 교육과 양육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외국인 가족을 위하여 특화된 양육지원정책은 없지만 독일국민에게 제공되는 개선된 양육지원방안

<sup>3</sup> 송중호(2007), 이용승(2007), 이용일(2007), 이진숙(2005), 행정자치부(2007)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즉 직장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기 위해 부모들은 총 3년간의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3년 중 1년은 아동이 8세가 될 때까지 유보해서 사용할 수 있다.

교육정책은 독일의 사회통합정책에서 필수적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언어정책을 강조하면서 외국인이 독일어 능력을 습득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다.

2005년에 발효된 새로운 독일이민법 제43조와 제45조에 의하면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구하고 있으며, 통합과정은 독일의 역사, 문화, 법제도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외국인 직업교육과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하급기관으로서 통합적인 정보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외국인의 정치참여는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위원회를 통하여 외국인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 캐나다<sup>4</sup>

캐나다는 1971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다문화주의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나라이다. 캐나다는 건국 당시부터 영국계와 프랑스계로 나누어지는 다민족국가였기 때문에 국가통합을 위해서 다문화정책이 절실히 필요했다.

캐나다에서는 다문화주의를 국시로 표방한 1971년 이후, 캐나다 내에 존

<sup>4</sup> 유정석(2007 및 2008), 이성언·최유(2006),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2007), 캐나다 정부(문화유산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재하는 여러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고, 소수민족문화를 장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1982년 수정 헌법의 ‘기본권과 자유에 관한 헌장’의 제27조에 다문화주의를 명시하는 규정을 두게 된다. 즉,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헌법화되어 인종 간의 평등을 주창하게 되었다.

캐나다는 2001년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UN) 이후로 다문화주의의 핵심가치인 인정(recognition)과 차별철폐를 위해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다문화주의는 캐나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기초 정책으로 자리 잡아 왔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다양성(diversity)과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법’은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캐나다의 모든 구성원의 자유를 존중하며, 그들의 문화적 유산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다문화주의를 주관하는 정부기관은 문화유산부(Canadian Heritage)이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지방정부, NGO, 지역 소수인종 공동체, 학교, 종교단체, 국제기구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에서 지향하는 이민자 정책은 일방적 동화가 아닌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들어오면서 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언어교육프로그램, 이민자 정책과 적응 프로그램, 기존의 가정과 연결하여 이민자들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캐나다 문화유산부(Canadian Heritage)의 주요 정책프로그램으로는 반인종주의 캐나다 행동계획(A Canada for All: Canada's Action Plan against Racism), 캐나다 다문화주의법 시행에 관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on the Operation of the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 아시아 문화유산의 달(Asian Heritage Month), 흑인역사의 달(Black History Month),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날(Canadian Multiculturalism Day), 캐나다 인종관계 재단(Canadian Race Relations Foundation), March 21, Mathieu da Costa

Challenge 등이 있다.

반인종주의 캐나다 행동계획(A Canada for All: Canada's Action Plan against Racism)은 기회의 균등을 넘어 결과의 균등을 추구한다. 이것은 단순히 인종주의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캐나다인들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도록 돕는 것이다.

캐나다 다문화주의법 시행에 관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on the Operation of the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는 매년 작성되는 것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의 수행 정도를 평가한다.

아시아 문화유산의 달(Asian Heritage Month)을 지정하여 영화상영, 연극과 춤 공연, 전시회, 요리강좌, 어학교육, 시낭송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흑인역사의 달(Black History Month) 프로그램은 1995년부터 매해 흑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배움으로써 이들의 캐나다 사회에의 기여에 대하여 살펴본다.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날(Canadian Multiculturalism Day)은 매년 6월 27일에 캐나다인들이 다문화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캐나다가 미래사회에 발전할 수 있는 가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캐나다 인종관계 재단(Canadian Race Relations Foundation)은 캐나다 다문화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재정조성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재정을 조성하여 관련 조직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Mathieu da Costa Challenge는 1996년부터 해마다 9~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글짓기 및 미술대회’로서 다양성이 어떻게 캐나다의 역사를 형성하여 왔고, 다문화주의가 캐나다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주제로 한다.

캐나다인들은 캐나다가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캐나다 정부는 다문화주의 이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있어서 세계적인 주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학과 연구소 등에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이민자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오랫동안 연습되어 있는 사회이다. 따라서 캐나다인들은 서로 간에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곧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들이나 소수인종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소년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에서는 피부색과 언어와 같은 피상적인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래를 생각한 정책적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 4. 정책적 시사점

앞서 일본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을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정 관련 전담 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관련 정책들이 대체로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현장 밀착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들이 인정받고 살아가기 위해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위, 인권문제, 제도적 권리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민국가로서 정체성 내지 현실을 부정했던 독일의 경우, 이민자들에게 그들 고유의 문화적 관습과 가치를 포기시키고 그들을 독일사회의 문화에 동화시키는 통합정책이 이민 억제시기의 소극적 사회통합의 주를 차지했다. 이후 독일에서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경제활동 연령기에 있는 외국인에 초점을 둠으로 인해서 외국인 청소년이나 노인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정책은 제1세대의 사회문화적 통합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후속세대의 양육과 보호까지 고려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캐나다에서는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캐나다의 모든 구성원의 자유를 존중하며, 그들의 문화적 유산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에서 지향하는 이민자 정책은 일방적 동화가 아닌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캐나다는 이민자들이나 소수인종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소년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다양성과 평등을 존중하는 인권존중의 정책이라고 평가된다.

우리는 결혼이민자를 주류문화에 편입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정책으로는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세계화시대의 결혼이민자 통합은 자국민과 결혼이민자 쌍방을 위한 윈-윈(win-win) 전략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를 사회정책의 객체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며 우리사회의 중요한 주체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일본과 독일에서는 각 이민자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차별화된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미래의 통일한국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찍 뿌리내린 자원봉사문화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하겠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좋은 본보기로 삼아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는 이민자들이나 소수인종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소년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본받아서 청소년들이 다문화주의적 시각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 1. 기본방향

첫째, 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동화시키고 통합시킬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상호공존 해야 할 우리의 동료 및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는 다문화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들은 20~30대가 대부분이고(89.5%), 고졸 이상의 학력이 45.9%로 나타나 우리 농촌의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남편, 시부모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방송, 신문, 잡지, 학교 및 사회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라는 지위에 보다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sup>5</sup>

둘째,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주도의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를 (예를 들면, 지역협의회, 통합적 네트워크 등) 구축하고 정부, 시민사회, 결혼이민자 가족, 결혼이민자 당사자 등의 역할 분담 및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셋째, 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고국에서 체득한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

<sup>5</sup> 현재는 주로 한국인의 아내 또는 자녀들의 어머니로서의 지위 인정하고 있다.

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다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음식문화(각종 요리법, 가공·저장법 등)를 활용하여 부업이나 창업으로 발전시키고, 출신국가, 출신지역과의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각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점, 정책 요구사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조사연구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 거주기간, 생애주기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접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2. 주요 정책과제

### 2.1. 다문화가정 관련법의 개선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동화주의적인 시각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다문화주의적 시각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선법안에서는 다문화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권리나 가치의 보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선법안에서는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가족, 탈북자가족, 유학생가족 등에 대한 지원규정도 필요하며,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위, 인권문제, 제도적 권리에 관한 내용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마련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은 다문화주의적 시각이 보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자체의 책임자가 반드시 포함되

도록 하여 관련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야 하며, 현행 지원기간(3년)도 다소 연장할 필요가 있다.

결혼중개업자의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결혼중개업자의 의무 직업교육시간(현행 4시간)을 늘려서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나게 해야 한다. 허위 정보 제공이나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처벌수준(현행 영업정지 1개월)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손쉽게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결혼중개업자의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결혼중개업자에게 무죄 여부를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노력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2. 농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이버 지원체계 구축

지금까지 농촌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은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 농협문화복지재단, 농촌희망재단 등을 중심으로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농촌 및 시·군별 사이트를 종합적으로 연계 관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는 시·군 포털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지역사회나 인근의 대학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곡성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이버 지원체제’는 이 정책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좋은 안내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이버 지원체계에서는 다국어(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종 정보·자원·제도 소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이민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한국 농업·농촌생활에 관한 사이버 안내책

자를 개발·보급하여 농업과 농촌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사이버 지원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군 사이트의 운영 성과에 따른 포상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3. 혼인 당사자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사전 교육 실시

설문조사, 심층 면접조사 등을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결혼 중개업체 등의 허위 정보로 인해 속아서 결혼을 했다는 결혼이민자들도 상당수 있었으며, 이들의 한국 결혼생활은 원만하지 못하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자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국제결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국의 결혼이민 예정 여성에게 한국생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층적인 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국제결혼이민관 파견관제도(현재 베트남, 필리핀)를 다른 나라들로 확대하고,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결혼중개업자가 혼인 대상자들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혼인 당사자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예를 들면, 학력, 재산, 직업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결혼준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 교육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준비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이수자에게는 각종 정부 지원에서 특별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 가족에게도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관한 사회·문화 이해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2.4. 농촌 다문화가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시·군 단위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역협의회’를 다문화가정 관련 공무원, 전문가, 결혼이민자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농업 기술센터, 농협, 시·군청, 지역 교육청, 지역 문화원, 학교 등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홍성의 사례는 지역의 민·관 협력체제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높은 시·군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관련 전담인력 또는 전담부서를 배치하여 농촌의 다문화가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원스톱복지서비스(희망복지 129), 병무청의 사회복무제도와 연계하여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2.5.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 모국어 교육 강화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서비스는 한국어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교육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회서비스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은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되어야 하며,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구사할 줄 아는 강사를 확보하여 제대로 된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농촌에 정착하여 살고 있고 한국어에 능통한 같은 국가 출신의 선배 결혼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남편을 대상으로 아내 나라 언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내의 모국어에 대한 남편의 이해가 증가할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 및 이해는 좀 더 원활해 질 것이다.

## 2.6. 다문화가정 대상 영농교육의 개선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대상 영농교육은 결혼이민자의 한국 적응단계별, 품목별로 참여 및 수요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결혼 초기의 한국사회 진입단계에서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서 결혼이민자들의 영농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결혼이민자 대상의 영농교육은 결혼이민자의 한국 적응단계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진입단계(0~3년)에서는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어교육, 생활문화정보 제공, 농업·농촌에 관한 기초상식 교육, 결혼이민자 본국의 문화 및 언어에 대한 가족교육, 임신·출산 지원을 중점적으로 한다.

정착단계(3~5년)에서는 우리 농업·농촌사회에 연착륙 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목표로, 본격적인 일반 영농기술교육 실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교육도우미 및 후견인 제도 강화, 아동양육 지원 등을 강화하고, 농기계 및 차량의 운전 및 안전 관련 교육을 중점 지원한다.

성장단계(5~10년)에서는 전문농업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품목별·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맞춤형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한다. 농업경영교육을 실시하고, 농산업 관련 창업을 지원하며, 작목반 등의 가입을 장려하여 결혼이민자의 전문농업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둔다.

영농교육은 결혼이민자의 영농경험, 기술수준, 학력, 영농기반, 영농활동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영농기술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교재 및 강의방식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편 또는 교통비를 지원하며, 교육시기도 농한기에 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 및 농촌 관련 내용으로 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실생활에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며, 교육 참여 시 각종 도우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체교육, 개별 방문교육, 마을 단위 순회교육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합하여 시행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노하우 중심의 영농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결혼이민자 대상의 농기계, 차량 등의 운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관리기, 트럭, 오토바이, 승용차 등에 대한 운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관련 면허시험을 결혼이민자의 본국어로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면허시험의 경우 학원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 농촌관광, 전자상거래 등을 자신의 남편이나 다른 여성농업인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대상의 정보화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결혼이민자가족 영농기술교육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영농을 지도하고 결혼이민자를 핵심 농업 후계인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 영농기술교육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으로 환원시켜야 할 것이다.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단체, 농협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의 영농교육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사업은 6개월이라는 일회성으로 종료되어서 안 되고 장기적·단계적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인 영농기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농촌에 관한 현장 전문성이 충분한 사람이 지역의 결혼이민자 대상의 영농기술교육을 총괄하게 하고 이들의 처우와 신분을 적정 수준에서 보장해주어야 한다.

## 2.7. 영농기반 구축 및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

농촌 다문화가정의 영농기반을 살펴보면, 평균 농지(논·밭) 소유면적이 4,838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농기반이 취약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유휴농지, 임대농지 등을 알선해주고, 결혼이민자의 후계자 육성과 연계한 후계세대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농어업·농어촌의 사회적 역할 및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2.8. 농업 관련 산업 및 비농업 경제활동 지원

먼저, 결혼이민자들이 그들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나주시에서 결혼이민자들을 중심으로 공예촌을 조성하여 소득창출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충남 예산의 O씨(일본 출신, 43세)가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그들이 체득하고 있는 각종 요리법, 가공·저장법 등을 활용하여 부업(예를 들면,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식품 및 음식 자원을 기반으로 ‘농식품 관련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전문여성농업인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규 창업 관련 기술 및 경영 지도를 위한 멘토링제도를 운영하고, 직업능력 개발 및 창업 지원, 취업 상담 및 알선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9. 사회보장에서의 차별 해소 및 사회서비스 확대

우선, 각종 사회복지제도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결혼이민자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이장, 새마을부녀회장, 다문화가족센터, 여성농업인단체, 농협, 이웃 등을 통한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조모임이나 다문화봉사대의 결성 등을 통해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협력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결혼이민자 남편의 1/4 정도만이 남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남편 또는 부부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부 간의 갈등 등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의 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예를 들면 고부 간의 갈등 관리방안, 며느리나라 이해 등)도 필요하다.

대다수의 결혼이민자들이 교통 소외계층이고 주변 도시의 지리에도 밝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협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고령·취약농가 인력지원(1개월 이상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가사도우미 파견 지원)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정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가도우미, 통역도우미, 요양보호사, 요리사, 상담보조원 등과 같은 영역에서 사회복지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즉,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역량들을 사회복지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농촌 결혼이민자의 복지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여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농업·농촌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지가 만들어지고 조사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 1. 요약

### 1.1. 연구의 개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농촌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농촌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농촌사회 내부의 성격도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및 2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등 다문화가정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 사회통합 지원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영농 및 기타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이 부족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 및 문제점을 영농 및 기타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② 국내외의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③ 농업·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적 시각에서 도출한 농촌 다문화가정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400가구의 다문화가정(여성결혼이

민자 400명, 남편 4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문화가정 20가구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 및 관찰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 기존자료 조사, 외국(일본, 독일, 캐나다)의 사례 분석, 전문가의 의견수렴, 관련 행정조직 및 기관 담당자 조사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 1.2. 다문화 관련 이론적 검토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구성한 가족을 지칭한다.

다문화사회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이민자들은 접촉-경쟁-화해-동화의 네 과정을 경험하면서 주류사회에 동화하며 정착한다고 보는 동화이론과 각 인종과 민족은 서로의 이익 추구하고 협조를 통한 조화를 이루면서 다문화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 샐러드보울론, 샐러드 보울보다 완전한 혼합과 융합을 가져온다고 보는 비빔밥문화론 등이 있다.

이민자 유입국의 이민자 통합정책의 유형으로는 차별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동화모형(assimilationist model), 다문화주의모형(multi-cultural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서구에서는 다수-소수인종집단 간의 사회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으로, 한 국가 또는 사회 안에서 몇 가지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문화집단들 간의 공존을 통해 국가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념 또는 정책을 일컫는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국가 위주 정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정리한 이 연구의 이론적 시각은 ‘다문화주의’로서,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의 절충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 1.3. 한국 다문화가정의 형성 경로와 현황

우리는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형성 경로를 크게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1950~1970년대 국제결혼의 주류를 형성한 ‘미군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 둘째, 1980년대 이후 나타난 ‘외국인 남성 전문직 종사자와 한국인 여성의 결혼’이며, 셋째, 비교적 적은 수치이나 1980년대 말 ‘국내에 들어온 이주노동자와 한국인의 결혼’이 있으며, 넷째,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199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이 있다.

국제결혼 건수는 1990년 4,710건에서 2007년 38,491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와의 이혼 또한 2002년 401건에서 2007년 5,79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07년에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 7,930명 중 40.0%에 해당하는 3,172명이 외국 여자와 혼인하였으며, 농촌지역 혼인 남자 중 10.0%가 농림어업 종사자이며, 그 중 44.5%가 외국 여자와 혼인하였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 5월 기준으로 추계한 농촌(읍·면·부)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 수는 28,240명이다.

이렇게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이주의 여성화가 가속화되고, 통일교 등 종교단체의 국제결혼 장려활동이 활발하다는 요인과 맞물려 국내 결혼 적령기 인구의 성비 불균형 현상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결혼을 연기하거나 기피하고, 농촌에 거주하거나 저학력인 남성들은 한국에서 배우자를 만나기 어려워지면서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1.4. 국제결혼 과정 및 결혼생활 실태

결혼이민자들은 주로 ‘결혼중개업체’(53.0%) 및 ‘친구, 가족, 친척, 지인 등’(31.1%)을 통해서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남편은 결혼의 주요 동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민자는 주로 경제적이며 능동적인 이유인 반면에, 남편은 ‘혼기를 놓치고 결혼이 어려워져서’, ‘농촌으로 시집오려는 한국여성이 별로 없어서’와 같은 수동적인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53.6%)이 연간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이고, 대부분의 가구(94.9%)가 2007년도의 전국 농가의 평균소득(31,976원)보다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가구소득이 대체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들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은 본국 생활과 한국생활의 상대적 비교 때문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들이 결혼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언어(의사)소통 곤란’(44.8%)과 ‘문화적 차이’(34.3%)로 나타났다.

## 1.5. 영농 및 기타 경제활동 실태

결혼이민자 가구의 3/4 이상(78.8%)이 농지(논·밭) 소유면적이 2ha 이하로 나타났다. 응답가구의 평균 농지 소유면적은 4,838평(1.6ha)으로 나타나 일반 농가의 30~40대 층보다 영농기반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결혼이민자들은 농사기술을 주로 남편에게 배우고 있다. 농가의 결혼이민자들 중에서 농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입국 초기 단계이거나 자녀 출산기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결혼이민자들의 영농교육 참여의사(26.3%)가 다소 낮지만, 앞으로 교통편 및 보육서비스의 제공, 결혼이민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 및 강의

마련, 가족들의 협조, 관련 서비스 홍보 등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 1.6. 사회참여 및 사회복지 실태

결혼이민자의 25%는 현재 참석하는 사회단체나 모임이 전혀 없으며, 결혼이민자가정 자조모임에 가입하고 있는 남편의 비율도 30.3%에 불과하다. 결혼이민자가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과 ‘한국에 있는 본국인 친구나 직장동료’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는 ‘가사문제와 자녀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35.1%),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22.2%), ‘교통편이 불편해서’(17.8%)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의 문제점(결혼이민자)으로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을 찾기 어렵다’(31.0%), ‘교육 내용과 교재를 이해하기 어렵다’(26.8%), ‘강사와의 언어소통이 어렵다’(20.8%) 순이었다.

결혼이민자가 사회서비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인 것은 ‘교육장까지 교통편 제공’(24.8%), ‘좀 더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내용’(16.0%), ‘방문교육의 확대’(15.8%), ‘모국어 통역 가능한 상담자 제공’(14.8%) 등이다.

결혼이민자가정 대상 교육 및 활동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방문교육 확대’(20.0%), ‘교육장까지 교통편 제공’(17.5%), ‘실질적인 교육내용 구성’(16.3%), ‘교육 내용과 일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13.5%), ‘모국어 통역 가능한 상담자 제공’(13.0%), ‘교육받을 때 보육서비스 제공’(11.5%)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에서 원하는 의료·건강 관련 서비스(복수응답)는 ‘국민건강보험 안내’(56.3%), ‘진료 시 의사소통 도움’(46.0%), ‘육아지식 제공’(29.8%),

‘전염병, 질병 예방 지식 제공’(22.5%), ‘유아 건강검진’(21.5%) 순이었다.

## 1.7. 다문화가정 관련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결혼이민자가 한국에 거주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2007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08년 6월부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 지원 대상과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여러 부처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로의 적응과 통합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고, 결혼이민자 및 자녀들의 사회기여나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농촌에서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농촌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지자체와 민간단체 차원에서는 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착하는 데 가장 시급한 한글교육을 중심으로 자녀 양육 및 한국문화·예절교육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상남도, 나주시, 곡성군 등 일부 지자체와 홍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 1.8. 외국의 다문화가정 정책

일본은 다문화공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교류원을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배치

하고 각 분야별 통역 양성 사업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야마가타현의 도자와무라에서는 일본에 정착하게 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역량을 지역 활성화에 접목하기 위해서 ‘고려관’과 도자와무라 김치와 냉면을 개발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발전시켰다.

독일의 통합정책은 통합의 다원성보다는 주류문화로의 편입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일시적 사회통합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다문화가정 관련 전담 부서 또는 담당자를 둬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은 통합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현실적 필요에 의해 경제활동연령기에 있는 외국인에 초점을 두고 직업교육 및 고용정책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캐나다에서는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캐나다의 모든 구성원의 자유를 존중하며, 그들의 문화적 유산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에서 지향하는 이민자 정책은 일방적 동화가 아닌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캐나다는 이민자들이나 소수인종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소년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다양성과 평등을 존중하는 인권존중의 정책이라고 평가된다.

## 1.9. 농촌 다문화가정 정책의 개선방향

결혼이민자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상호 공존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주도의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부, 시

민사회, 결혼이민자 가족, 결혼이민자 당사자 등의 역할 분담 및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농촌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1) 다문화가정 관련법의 개선, (2) 농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이버 지원체계 구축, (3) 혼인 당사자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사전 교육 실시, (4) 농촌 다문화가정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5)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 모국어 교육 강화, (6) 다문화가정 대상 영농교육의 개선, (7) 영농기반 구축 및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 (8) 농업 관련 산업 및 비농업 경제활동 지원, (9) 사회보장에서의 차별 해소 및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 2.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53.6%)이 연간 가구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고, 대부분의 가구(94.9%)가 2007년도의 전국 농가의 평균소득(31,976원)보다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연간 가구소득이 대체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들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은 본국 생활과 한국생활의 상대적 비교 때문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 가구의 3/4 이상(78.8%)이 농지(논·밭) 소유면적이 2ha 이하이며, 평균 농지 소유면적은 4,838평(1.6ha)으로 나타나 일반 농가의 30~40대 층보다 영농기반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는 ‘가사문제와 자녀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35.1%),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22.2%), ‘교통편이 불편해서’(17.8%) 등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가 사회서비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한 것은 ‘교육장까지 교통편 제공’(24.8%), ‘좀 더 실생활에 필요한 교

육내용’(16.0%), ‘방문교육의 확대’(15.8%), ‘모국어 통역 가능한 상담자 제공’(14.8%) 등이었다.

결혼이민자들은 우리나라 농촌에 있어서 새로운 인적 자산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혼이민자들을 우리의 동료 및 이웃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여서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들의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농촌의 다문화가정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경제활동이나 사회서비스 수혜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농촌의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도 결혼이민자 및 남편의 사회경제적 특성(본국에서 거주 지역, 농사 경험, 결혼이민자와 남편의 연령차, 결혼이민자의 학력, 한국거주 기간, 지역 유형, 결혼이민자의 연령대, 주 작목, 가구소득, 농가 형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부록 1

##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설문 조사표

|                         |           |  |  |  |
|-------------------------|-----------|--|--|--|
| <b>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 조사표</b> | <b>ID</b>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면접조사원 ○ ○ ○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의뢰로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농촌에 살고 있는 다문화(결혼이민자)가정의 생활실태 및 정책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수치화되어 통계 처리되며, 통계법 제13조에 의해 개인의 신상자료는 어떠한 것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해주시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9월

조사주관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대행기관 : (주)현대리서치연구소

※ 응답 대상자 : 본 설문지는 여성 결혼이민자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자 기록 사항  |     |           |                  |  |
|------------|-----|-----------|------------------|--|
| 여성결혼이민자 성명 |     | 전 화<br>번호 | 자택 : (    )    - |  |
|            |     |           | 휴대폰: (    )    - |  |
| 남편 성명      |     |           | 휴대폰: (    )    - |  |
| 주소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

## I 인구·사회적 배경

문1. 귀하의 결혼 전 국적은 어느 나라입니까?

- |           |            |                       |
|-----------|------------|-----------------------|
| 1) 중국(한족) | 2) 중국(조선족) | 3) 일본                 |
| 4) 베트남    | 5) 필리핀     | 6) 캄보디아               |
| 7) 카자흐스탄  | 8) 러시아     | 9) 파키스탄               |
| 10) 인도    | 11) 이란     | 12) 인도네시아             |
| 13) 네팔    | 14) 우즈베키스탄 | 15) 기타 (            ) |

문2. 귀하께서는 현재의 남편과 결혼한 지는 몇 년 되셨습니까?

총 \_\_\_\_\_년

문3. 귀하께서는 한국에서 사신 기간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총 \_\_\_\_\_년 \_\_\_\_\_개월

문4. 귀하는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습니까?

- 1) 예                      2) 아니오

문5.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1) 무교 (없음)                      2) 개신교 (기독교)                      3) 가톨릭  
4) 불교                                      5) 힌두교                                      6) 이슬람교  
7)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                      8) 기타 (무엇 :        )

문6. 귀하께서는 한국에 오시기 전에 본국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셨습니까?

- |                                 |           |               |
|---------------------------------|-----------|---------------|
| 1) 농림수산업                        | 2) 자영업/사업 | 3) 판매/영업/서비스직 |
| 4) 사무/기술/전문직                    | 5) 공무원    | 6) 교사         |
| 7) 학생                           | 8) 가사     | 9) 무직         |
| 10) 기타 (                      ) |           |               |

문7. 귀하와 남편의 나이(만)는 각각 몇 세입니까?

본인 : 만 \_\_\_\_\_ 세    남편 : 만 \_\_\_\_\_ 세

문8. 현재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 (본인 포함)

총 \_\_\_\_\_ 명

|    |        |
|----|--------|
| II | 국제결혼과정 |
|----|--------|

문1. 귀하는 남편을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 |                       |                                |
|-----------------------|--------------------------------|
| 1) 부모·형제의 소개          | 2) 친척의 소개                      |
| 3)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 4) 종교단체를 통해서                   |
| 5) 친구, 선후배, 아는 사람의 소개 | 6) 다른 사람의 소개 없이 직접 만남          |
| 7) 행정기관의 소개           | 8) 기타 (                      ) |

문2. 귀하가 국제결혼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에만 표시)

- |             |                            |
|-------------|----------------------------|
| 1) 남편을 사랑해서 | 2) 본국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
|-------------|----------------------------|

- 3) 종교적인 이유로                      4) 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  
 5) 가족, 친척, 친구 등의 권유로      6) 특별한 이유가 없음  
 7) 기타 (                      )

문3. 한국에 오기 전에 귀하는 본국에서 어떤 지역에서 주로 살았습니까?

-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농어촌

문4. 본국에서의 귀하 가족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1) 매우 부유했다                      2) 부유한 편이었다  
 3) 보통 수준이었다                  4) 가난한 편이었다  
 5) 매우 가난했다

|            |                |
|------------|----------------|
| <b>III</b> | <b>결혼생활 실태</b> |
|------------|----------------|

문1.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표시)

- 1) 남편                      2) 자녀                      3) 시아버지                      4) 시어머니  
 5) 친정아버지                  6) 친정어머니                  7) 남편의 형제자매      8) 본인의 형제자매  
 9) 남편의 친척                  10) 친구 또는 아는 사람      11) 본인 혼자                  12) 기타 (      )

문2. 귀댁의 생활비 관리는 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 1) 부부 공동                      2) 남편                      3) 아내(본인)  
 4) 시부모                      5) 기타 (                      )

문3. 귀댁의 집안일(가사, 육아 등) 중에서 귀하가 하는 일은 얼마나 됩니까?

- 1) 우리 집의 집안일은 거의 모두 내가 한다
- 2) 다른 가족과 내가 비슷하게 한다
- 3) 다른 가족(시어머니, 남편 등)이 주로 하고 나는 조금만 거든다
- 4) 나는 집안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 5) 나는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문4. 귀하의 한국어 실력과 남편의 귀하나라 말 실력은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 항목              | 속성  | 매우<br>잘한다 | 잘하는<br>편이다 | 그저<br>그렇다 | 약간<br>서툴다 | 매우<br>서툴다 | 응답란 |
|-----------------|-----|-----------|------------|-----------|-----------|-----------|-----|
| 나의 한국어<br>실력    | 말하기 | 1         | 2          | 3         | 4         | 5         |     |
|                 | 듣기  | 1         | 2          | 3         | 4         | 5         |     |
|                 | 읽기  | 1         | 2          | 3         | 4         | 5         |     |
|                 | 쓰기  | 1         | 2          | 3         | 4         | 5         |     |
| 남편의 내<br>본국어 실력 | 말하기 | 1         | 2          | 3         | 4         | 5         |     |
|                 | 듣기  | 1         | 2          | 3         | 4         | 5         |     |
|                 | 읽기  | 1         | 2          | 3         | 4         | 5         |     |
|                 | 쓰기  | 1         | 2          | 3         | 4         | 5         |     |

문5. 본국에서 살던 때와 비교해 볼 때, 현재 귀하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좋아졌다      2) 약간 좋아진 편이다      3) 비슷하다
- 4) 약간 나빠진 편이다      5) 매우 나빠졌다

문6. 귀댁의 한국에서의 생활수준은 이웃에 사는 보통의 한국가족들과 비교하면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부유하다                      2) 부유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가난한 편이다                      5) 매우 가난하다

문7. 귀하께서는 현재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문8. 귀하께서는 현재의 결혼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하나에만 표시)

- 1) 언어(의사) 소통 곤란                      2) 문화적 차이(가치관, 생활습관 등)  
3) 남편의 비협조적 태도                      4) 시부모님의 간섭  
5) 생활비의 부족(경제적 어려움)                      6) 외로움  
7) 기타 (                      )

|    |              |
|----|--------------|
| IV | 영농 및 기타 경제활동 |
|----|--------------|

문1. 귀댁의 농사일 중에서 귀하가 하는 일은 얼마나 됩니까?

- 1) 우리 집 농사일은 거의 모두 내가 한다  
2) 다른 가족과 내가 비슷하게 한다  
3) 다른 가족이 주로 하고 나는 조금만 거든다  
4) 다른 가족이 주로 하고 나는 아주 바쁠 때만 가끔 돕는다  
5) 농사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6) 농사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문1-1. (현재 농사일에 참여하는 경우만 응답) 귀하는 한국에 와서 농사기술을 주로 어디에서 배우셨습니까?(하나에만 표시)

- |                   |                                |
|-------------------|--------------------------------|
| 1) 가족 (남편, 시부모 등) | 2) 이웃농가 또는 부녀회                 |
| 3) 농업기술센터         | 4) 농협                          |
| 5) 혼자서 독학         | 6) 기타 (                      ) |
| 7) 전혀 배운 적이 없음    |                                |

문1-2. (현재 농사일에 참여하는 경우만 응답) 귀하께서는 앞으로도 농사를 계속 지으실 생각이십니까?

- |               |                                               |
|---------------|-----------------------------------------------|
| 1) 계속 농사를 짓겠다 | 2) 차츰 그만두겠다                                   |
| 3) 곧 그만두겠다    | 4) 잘 모르겠다                      5) 기타 (      ) |

문2. 귀하께서는 한국에 오시기 전에 본국에서 농사를 지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              |              |           |
|--------------|--------------|-----------|
| 1) 경험이 전혀 없다 | 2) 경험이 약간 있다 | 3) 경험이 많다 |
|--------------|--------------|-----------|

문3. 귀하께서 다룰 수 있는 농기계나 차량에 대하여 모두 √표를 해 주십시오.

- |          |                     |         |
|----------|---------------------|---------|
| 1) 경운기   | 2) 트랙터              | 3) 이앙기  |
| 4) 콤바인   | 5) 관리기              | 6) 트럭   |
| 7) 건조기   | 8) 선별기              | 9) 포장기  |
| 10) 세척기  | 11) 동력분무기           | 12) 승용차 |
| 13) 오토바이 | 14) 기타 (무엇 :      ) |         |

문4. 귀하께서는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농협 등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 |                  |                  |
|------------------|------------------|
| 1) 예(☐ 문4-1로 이동) | 2) 아니오(☐ 문5로 이동) |
|------------------|------------------|



문6-2.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귀하가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에만 표시)

- |                            |                  |
|----------------------------|------------------|
| 1) 집안일(가사,육아 등)을 함께 하기 어려움 | 2)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듭 |
| 3) 교통이 불편함                 | 4) 수입(월급)이 너무 작음 |
| 5) 언어(의사)소통의 어려움           | 6) 근로시간이 너무 김    |
| 7) 외국 출신에 대한 차별과 편견        | 8) 기타 ( )        |

문6-3.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귀하가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해서 버는 돈은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 |                 |               |                |
|-----------------|---------------|----------------|
| 1) 10만원 미만      | 2) 10~20만원 미만 | 3) 20~30만원 미만  |
| 4) 30~50만원 미만   | 5) 50~70만원 미만 | 6) 70~100만원 미만 |
| 7) 100~150만원 미만 | 8) 150만원 이상   |                |

문7. 귀하께서는 앞으로 농사일이 아닌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까?

- 1) 하고 싶다(무엇 : )
- 2) 하고 싶지만 여건상 할 수 없다
- 3) 하고 싶지 않다

|   |             |
|---|-------------|
| V | 사회참여 및 사회복지 |
|---|-------------|

문1. 귀하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모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표시)

- |                                             |                     |
|---------------------------------------------|---------------------|
| 1) 사교 및 친목 모임                               | 2) 종교 단체 모임         |
| 3) 결혼이민자 지원 단체 모임                           | 4) 작목반과 같은 농사 관련 모임 |
| 5) 여성 관련 단체(부녀회,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 한여농, 전여농 등) |                     |
| 6)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                            |                     |
| 7) 기타 ( )                                   |                     |
| 8) 참석하는 모임이 전혀 없음(☐ 문2로 이동)                 |                     |

문1-1.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이 있는 경우) 귀하께서는 사회단체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도움이 된다     | 2) 약간 도움이 된다     |
| 3) 그저 그렇다        | 4)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문2. 귀하는 한국에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해당되는 사람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1) 없음                    | 2) 남편                           |
| 3) 자녀                    | 4) 시부모                          |
| 5) 한국에 있는 친정식구           | 6) 한국인 이웃이나 친구                  |
| 7) 한국에 있는 본국인 친구나 직장 동료  | 8) 한국에 있는 제3국인 친구나 직장 동료        |
| 9)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관련 단체의 활동가 | 10) 종교단체의 성직자                   |
| 11)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 12) 기타 (                      ) |

문3. 귀하께서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다음 각각의 사회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용하신 서비스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 항목 | 사회서비스             | 이용한 적이 없다 (✓표) | 이용한 경우        |               |        |             |            | 응답란 |
|----|-------------------|----------------|---------------|---------------|--------|-------------|------------|-----|
|    |                   |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그저 그렇다 |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 무척 도움이 되었다 |     |
| 1) | 한국어(말하기, 읽기 등) 교육 |                | 1             | 2             | 3      | 4           | 5          |     |
| 2) | 가족관계 상담           |                | 1             | 2             | 3      | 4           | 5          |     |
| 3) | 생활상담, 친절 맺어주기 등   |                | 1             | 2             | 3      | 4           | 5          |     |
| 4) | 부부교실, 가족캠프        |                | 1             | 2             | 3      | 4           | 5          |     |

| 항목  | 사회서비스                         | 이용<br>한<br>적이<br>없다<br>(✓ 표) | 이용한 경우                 |                        |               |                       |                  | 응답란 |
|-----|-------------------------------|------------------------------|------------------------|------------------------|---------------|-----------------------|------------------|-----|
|     |                               |                              | 전혀<br>도움이<br>되지<br>않았다 | 별로<br>도움이<br>되지<br>않았다 | 그저<br>그렇<br>다 | 대체<br>로<br>도움이<br>되었다 | 무척<br>도움이<br>되었다 |     |
| 5)  | 자녀양육지원 및 정보 제공                |                              | 1                      | 2                      | 3             | 4                     | 5                |     |
| 6)  | 임신, 출산 교육                     |                              | 1                      | 2                      | 3             | 4                     | 5                |     |
| 7)  | 지역생활안내(공공기관, 은행, 교통편, 시장이용 등) |                              | 1                      | 2                      | 3             | 4                     | 5                |     |
| 8)  | 전통문화교육(전통예절, 다도 등)            |                              | 1                      | 2                      | 3             | 4                     | 5                |     |
| 9)  | 한국요리 강습                       |                              | 1                      | 2                      | 3             | 4                     | 5                |     |
| 10) | 각국의 음식, 풍습 소개                 |                              | 1                      | 2                      | 3             | 4                     | 5                |     |
| 11) | 취미교실                          |                              | 1                      | 2                      | 3             | 4                     | 5                |     |
| 12) | 농업기술교육 등 농업교육                 |                              | 1                      | 2                      | 3             | 4                     | 5                |     |
| 13) | 정보화교육 (컴퓨터, 인터넷)              |                              | 1                      | 2                      | 3             | 4                     | 5                |     |
| 14) | 법률 상담 및 지원                    |                              | 1                      | 2                      | 3             | 4                     | 5                |     |
| 15) | 의료 상담 및 지원                    |                              | 1                      | 2                      | 3             | 4                     | 5                |     |
| 16) | 기타 (            )             |                              | 1                      | 2                      | 3             | 4                     | 5                |     |

※ 각종 사회서비스를 전혀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문4로 이동)

문3-1. 귀하께서 이러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해당되는 것은 모두 표시)

- 1) 가족들이 반대해서
- 2) 가사 문제와 자녀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 3) 직장일 또는 농사일을 하고 있어서
- 4)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 5) 살고 있는 지역 인근에 관련 프로그램이 없어서
- 6) 교통편이 불편해서

- 7) 참여하는 데 필요한 돈이 없어서
- 8)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서
- 9)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가 없음
- 10) 기타 ( )

문3-2. 귀하께서는 이러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표시)

- 1) 이장, 부녀회장, 반장, 이웃 등이 알려주어서
- 2) 공공기관(시·군청, 읍·면사무소, 결혼이민자기족지원센터 등)에서 알려주어서
- 3) TV, 신문, 라디오 등을 통해서
- 4) 같은 국적의 친구/모임을 통해서
- 5) 프로그램 홍보(홍보물, 인터넷 등)를 보고
- 6) 기타 ( )

문4. 귀하께서는 이러한 사회서비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에만 표시)

- 1) 교육 내용이 매번 비슷하다
- 2) 나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을 찾기 어렵다
- 3) 교육내용과 교재를 이해하기 어렵다
- 4) 강사와의 언어 소통이 어렵다
- 5) 기타 ( )

문5. 앞으로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2가지를 골라서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1순위:\_\_\_\_, 2순위: \_\_\_\_\_

- 1) 한국어(말하기, 읽기 등) 교육
- 2) 영농기반(농지, 가축, 시설 등)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 3) 생활상담
- 4) 부부교실, 가족캠프

- 5) 임신·출산교육, 자녀양육 지원 및 정보 제공
- 6) 우수 농가 현장 견학
- 7) 지역생활안내(공공기관, 은행, 교통편, 시장이용 등)
- 8) 전통문화교육(전통예절, 다도 등)
- 9) 한국요리 강습
- 10) 농기계, 차량 등의 운전 및 안전 교육
- 11) 농업기술교육 등 농업교육
- 12) 정보화교육(컴퓨터, 인터넷)
- 13) 법률 상담 및 지원
- 14) 의료 상담 및 지원
- 15) 기타( )

문6. 귀하께서는 앞으로 사회서비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에만 표시)

- 1) 방문교육의 확대
- 2) 교육장까지 교통편 제공
- 3) 교육받을 때 보육서비스 제공
- 4) 모국어 통역 가능한 상담자 제공
- 5) 좀 더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내용
- 6) 교육내용과 일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
- 7) 참여를 위한 가족들의 지원 요청
- 8) 가족 동반 프로그램 증대
- 9) 모국 및 제3국, 한국인과의 교류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10) 기타 ( )

문7. 귀하께서는 지도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한글교육, 아동양육 지도 등을 실시하는 방문 사회서비스를 지원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1) 예(☞ 문7-1로 이동)
- 2) 아니오(☞ 문8로 이동)

문7-1. (‘예’ 응답자만) 방문 사회서비스를 받으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았습니까?

- 1) 교육 기회가 생겨서
- 2) 가족들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져서
- 3)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수 있게 되어서
- 4) 한국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어서
- 5) 기타 ( )

문7-2. (‘예’ 응답자만) 방문 사회서비스를 받으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1) 낯선 사람이 집에 와서 불편했다
- 2) 가족들이 불편해해서 곤란했다
- 3) 가사와 자녀로 인해 수업 집중이 어려웠다
- 4) 수업 내용, 강사와의 소통이 어려웠다
- 5) 기타 ( )
- 6) 어려운 점이 없었다

문8. 귀하께서는 다문화(결혼이민자)가정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 정부 정책에서 어떤 점이 개선되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                                         |
|---------------------------|-----------------------------------------|
| 면접원은 설문종료 후 아래사항을 작성하십시오. |                                         |
| 면접원                       | 면접원 :                                   |
| 정보                        | 면접일시: 2008년 ( )월 ( )일 ( )시 ( )분부터 ( )분간 |

## 부록 2

## 여성결혼이민자 남편 대상 설문 조사표

|                         |           |  |  |  |
|-------------------------|-----------|--|--|--|
| <b>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 조사표</b> | <b>ID</b>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면접조사원 ○ ○ ○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의뢰로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농촌에 살고 있는 다문화(결혼이민자)가정의 생활실태 및 정책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수치화되어 통계 처리되며, 통계법 제13조에 의해 개인의 신상자료는 어떠한 것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해주시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9월

조사주관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대행기관 : (주)현대리서치연구소

※ 응답 대상자 : 본 설문지는 여성 결혼이민자 남편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자 기록 사항  |                                 |          |              |   |
|------------|---------------------------------|----------|--------------|---|
| 여성결혼이민자 성명 |                                 | 전화<br>번호 | 주택 : (     ) | - |
|            |                                 |          | 휴대폰: (     ) | - |
| 남편 성명      |                                 |          | 휴대폰: (     ) | - |
| 주소         | 시/도    시/군/구    읍/면/동           |          |              |   |
| 지역유형       | ① 도시근교    ② 평야    ③ 중산간    ④ 산간 |          |              |   |

|   |               |
|---|---------------|
| I | <b>국제결혼과정</b> |
|---|---------------|

문1. 귀하께서 국제결혼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에만 표시)

- 1) 아내를 사랑해서
- 2) 혼기를 놓치고 결혼이 어려워져서
- 3) 농촌으로 시집오려는 한국 여성이 별로 없어서
- 4) 한국 여성보다 외국인 여성이 더 가정적일 것 같아서
- 5) 종교적인 이유로
- 6) 기타( )

문2. 처가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부유하다
- 2) 부유한 편이다
- 3) 보통 수준이다
- 4) 가난한 편이다
- 5) 매우 가난하다

|    |                |
|----|----------------|
| II | <b>결혼생활 실태</b> |
|----|----------------|

문1. 귀하와 현재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몇 명입니까?

총( )명

문1-1. (학생(자녀)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 귀하는 자녀가 유치원, 학교 등에서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 2) 별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 3) 그저 그렇다
- 4)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 5)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문1-2. (학생(자녀)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 귀하가 자녀를 기르고 교육시키  
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에만 표시)

- 1) 자녀를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부족
- 2) 사교육비와 양육비에 대한 부담
- 3) 예방접종 등 자녀 건강관리
- 4) 학교생활 부적응(친구관계, 수업태도 등)
- 5) 가정 학습지도 곤란
- 6) 성적 부진
- 7) 기타( )

문2. 귀하께서는 집안일(가사, 육아 등)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1) 전혀 하지 않는다
- 2) 거의 하지 않는다
- 3) 그저 그렇다
- 4) 자주 하는 편이다
- 5) 항상 한다

문3. 귀하께서는 현재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 2) 어느 정도 만족한다
- 3) 그저 그렇다
- 4) 약간 불만족스럽다
- 5) 매우 불만족스럽다

문4. 귀하께서는 현재의 결혼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에만 표시)

- 1) 언어(의사) 소통의 문제
- 2) 문화적 차이(가치관, 생활습관 등)
- 3) 아내의 비협조적 태도
- 4) 부모님의 간섭
- 5) 차별적인 한국인(이웃주민)의 태도
- 6) 별 문제 없음
- 7) 기타( )

|   |              |
|---|--------------|
| Ⅲ | 영농 및 기타 경제활동 |
|---|--------------|

문1. 귀택의 농가 형태는 무엇입니까?

- 1) 농업수입만 있는 전업농가
- 2) 농업수입과 농외소득이 있는 겸업농가

문2. 현재 귀택에서 소유/경작(사육)하고 있는 농지면적이나 가축 사육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단위: 평, 두, 동, 수

| 구분       | 소유 | 경작(사육) | 구분               | 소유 | 경작(사육) |
|----------|----|--------|------------------|----|--------|
| 논(평)     |    |        | 밭(평)             |    |        |
| 과수원(평)   |    |        | 비닐하우스<br>유리온실(동) |    |        |
| 초지·임야(평) |    |        | 소(두)             |    |        |
| 돼지(두)    |    |        | 닭(수)             |    |        |
| 기타       |    |        |                  |    |        |

문3. 귀택에서 하는 농사 중에서 판매 수입이 가장 많은 농사는 무엇입니까?

- 1) 논농사
- 2) 밭농사
- 3) 과수원농사
- 4) 하우스농사(비닐하우스, 유리온실)
- 5) 축산(소, 돼지, 닭 등 기르기)
- 6) 기타( )

문4. 귀하의 부인은 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 1) 집안일(가사, 육아)만 하고 있다
- 2) 집안일과 농사일을 같이 하고 있다

- 3) 주로 농사일만 하고 있다
- 4) 집안일과 농사일을 하면서 직장에도 다니고 있다
- 5) 농사일은 하지 않고 집안일을 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
- 6) 주로 직장에만 다니고 있다

문5. 귀댁의 농사일 중에서 부인께서 하시는 일은 얼마나 됩니까?

- 1) 거의 모든 농사일을 부인이 담당한다
- 2) 다른 가족과 부인이 비슷하게 한다
- 3) 다른 가족이 주로 하고 부인은 조금만 거든다
- 4) 다른 가족이 주로 하고 부인은 아주 바쁠 때만 가끔 돕는다
- 5) 농사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문6으로 이동)
- 6) 농사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문6으로 이동)

문5-1. (문5에서 1) ~ 4)에 응답한 경우만) 부인께서는 현재 하시고 있는 농사일을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 1) 무척 힘들어 한다
- 2) 다소 힘들어 한다
- 3) 그저 그렇다
- 4) 별로 힘들어 하지 않는다
- 5) 전혀 힘들어 하지 않는다

문6. 귀하는 앞으로 부인께서 어느 정도 농사일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까?

- 1) 전문농업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 2) 나를 도와주는 정도로 함께 농사일을 했으면 좋겠다
- 3) 바쁜 시기에만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 4) 농사일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문6-1로 이동)
- 5) 잘 모르겠다
- 6) 기타( )

문6-1. (문6에서 4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부인이 농사일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에만 표시)

- 1) 농사일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 2) 집안일(가사, 양육 등)에만 전념하길 바라기 때문에
- 3) 비농업 분야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 4) 본인이 농사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 5) 기타( )

문7. 귀하께서는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영농교육을 실시한다면, 부인을 참여시키겠습니까?

- 1) 예(☞ 문7-1로 이동)
- 2) 아니오(☞ 문8로 이동)

문7-1. (‘예’ 응답자만) 부인께서 농업 관련 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부인이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다음 중에서 2가지를 골라서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1) 일반 농작물 재배기술   | 2) 축산 기술            |
| 3) 농기계 운전기술 및 안전 | 4) 과수농사 기술          |
| 5) 농산물 가공기술      | 6)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식품 판매 |
| 7) 농촌관광사업 운영     | 8) 인터넷 검색 및 정보처리 기술 |
| 9) 농작업 보조기구 활용법  | 10) 우수 농가 현장체험      |
| 11) 기타( )        |                     |

문8. 귀하께서는 앞으로 귀댁의 농사규모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 1) 좀 더 확대시키고 싶다
- 2)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 3) 현 상태를 축소하고 싶다
- 4) 모두 그만두고 싶다
- 5) 잘 모르겠다
- 6) 기타( )

문9. 귀하께서는 현재 농사일이 아닌 수입이 되는 일(자영업, 취업, 부업 등)을 하고 있습니까?

- 1) 예(무엇: ) (☞ 문9-1로 이동) 2) 아니오(☞ 문9-3으로 이동)

문9-1.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귀하가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2)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3) 일하는 것이 좋아서                        4) 여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5) 기타(                                          )

문9-2.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귀하가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해서 버는 돈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 1) 10만 원 미만
- 2) 10-20만 원 미만
- 3) 20-30만 원 미만
- 4) 30-50만 원 미만
- 5) 50-70만 원 미만
- 6) 70-100만 원 미만
- 7) 100-150만 원 미만
- 8) 150만 원 이상

문9-3.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앞으로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까?

- 1) 하고 싶다(무엇: )
- 2) 하고 싶지만 여건상 할 수 없다
- 3) 하고 싶지 않다

#### IV 사회참여 및 사회복지

문1. 귀하의 부인께서는 농촌에 살면서 어떤 점을 가장 불편해 하십니까?  
(하나에만 표시)

- 1) 생활편의시설(목욕탕 등) 부족
- 2) 대중교통시설의 불편
- 3) 의료시설(병원, 보건소) 부족
- 4) 보육 및 교육시설 부족
- 5) 여가문화시설의 부족
- 6) 기타( )

문2. 귀하께서는 앞으로 농촌(읍·면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실 생각이십니까?

1) 예(☞ 문3으로 이동)

2) 아니오(☞ 문2-1로 이동)

문2-1. ('아니오' 응답자만), 농촌을 떠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소득이 낮아서

2) 생활환경이 불편해서

3) 자녀 교육 문제로

4) 이야기를 나눌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5) 주변 이웃들의 지나친 관심과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6) 아내가 도시에서 살기를 원해서

7) 기타( )

문3. 귀하께서는 결혼이민자가정을 위한 자조모임에 가입하셨습니까?

1) 예(☞ 문4로 이동)

2) 아니오(☞ 문3-1로 이동)

문3-1. (현재 자조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귀하께서는 앞으로 자조모임에 참여하실 생각입니까?

1) 참여할 예정이다

2) 참여할 생각이 없다

문4. 귀하께서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남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남편교육, 부부교실 등)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예(☞ 문5로 이동)

2) 아니오(☞ 문4-1로 이동)

문4-1.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귀하께서 참여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에만 표시)

- 1) 농사일 또는 직장일을 하고 있어서
- 2)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 3) 살고 있는 지역 인근에 관련 프로그램이 없어서
- 4) 참여하는 데 필요한 돈이 없어서
- 5)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서
- 6) 기타( )

문5. 현재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2가지를 골라서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1)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교육 | 2) 배우자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 |
| 3) 배우자 나라의 언어교육    | 4) 부부갈등 해소 및 대화법     |
| 5) 자녀 양육 및 지도방법 교육 | 6) 가족통합을 위한 캠프, 여행 등 |
| 7) 직업훈련교육          | 8) 결혼이민자가족(자조)모임     |
| 9) 기타( )           |                      |

문6. 귀하의 부인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2가지를 골라서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1) 한국어 교육           | 2) 한국전통문화 교육           |
| 3) 가족관계 교육 및 상담     | 4) 임신, 출산 교육           |
| 5) 자녀 양육 및 지도방법 교육  | 6) 지역생활안내(은행, 시장 이용 등) |
| 7) 한국요리 강습          | 8) 취미교실                |
| 9) 농업기술교육 등 농업교육    | 10) 직업훈련교육             |
| 11) 정보화교육(컴퓨터, 인터넷) | 12) 결혼이민자가족(자조)모임      |
| 13) 기타( )           |                        |

문7. 귀하께서는 앞으로 결혼이민자가정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에만 표시)

- |                                      |                        |
|--------------------------------------|------------------------|
| 1) 방문교육의 확대                          | 2) 교육장까지 교통편 제공        |
| 3) 교육받을 때 보육서비스 제공                   | 4) 모국어 통역가능한 상담자 제공    |
| 5) 실질적인 교육내용 구성                      | 6) 교육내용과 일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 |
| 7) 참여를 위한 가족들의 지원 요청                 | 8) 가족 동반 프로그램 증대       |
| 9) 모국 및 제3국, 한국인과의 교류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
| 10) 기타( )                            |                        |

문8. 귀택에서 원하는 의료·건강 관련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표시)

- |                     |                |
|---------------------|----------------|
| 1) 국민건강보험 안내·도움     | 2) 진료시 의사소통 도움 |
| 3) 전염병, 질병 예방 지식 제공 | 4) 산전·후 지도     |
| 5) 피임방법 소개          | 6) 육아지식 제공     |
| 7) 유아 건강검진          | 8) 기타( )       |

문9. 귀하께서는 다문화(결혼이민자)가정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정부의 정책에서 어떤 점이 개선되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b>V</b> | <b>인구 · 사회적 배경</b> |
|----------|--------------------|

문1. 귀하와 부인께서는 각각 몇 번째 결혼이십니까?

(아래의 해당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본인:  부인:

|    |       |       |          |
|----|-------|-------|----------|
| 본인 | 1) 초혼 | 2) 재혼 | 3) 3혼 이상 |
| 부인 | 1) 초혼 | 2) 재혼 | 3) 3혼 이상 |

문2. 귀하와 현재 부인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아래의 해당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본인:  부인:

- |            |            |           |
|------------|------------|-----------|
| 1) 무학      | 2) 초등학교 졸업 | 3) 중학교 졸업 |
| 4) 고등학교 졸업 | 5) 전문대학 졸업 | 6) 대학교 졸업 |
| 7) 대학원 졸업  |            |           |

문3. 귀댁의 연간(2007년 기준) 가구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1) 500만 원 미만         | 2) 500-1,000만 원 미만    |
| 3) 1,000-1,500만 원 미만 | 4) 1,500-2,000만 원 미만  |
| 5) 2,000-2,500만 원 미만 | 6) 2,500-3,000만 원 미만  |
| 7) 3,000-3,500만 원 미만 | 8) 3,500-4,000만 원 미만  |
| 9) 4,000-4,500만 원 미만 | 10) 4,500-5,000만 원 미만 |
| 11) 5,000만 원 이상      |                       |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                                          |
|---------------------------|------------------------------------------|
| 면접원은 설문종료 후 아래사항을 작성하십시오. |                                          |
| 면접원                       | 면접원 :                                    |
| 정보                        | 면접일시 : 2008년 ( )월 ( )일 ( )시 ( )분부터 ( )분간 |



## 참고 문헌

- 강휘원, 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5~34.
- 고모다 마유미, 2007. “일본의 다문화 공생은 가능한가?.”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30: 51~64.
- 곽준혁, 2007a. “다문화 공존과 사회적 통합.” 『대한정치학회보』 15(2): 23~41.
- 곽준혁, 2007b. “미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30: 126~143.
- 구차순, 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 319~360.
-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 김남국, 2005. “다문화 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45(4): 97~121.
- 김범수, 2007. “일본의 다문화공생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야마가타현의 다문화공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31: 86~112.
- 김범수 외, 2007. 『다문화사회복지론』, 양서원.
- 김영옥, 김이선, 2003.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부.
- 김이선 외,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이선 외,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 외, 2008.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농림부.
- 김재원, 김희선, 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충남지역 네팔 이민여성을 찾아서.”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31: 129~139.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 10~37.
- 김현희, 2007. “한국의 결혼이민 배경과 현황.”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31: 6~49.
- 농림수산식품부, 2008.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문경희,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정치학회보』 16(3): 67~93.
- 문순영, 2007.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72(1): 109~142.
- 박재규,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관련 요인 분석: 전북지역사례.” 『농촌경제』 29(3): 67~84.
- 박재규 외, 2005.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북발전연구원.
- 박종보, 조용만, 2006.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 설동훈 외,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 외, 2006.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송중호, 2007. “단일민족환상 깨고 다문화주의로의 ‘전환시대.’”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30: 90~125.
-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농촌사회』 16(2): 151~179.
- 양순미, 정현숙,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23~252.
- 양애경 외, 2007.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은숙 리 자엘펠더, 2007. 『한국사회와 다문화가족』,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편).
- 외국인정책위원회, 2006.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 유정석, 2007.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현실과 쟁점.” 『민족연구』 30: 16~25.
- 유정석, 2008. “캐나다의 인구이동 현황과 전망: 다문화주의 ‘헌법’에 반영된 다양성의 원리.”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34: 123~148.
- 이방현, 2007.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모형개발: 무지개떡 모형.”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 Pp. 679~682.
- 이성언·최유, 2006. 『“다문화 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 위한 법제지원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이순형, 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실태와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7( I )』, Pp. 295~320.
- 이순형 외, 200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방안』, 농림부.
- 이용승, 2007a. “호주 다문화주의의 역진.”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30: 26~50.
- 이용승, 2007b. “독일의 다문화 가족 정책.”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31: 113~128.
- 이용일, 2007. “이민과 다문화 사회로의 도전: 독일의 이민자 사회통합과 한국적 함의.” 『서양사론』 92: 219~254.
- 이진숙, 2005. “사회통합과 외국인 가족복지정책: 독일 사민당 정부 하에서의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231~252.
- 임경택, 설동훈, 2006. “일본의 결혼이민자 복지 정책.” 『지역사회학』 7(2): 5~68.
- 정기선 외, 2007a.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 정기선 외, 2007b.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지원 장단기 계획』.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일선, 2006. 『국제결혼 가족 및 아동 실태조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정현주, 2007. “공간의 뒷에 갇힌 그녀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이동성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53~68.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조정남, 2007. “현대국가와 다문화주의.”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30: 6~15.
- 통계청, 2008. 『2007년 혼인통계 결과』.
- 통계청, 2008. 『2007년 이혼통계 결과』.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2007. 『다문화가족 백서』.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한국사회학회, 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아위원회.
- 행정자치부, 2007.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 홍기원, 2007. “다문화사회의 정책과제와 방향: 문화정책의 역할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909~928.
- Banks, J. A., and C. A. Banks, 1994.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Boston: Allyn and Bacon.

- Barry, Brian, 2001. 『Culture and Equality: An Egalitarian Critique of Multiculturalism』, Cambridge: Harvard Press.
- Citrin, J., D. Sears, C. Muste, and C. Wong, 2001. “Multiculturalism in American Public Opin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2): 247~275.
- Dovidio, J., and Gaertner, S., 1996. “Affirmative Action, Unintentional Racial Biases, and Intergroup Rel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52: 51~75.
- Gutmann, Amy(ed.), 1994. 『Multicultur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ealey, Joseph F., 2007. 『Diversity and Society: Race, Ethnicity, and Gender(Second Edition)』, London: Pine Forge Press.
- Inglis, C., 1996. 『Multiculturalism: New Policy Responses to Diversity』, Most Policy Papers 4, UNESCO.
- Kukathas, Chandran, 1998. “Liberalism and Multiculturalism: The Politics of Indifference.” 『Political Theory』 26(5): 686~699.
- Kymlicka, Will,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연구보고 R570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8. 12.

발 행 2008. 12.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크리커뮤니케이션

전화 02-2273-1775 [cree1775@hanmail.net](mailto:cree1775@hanmail.net).

---

ISBN 978-89-6013-098-2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